

18대 대선후보 인권공약 검증토론회

|| 일시 2012년 11월 15일 (목)

|| 장소 한겨레 신문사 청암홀

주최
공동
주관

한겨레신문사

“인권정책연구소,
Korea Human Rights Policy Institute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Hankyoreh Institute for Social Policy



한국인권재단
KOREA HUMAN RIGHTS FOUNDATION

프로그램

전체진행 정선애(한국인권재단 사무처장)
사회 이성훈(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환영사	고광헌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박종화 (인권정책연구소 이사장, 목사) 권태선 (한겨레 신문 편집인)
발표	인권국가를 위한 제18대 대선 인권정책 과제 - 보편적 인권기준의 실천 각 대선후보의 인권정책 공약 발표 - 박근혜 후보 대선본부 인권공약 및 정책 - 문재인 후보 대선본부 인권공약 및 정책 : 최경숙 (시민캠프인권네트워크 대표) - 안철수 후보 대선본부 인권공약 및 정책 : 이성은 (여성포럼 간사)
토론	패널 검증 토론 -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질의	청중 질문 및 대선후보 인권정책 공약 담당자 답변
공약 총평	- 유남영 (변호사,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목 차

1. 인권국가를 위한 제18대 대선 인권정책 과제
- 보편적 인권기준의 실천1

2. 각 대선후보의 인권정책 공약 발표
- 박근혜 후보 대선본부 인권공약 및 정책
- 문재인 후보 대선본부 인권공약 및 정책 / 최경숙(시민캠프인권네트워크 대표)
- 안철수 후보 대선본부 인권공약 및 정책 / 이성은(여성포럼 간사)

3. 패널 검증 토론
- 문경란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엔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위원)
-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공동대표)
-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4. 공약 총평
- 유남영 (변호사/인권정책연구소 이사, 前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부 록

1. 세 후보 10대 공약 비교표15
2.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10대 대선공약16
3.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제2기 UPR 답변 및 입장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54
4. 한국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입후보 자발적 공약(영).....58
5. [논평]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이 인권실태에 대한 면죄부 주는 것 아니다"
-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64
6.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한 New Design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 국가인권위원회 지부68
7. 표현의 자유를 위한 정책제안(요약본)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75
8. 이주민 관련 정책 공약에 대한 질의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107
9.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유남영121

인권국가를 위한 제18대 대선 인권정책 과제

보편적 인권기준의 실천

2012. 11. 10.

- ▶ 아래의 제안은 20여명의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인권전문가 포럼에서 각 대선 후보 인권정책담당자에게 보낼 제안서를 공동작업을 통해 작성한 것입니다.
- ▶ 제안은 2012년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주요 인권과제를 정리한 것으로 18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 이미 후보자가 공약을 발표하였거나 다른 시민사회단체가 제안이나 공개토론회 형식으로 공약제안을 한 경우(경찰과 검찰개혁, 여성, 노동(일자리), 복지 등)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 11월 15일 개최 예정인 대선후보/정책담당자 초청토론회 이전에 각 후보자로부터 문서로 응답을 받고 이에 대한 토론과 검증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 ▶ 4대 목표와 30개의 과제를 정리하는데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였습니다.

- (ㄱ)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 대선10대 공약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 (ㄴ) 법무부, 제2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NAP) 2012-2016 최종안 (2012.3)
- (ㄷ) 유엔인권이사회 제2기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 제기된 질문에 대한 한국정부 답변 및 입장 요약 (2012.10.25)
- (ㄹ) 한국정부의 유엔 인권이사회 제2기 UPR 답변 및 입장에 대한 인권단체 논평 (2012.10.28)
- (ㄹ) 한국정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2013-5) 입후보 자발적 공약 (2012.9) (영문)
- (ㅂ) 인권단체연석회의, 19대 국회 인권입법과제 토론회 자료집 (2012.6.21)
- (ㅅ) 유남영,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저스티스>통권 129호 (2012.4)

4대 목표와 30개 과제

- 가. 보편적 인권의 체계적 도입과 이행
- 나.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혁
- 다. 보편적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 라. 인권외교와 국제협력 강화

주요 목표	주요 과제
보편적 인권의 체계적 도입과 이행	1. 주요 국제인권조약과 ILO 조약의 가입과 비준 2. 비준한 조약의 유보 철회 3. 비준한 조약의 체계적인 국내이행과 보고 4. UPR 등 유엔 인권인권기구 권고의 충실한 이행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혁	5. 인권기본법 제정 6.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7. 아동, 학생, 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법과 인권교육법의 제정 8.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선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10. 사형제 폐지 11. 국가보안법 폐지 12. 표현의 자유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13. 표현의 자유 제한하는 심의제도 폐지 14.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 확대 15. 집시/시위의 자유 보장 16. 신념(양심)에 따른 집총거부권 인정 17. 정치참여권 보장 18. 인권에 기반을 둔 사법개혁 추진 19. 교정과 재소자 인권 보호 20. 군인의 인권보호와 군사법제도 개혁 21. 국가폭력(과거청산) 피해자 인권 22. 정보인권 보장 -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권 23. 사회보장과 주거권의 실질적 개선 24. 이주민 인권보호와 증진 25. 장애인권 보호와 증진 26. 어린이와 청소년 인권보호와 증진
인권외교와 국제협력 강화	27. 인권외교 강화 28.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 국제협력 강화 29. 인권에 기반을 둔 ODA 정책 30.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가. 보편적 인권의 체계적 도입과 실현

1. 주요 국제인권조약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노동기준의 조속한 가입과 비준

한국은 9대 핵심 인권조약 중 ‘이주노동자와 가족보호 협약’(ICRMW), ‘강제실종방지협약’(CPED) 그리고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의 ‘사형에 관한 제2선택의정서’(OP-2), ‘고문방지협약’(CAT)의 ‘선택의정서’(OP-CAT),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선택의정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OP-CRC)’, ‘장애인권리협약(CRPD) 선택의정서’,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팔레모 선택의정서’, ‘헤이그 입양협약’ 주요 인권조약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상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의 법제와 정책 개선과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인권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 핵심 인권조약의 가입은 필수적임.

한국은 경제, 환경 분야에서 높아지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노동분야에서는 후진국을 탈피하지 못한 상태. 현재 한국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189개 가운데 겨우 28개만 비준한 상태. 특히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핵심노동기준인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과 비인도적인 강제근로의 금지를 위한 ‘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과 ‘105호 강제근로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조속히 가입해야 함.

2. 비준한 인권조약의 유보조항 철회

한국은 7개의 주요 인권조약을 비준했지만 유보조항이 많아 진성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우려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음.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 22조 결사의 자유,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6조1항(g) 가족의 성, ‘장애인권리협약’(CRPD) 제25조(e) 생명보험에서 차별금지, ‘아동권리협약’(CRC) 9조3항 아동의 면접교섭권, 제21조(a) 입양의 허가제, 제40조(2)(b)(v) 상소권 보장 등에 대한 유보를 조속히 철회하여 국제인권기준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는 국내법 정비할 필요가 있음.

3. 비준한 인권조약의 체계적인 보고와 충실한 국내이행

한국정부는 국제인권조약의 가입 의무에 따른 인권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오고 있음. 그러나 조약심의기구로부터 보고서의 정보가 부실하여 인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고, 같은 인권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하고 있고 조약심의기구의 개인통보사건 결정들을 거의 이행하지 않

고 있어 해 조약가입을 통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인권개선의 의지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보고서 작성 및 입법부, 사법부, 시민사회를 포함한 국가적 차원의 보고서 논의방법, 조약심의 기구 권고안의 국내이행에 대한 범정부적 차원의 혁신적인 조치가 필요함. 특히 사법적 구제 등 국제인권법의 효과적인 국내적 이행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포함한 실질적 입법조치가 필요함.

4. UPR 등 유엔 인권인권기구 권고의 충실한 이행

한국은 2006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도입한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에서 2008년 5월과 2012년 10월 두 차례 심의를 받았음. 한국정부의 보고서는 시민사회로부터 지난 1차 심의의 권고를 성실히 이행한 내용은 별로 없고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했다는 평가를 받았음. 실제로 제2차 심의에서 많은 국가들이 반복해서 같은 인권문제를 지적하였고 지난 4년간 인권이 오히려 후퇴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임.

이에 1차와 2차에 걸쳐 국제사회가 지적한 인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그리고 유엔 인권이사회와 다양한 주제별 특별보고관의 권고 특히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인권상황을 점검한 표현의 자유와 이주민 인권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나.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한 법 제도 개혁

5. 보편적 인권기준 이행할 수 있는 국내인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인권기본법의 제정

인권교육,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인권기구의 설립,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시행과 평가,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등에 관한 절차 등을 법제화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편적인 인권문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국내인권체계(domestic human rights regime)를 확립하기 위하여 ‘인권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함

6.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차별문제는 대표적인 현대적 인권과제로서 우리사회에서 시급한 과제임. 우리나라

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성(gender), 사회적 신분, 국적 등 모든 사유에 근거한 모든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구체적인 차별사유와 차별영역, 차별시정과 구제 등을 규정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함. 지난 2007년 법무부, 인권위, 인권단체들이 차례로 차별금지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조속히 국회 입법을 추진해야 함.

7. 아동·학생·군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법과 인권교육법의 제정

아동, 학생, 군인 등과 같이 인권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룹을 위한 인권법(예를 들면, 학생인권법, 아동인권법 또는 아동 및 청소년인권법, 군인인권법 등)이 제정되어 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학교, 군대 내에서 인권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현실임. 일부 분야에서 조례 차원의 개선 움직임이 있지만 그 효과를 특정 지역에 한정적이고 법적 효과도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법률'적 수준의 조치가 필요함. 한편 소수자와 인권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인권문화의 확산과 인권의식의 개선을 위해 인권교육법 제정과 인권교육원 설립이 필요함. 교정, 경찰, 사법 등 법집행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인 인권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8.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인권위원의 선임의 공개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예산 및 인사에 있어서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야 함. 개정의 내용에는 사회적 약자의 대표성을 강화, 법조인 중심 임명 구조 개선,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와 같은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 인권위 직제를 대통령령에서 배제하여 규칙 제정권을 부여, 인권위 논의의 전면 공개 등이 포함되어야 함.

9.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실질적 개선

한국정부는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2007-2011년 시행하였고 현재 제2차 NAP(2012-2016년)를 시행하고 있음. 대통령 훈령에 따라 법무부 장관 소속하의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현 NAP는 수립, 시행, 평가 단계에서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인권개선에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가 보다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NAP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 보편적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 개선

10.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요청인 사형제의 폐지와 종신형으로의 대체

사형은 오심을 구제할 수 없고, 범죄억제력이 입증되지 않는 등 형사정책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임이 확인되었음. 사형제는 이미 전 세계 140여개국에서 폐지되었으며, 사형폐지국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유엔에서도 이미 수차례 사형폐지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등 사형폐지는 이미 국제사회의 상식이 되었음. 2009년 한국의 132명의 형사법학자들이 사형제 반대 성명을 내고, 2005년에는 인권위가 사형제 폐지를 권고했고, 17대 국회에서도 과반 수 이상이 사형제폐지 법안에 서명한 바 있음.

11. 국가안보를 빌미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해온 국가보안법의 폐지

국가보안법은 표현·양심·사상·학문·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화통일을 추구하는 헌법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이며, 유엔 인권기구들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수차례 그 폐지를 권고해 왔음. 2004년에는 3개 형사법 대표 학회가 폐지 촉구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2004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폐지 권고.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가 급증하는 등 법적용을 엄격히 하는 것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전면 폐지가 원칙이 되어야 함. 국가안보는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으로도 충분히 지켜질 수 있음.

12.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폐지 또는 요건 강화

형법상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개인의 모욕감정이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사회적 약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데 활용되고 있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형법에서 명예훼손죄를 폐지할 것을 권고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비범죄화되었거나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모욕죄는 폐지되어야 하며, 명예훼손죄는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는 폐지하고 허위에 관한 명예훼손죄는 요건을 강화할 필요 있음.

13.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각종 심의제도의 폐지 및 매체별 자율규제 전면 도입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통신분야 심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상물등급분류제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게임 셧다운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연령등급제 등은 국가에 의하여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운영되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창작자의 창작욕을 과도하게 제한해왔음. 원칙적으로

모든 행정심의/규제기구를 폐지하고, 민간기구에 의한 자율규제로 전환되어야 함.

14. 선거에서의 표현의 자유 확대

현행 공직선거법은 규제 위주로 되어 있어, 선거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 막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는 선거운동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선거운동기간제한을 폐지 또는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하며, 남용의 소지가 많은 후보자비방죄는 삭제하고, 허위사실공표죄는 요건을 강화해야 하며,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함. 그 외에도 참정권 확대를 위해 부재자 투표소 설치 요건을 완화하고, 투표마감시간을 연장해야 함.

15. 집회·시위의 자유의 보장

15-1. 집회·시위의 자유를 규제하는 집시법을 집회보호법으로 대체입법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어 국제인권법과 헌법에 위배되고 있으며, 금지통고와 집회 해산명령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음. 유엔 인권기구들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수 차례 집시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현행 집시법을 폐지하고, 집회와 시위에 대한 법적 보호에 초점을 맞춘 "집회의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로 대체되어야 함.

15-2.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경찰집회관리 도입

경찰은 차벽, 불심검문 등을 통해 집회·시위 참여자들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마구잡이 채증으로 감시하는가 하면, 전기충격기, 최루액과 물포 등 장비를 자의적으로 사용해 왔음. 이로 인하여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권리가 심대하게 위축되어 왔지만 경찰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나 폭력행위는 처벌받지 않고 있음.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유엔 법집행관 행동강령(UN Code of Conduct of Law Enforcement Officials)'과 '법집행관의 무력 및 화기 사용 기본원칙(Basic Principles on the Use of Force and Firearms by Law Enforcement Officials)'을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한 바 있음. 또한 법집행공무원들에 의한 무력의 과도한 사용에 관한 모든 혐의들이 효과적으로 수사되고, 책임 있는 이들이 처벌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한 권고를 이행해야 함.

16. 신념(양심)에 따른 집총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종교적, 정치적 신념에 따른 집총거부권은 개인의 신념(양심)의 보호를 위해 인정되어야 하며, 현행 군복무에 상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함. 이미 유엔 인권기구들이 수차례에 걸쳐 집총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으며, UPR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한국의 대표적 인권문제로 부각되고 있음. 집총거부권은 이미 보편적인 권리로 많은 인권선진국에서 인정받고 있으며,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는 우려는 전혀 근거가 없음이 확인된 바 있음.

17. 공무원,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참여권 보장 및 재소자 투표권 보장, 선거권연령과 정당가입 연령 하향 조정

공무원, 교사에게 정치적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정당 가입·후원도 허용해야 함. 유엔 인권기구들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공무원과 교사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재소자에게 투표를 막을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이미 5:4로 위헌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 바 있음. 현행 선거권 연령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아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정치참여를 막고 있음. 선거권 연령을 만18세 이상으로, 정당가입 연령도 만16세 이상으로 조정해야 함.

18. 인권에 기반을 둔 사법개혁 추진

자치경찰제, 기소권 조정 등을 통해 검경의 권력을 분산시킴으로써 인권침해의 소지를 줄이고 상호통제를 강화해야 함. 정보, 보안, 경비 등 시국치안 분야 경찰인력을 축소하고, 민생치안인력이 확충되어야 함. 경찰 옴부즈맨, 경찰위원회, 기소배심제 도입을 통해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어야 함. 법무부를 문민화하고, 교정, 외국인정책, 인권 등 비검찰분야의 예산·조직 확충이 필요함. 대법관 헌재재판관 임명과정에서의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대법원·헌법재판소 구성에서의 다원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국민참여재판의 적용범위를 확대시켜함.

19. 재소자의 기본적 인권 보호와 교정교화교육의 활성화

접견권, 알 권리 등 재소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과밀수용 문제 등 기본적인 수용여건을 개선해야 함. 교정옴부즈맨 신설로 교정분야의 인권침해 감시를 철저하게 하고, 법무부 교정본부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되어야 함. 개방형 교도소 등 다양한 대체형벌 형태를 더욱 확대하고, 재범방지와 재사회화를 위하여 재소자 교정교화교육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필요.

20. 군인의 인권보호와 군사법제도 개혁

군인인권법을 제정하여 군인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군 사육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군인의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를 전담하게 해야 함. 군사 법원을 군지휘계통에서 독립시켜 군인인권보호와 사법권 독립을 도모하고, 영창제도 등 비사법적 인신구속제도를 철폐해야 함. 국방부 인권담당부서를 국 수준으로 승격 시키고 조직과 예산을 확충해야 함.

21. 국가폭력(과거청산)과 피해자 인권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의 실태 파악이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못했고, 위안부 피해자 들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식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진실화해위원회 등의 활동 이 종료되고 제주4.3사건, 거창사건, 노근리사건을 포함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 살자의 유족 등에게 배상하고 명예회복 조치가 뒤따라야 함. 아울러 장준하 사건 등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관련 당사자와 유 가족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음. 강제동원 관련법 개정을 통한 조사기간 연장, 위안부 피해자 문제해결을 위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명예회 복 및 배상을 위한 법률 제정,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추가 진상조사 등의 조치가 필요.

22. 정보인권 -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권

22.1. 주민등록번호 제도 폐기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도입한 주민등록번호는,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 민간 과 공공기관에서 마구 수집·이용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광범위 하게 수사기관에 제공되어 왔음.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UPR에서 한국 정부에 권고 한바 대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제도를 재검토하고 주민번호를 공공서비스 제 공을 위해 엄격히 필요한 경우로 제한함으로써 '다목적 번호'로서의 주민번호제도를 폐기해야 함

22.2.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을 심의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불법성과 유해성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대통령 이름을 풍자한 트위터 계정에 대하여 국내 접속을 차단하는 등 정치적인 검열 수단으로 악용 되어 왔음.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정부에 권고해 온 바대 로, 인터넷에 대한 행정심의를 폐지해야 함

22.3. 전자주민증 백지화

지난 1996년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던 전자주민카드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가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이유로 백지화하였으나, 그 이후 정부에서는 행정편의주의와 산업논리에 의거하여 재추진해 왔음. 그러나 주민번호와 지문 등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모두 전자칩에 넣어 전자적으로 유통하겠다는 계획은 국민의 정보인권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바 전면 백지화되어야 함

22.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성 강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이는 이 기구가 행정안전부 등 정부로부터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보장받지 못하고 조사권, 시정조치권 등 권한이 제약된 데서 기인한 문제인 만큼,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대한 유엔, 유럽 등 국제기구들의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함.

23. 사회보장과 주거권의 실질적 개선

23.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제 폐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 중 시설 수급자를 제외한 60세 이상의 노인인구의 점유율은 30.8%, 2010년 시장소득대비 노인가구 절대적 빈곤율이 40%, 2012년 상반기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중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인한 탈락자는 1만 7천여명에 달함.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부양우선원칙이기에,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의무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음.

23.2.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의무적 가입

2012년 8월 현재 임금근로자 1,773만 4천명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591만1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1% 차지(2012년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비정규근로자가 중복되는 것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유형별로는 시간제 근로자 182만6천명, 한시적 근로자 340만 3천명, 비전형근로자(파견, 특수직종고용, 용역 등) 228만6천명임,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율은 2012년 8월 현재 국민연금 39%, 건강보험 45.4%, 고용보험은 43.3%에 불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시간제, 한시적, 특수직종고용 등)의 4대 사회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함.

23.3. 저소득층과 철거민의 주거안정 대책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적절한 주거를 갖출 수 없는 자에 대한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들이 종전과 동일한 주거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는 해야 함.

23.4. 강제퇴거로 인한 주민인권침해 방지 대책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을 위해 주민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주민을 퇴거할 경우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퇴거 시 폭언, 폭력, 협박 및 겨울철, 야간 퇴거 등을 금지하며, 인권영향평가를 반드시 하도록 의무화

24. 이주민 인권 보장

‘다문화’의 프레임하에 추진되는 현 이주민 법제와 정책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인권과제이자 국제사회가 매우 우려하는 문제이기도 함. 크게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재외동포 등 많은 부분에서 개선할 과제가 있음.

24.1.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와 노동허가제 실시

고용허가제의 거듭된 개악으로 인해 이주노동자가 이미 확보했던 권리조차 박탈당하고 있는 실정임. 입법당시부터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온 사업장 이동권 제한이 ‘노동부의 구인업체 알선장 제공 폐지(2012년 8월1일 실시)로 더욱 강화되고 있음. 따라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권 보장 필요하고 더 나아가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 실시 필요함.

24.2. 재외동포법 전면 적용

고용허가제는 15개 국가 출신 노동자에게 적용하는 일반고용허가와 중국동포(구 소련지역 동포 포함)에게 적용하는 특례(사실상 노동허가제)로 나뉨. 향후 특례 사항을 일반화하여 모든 이주노동자에게 노동허가제 실시 필요하고 모든 동포에게 차별 없이 재외동포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24.3.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백지화

현재 일반외국인은 귀화요건인 5년 거주기간 중 3년 이상 영주권 유지 요구. 결혼 이주민은 귀화요건인 3년 거주기간 중 1년 이상을 영주권 유지 요구, 그리고 영주권

의 경우 영주권 부여 대상을 국민의 배우자, 재외동포, 우수인재 등으로 한정하여 이주노동자와 난민 등을 배제하고 있어 이주민의 권리 후퇴가 심각하고 대단히 차별적인 내용이므로 ‘국적부여시 영주권 전치주의’를 담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백지화 필요. 더 나아가 이주노동자에 대한 영주자격 제한 철폐하고 영주권자에 대한 시민적·사회적 권리의 보장이 필요함.

24.4. 결혼이주자의 인권 보호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중요한 인권과제로 등장하였고 이주민 100만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도 다양한 ‘다문화’ 정책을 통해 인권 상황 개선 조치를 취하고 있음. 그러나 법제도의 미비와 낮은 인권인식으로 인해 현실에서 결혼 이주민은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고 있음.

우선적으로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 및 영주권/국적 신청, 심사 제도의 합리화가 필요함. 구체적으로 한국인 배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연장, 영주자격 및 귀화신청 등 체류자격 취득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결혼이주자가 독자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결혼이주민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입국 후 외국인 등록과정에서 2년 기간의 임시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추가적 심사를 통해서 영주자격으로 전환해 주는 방식으로 입국시부터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함. 또한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폭력피해 외국인배우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외국인배우자는 사회적 약자로 인정하여 심사 없이 영주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영주권 및 국적 심사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신청인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야 함.

한편 혼인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이 강화되어야 함. 보다 구체적으로 국제결혼의 당사자는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류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내에서 취업이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체류의 목적이 달라졌다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사별한 결혼이주민에게는 영주자격이나 귀화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야 하고 혼인으로 국내 입국했다가 미등록 체류자가 된 결혼이주민에게 특별조치를 통해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함.

25. 장애인 - 시혜에서 권리로, 보호에서 자립으로

지난 10월 26일 하루 24시간 활동보조가 없어 화재에 목숨을 잃은 장애여성 고 김주영 씨의 경우에서 보듯이 한국사회의 장애인은 여전히 ‘불쌍한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라는 잔여적 복지와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삶의 벼랑으로 내몰리

고 있음. 장애인 인권(복지)정책이 ‘시혜에서 권리로, 보호에서 자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함. 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독소조항인 부양의무제 폐지, 기존의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장애 개념의 확대,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장애인권리옹호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발달장애인법 등 장애유형별 지원체계 등이 구축되어야 함.

26. 어린이·청소년 인권 보호와 증진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시행되고 학교 밖까지 아우르는 서울시의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르렀지만,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소송을 제기하고 낙인과 처벌 위주의 학교폭력 대책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등 학교주체와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 어린이·청소년 인권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인권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의 노력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의 입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임. 학교안팎의 경계를 허물고 가정과 학교, 복지시설, 지역사회 등 어린이·청소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서 인권을 존중받고 존중하는 법을 익힐 수 있도록 올바르게 실효성 있는 ‘어린이·청소년인권법’ 제정이 필요함.

라. 인권외교와 국제협력 강화

27. 인권과 민주주의 외교 강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동시 발전을 통한 인권의 개선이라는 모범적 사례로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음. 그러나 세계 경제에서 10위권의 경제와 무역규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기여가 매우 적고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이 분야는 정책의 우선순위에서도 매우 낮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 또한 매우 부족한 상태임. 새 정부는 인권분야의 외교 비전과 전략을 정립하여 관련 예산 대폭 증대, 해외 인권상황에 대한 입장 표명 및 실질적 지원 확대, 주제별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결의안 추진 등 국제사회에서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음.

28.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 국제협력과 기여 강화

현재 한국정부의 대외원조(ODA)는 0.14%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원조의 효과성과 질에 대한 국제적 평가에서도 최하위. 현 한국정부의 국제개발협력 (ODA)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증액 예정. 유엔의 권고는

0.7%로 2015년 0.25%로 증액해도 여전히 최하위. 한국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2013-16) 입후보 자발적 공약에서 인권 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고 ODA정책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통합할 것을 약속했음. 그리고 사회권규약위원회와 UPR에서 ODA증액에 대한 요청이 있었음. 따라서 GNI대비 ODA비율을 우선적으로 OECD 국가의 평균인 0.33%까지 증액하고 단계적으로 UN의 권고사항인 0.7%까지 증액할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시에 인권과 민주주의 분야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한국정부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 유엔민주주의기금(UNDeF), UNDP 등 민주주의와 인권을 다루는 국제기구에 대한 자발적 공여금(voluntary contribution)을 획기적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음.

29. 인권에 기반을 둔 공적개발원조(ODA) 정책

한국의 원조는 양에서 최하위이지만 질과 효과성 측면에서도 최하위로 평가받고 있음. 기존의 자원확보, 한국 기업진출 등 이른바 '국익'과 '국격 제고' 중심의 대외원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가난극복과 불평등 감소, 그리고 지속가능한 인간발전 등 국제사회의 원조규범에 따른 원조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UN이 개발하고 권고하고 있는 인권에 기반을 둔(RBA) 국제개발협력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 실행할 필요가 있음.

30.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

북한인권은 분단에서 비롯된 평화와 안보, 인도적 지원과 경제협력, 통일 등의 큰 과제와 밀접히 연관된 복합적 성격의 문제로 균형감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슈임. 북한인권은 '민족문제'이자 '국제인권문제'로 한국사회와 국제사회가 협력하여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음. 북한인권 개선 정책은 이념적 정략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인권기준에 따라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을 위해 수립 시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 국회는 다양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한 관련 법제를 만들고 정부를 이를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함.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북한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심의기구 등 유엔과의 협력을 전략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18대 대선 주요 후보자 공약 비교

공약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경제민주화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자영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새로운 정치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창의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6	차별 없는 고용시장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차별 없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7	우리 경제의 핵심!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한 에너지 -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농어업을 먹거리 안전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정치혁신으로 반칙, 특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10	안전한 사회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습니다.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북방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박근혜 후보 공약

공약
공약 1.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
<p>=> 상세내역</p> <p>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경제는 그동안 효율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반면, 공정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음.- 대주주의 사익추구행위, 대기업의 중소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을 통한 경제력 남용 행위 등 시장의 불공정성이 존재하고 있음. <p>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민주화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 <p>이행절차 및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기동안 균형성장을 위한 방안을 추진할 것임-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기업과 중소기업, 수출기업과 내수기업 등이 균형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것임.-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시장 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함.-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소득분배의 왜곡을 시정화하기 위해 조세와 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정책을 강화하여 양극화 현상을 더 이상 확대치 않도록 함. <p>재원조달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공약 2.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
<p>=> 상세내역</p> <p>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는 저소득층마저도 사각지대에 방치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복지의 확대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 복지제도와 재정이 많이 확대되었지만,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느끼고 있어 국민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지원해주지 못하는 복지정책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있음 <p>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여 경제발전과 사회 안

정에 역동적인 균형을 유지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소득보장과 복지서비스를 균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창출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과 함께하는 고용복지를 확대해 나갈 것임.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생 맞춤형 복지를 실천하기 위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과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국민의 체감을 떨어뜨리는 공급자 중심의 부처 간 칸막이 복지를 개선할 것임

재원조달방안

- 매우 포괄적인 공약이므로 추후 세부적인 공약들을 발표하면서 재원소요 추계와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예정

공약 3.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 창출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우리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일자리 창출 중심인 새로운 성장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임
-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모방형, 경제성장을 지향,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어 일자리와 국민의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없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는데도 한계가 있음

목 표

-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운용으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임기동안 경제체질을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바꿀 것임
-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며, 성장률보다는 고용율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것임

재원조달방안

- 창조인력양성과 기초기술개발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재원조달 계획을 추후 발표할 것임.

공약 4.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착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유화주의적 포용정책과 원칙에 입각한 대북정책 모두 북한사회의 의미 있는 변화를 유도하지는 못했음.
- 그동안의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지 못함.
- 남북한 사이 또는 북한과 국제사회 사이에 이뤄진 지금까지의 많은 약속과 국제기준을 지키는 전략적 신뢰관계 부족.

목 표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한국의 기틀을 다짐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당국자간 남북대화 재개, 인도적 지원 활성화, 남북한간 및 북한과 국제사회간 기존 약속 확인 및 실천 시작 등을 통해 신뢰프로세스를 작동
- 신뢰프로세스와 함께 정치안보 분야와 교류협력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균형적으로 추진함
- 임기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및 국민적,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제도적 수준에서 정착시켜, 한반도 통일의 초석을 다짐

재원조달방안

-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경제협력 사업 활성화 이전에 남북간 신뢰를 공고히 하자는 공약이므로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인도적 지원 이외의 별도의 재원조달 불필요

공약 5. 정치혁신을 통한 신뢰회복과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뇌물수수 등 정치 관련 각종 부정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심각
- 저출산문제, 환경문제 등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풀 수 없는 새로운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이 필요

목 표

- 정치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뢰받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정치를 혁신
- 개방·공유·참여·소통을 통해 미래형 창조정부를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지속적인 정치쇄신 방안 추진. 당내 정치쇄신평위에서 마련한 결정 사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정치쇄신 추진
- 개인별 맞춤형복을 지향하는 정부 3.0시대 달성을 위해투명하고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구현. 이를 위해 정보공개 확대와 공공정보의 개방,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 정부와 민간과의 협업 확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정부 지식경영시스템 구축, 맞춤형 서비스 제공, 국가미래전략센터 구축 등을 실천
- 창조경제의 기반인 과학기술 분야를 책임질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재원조달방안

- 정치혁신분야 : 해당사항 없음(법·제도적 정비 및 정치혁신을 위한 정치권 및 국민적 자정노력 사항)
- 미래형 창조정부 구현 : 종합적으로 정부 통합 클라우드 구축 등 인프라 확보에 필요한 재원은 초기에는 국비 지원을 통해 마련해야 하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 통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불요불급한 행정비용 감소를 통해 오히려 국비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임

공약 6. 차별 없는 고용시장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비해 낮은 임금과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어 사회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임금 근로자의 1/2이 비정규직 근로자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임

목 표

-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고용관행을 정착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을 실현. 비정규직의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함
-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경우 우선적으로 상시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함
-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기간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유도함
- 대기업에게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여 대기업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관행을 개선함

재원조달방안

- 국가의 경우에는 인건비 지출의 적정 배분안을 마련하여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함
-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수 있도록 구조개혁 및 다른 예산 절감을 통해 자체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국고지원은 인센티브로만 활용

공약 7. 우리 경제의 핵심! 농어촌 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농어촌과 농수산업의 경제·사회적 여건이 열악하여 농 어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기술혁신을 하면서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는 여건 부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유사 기업지원정책 추진과 부처간 칸막이식 지원 문제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기업과의 상생 프로그램 미흡

목 표

- 농어촌의 삶의 질을 높이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며, 농어촌 소득을 증대시켜서 키우겠음
-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끌어 나갈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농어촌 복지 확대와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제고
- 직불제 확충과 유통개혁 등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수산재해대책 개편 등 경영안정망 강화
- IT등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농림수산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 구축
- 농어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 체계 확립
- 수요자 중심형 중소중견기업 지원방식으로 전환
- 중소기업의 중견기업으로 성장지원정책 수립
- 중견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 지원
- 칸막이식 지원방식과 중복사업의 통폐합 문제 해결
-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종합 추진체계 구축·시행
- 글로벌 기업의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재원조달방안

- 기존 지원사업의 칸막이식 지원과 중복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소요재원 대부분 충당가능
-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방안을 발표할 것임

공약 8.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우는 행복교육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우리 학교는 학생에게 행복한 공간이기보다는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공간으로 전락
- 점수따기 무한 경쟁으로 높은 평균 학업성취도에 비해 학습 흥미와 창의력 저하
- 학생의 꿈과 끼를 찾아서 살려주는 교육, 협력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교육,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대전환해야 함.

목 표

- 꿈과 끼를 마음껏 키워, 누구나 성공하는 능력중심 교육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꿈과 끼를 살려주는 교육과정으로 운영
- 교원의 전문성과 사기를 높여 공교육 회복의 전기 마련
- 교육환경을 OECD상위 수준으로 향상시켜 교육양극화 해소
- 교육지원청을 행정업무기관에서 수업연구 및 지원기관으로 전환
-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신설, 범정권적 초당적 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발전방향 제시

재원조달방안

- 공약의 많은 내용이 현재 잘못된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므로 행복교육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기존 예산을 전환하거나 추가 예산 지원토록 함.
- 신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과 함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재원조달 계획 방안을 발표할 것임.

공약 9. 맞춤형 보육과 일·가정 양립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출산과 양육을 여성의 정신적·육체적 행복 실현에 큰 부담이 되는 생애기간 중 주된 사회적 위험의 하나로 인식
- 자녀양육 부담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
- 남성중심적 직장문화로 인해 여성이 일자리에 진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진입한 이후에도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하기 어려움
- 지속적인 여성취업을 뒷받침하는 정책의 실천적 노력 부족으로 일·가족양립 관련 제도의 실효성 미흡

목 표

-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도 확립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제고를 달성함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결혼과 출산이 보다 여성친화적인 생애사건이 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방안 추진
- 일시보육시스템 구축, 방과후 돌봄 서비스 및 학교프로그램 활성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및 아빠의 달 도입 등을 통해 임신,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경감
- 맞춤형 일·가정 양립지원, 보육서비스 지원제도 정착으로 정부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

재원조달방안

- 무상보육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를 정확하게 추계하고, 국비와 지방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조달할 계획이며,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

공약 10. 안전한 사회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아동 성폭력, 납치, 살해 등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고, 그 수단이 흉포화 되어 불안감 고조
- '현실불만형' '사이코패스형' '정신질환형' 등 문지마 범죄 증가
- 일상생활에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 느끼는 국민 증가
- 범죄피해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희생자 지속 증가
- 일상생활에서의 성범죄, 성희롱 문제 만연
- 성범죄자 관리 실패 및 감시시스템의 문제로 성범죄 계속 증가

목 표

- 범죄예방을 위한 공권력의 확충과 내실화, 그리고 첨단 안전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아동성범죄 등 반인륜, 파렴치 범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성범죄자 거주지 이동 및 동선관리 시스템화로 체계적 관리
- 개인 인권을 심하게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방범 CCTV 설치 확대
- 성범죄자 전담수형시설 설치하여 치료프로그램 강화와 맞춤형 교정 프로그램 실시
- 재범률이 높은 우범자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재범 가능성이 강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률 근거 마련
- 아동 음란물 제작·유포 및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 도입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이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재원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약의 세부사항이 완성되면 재원조달 계획도 함께 발표할 계획

문재인 후보 선거공약

공약
공약 1. 일자리 혁명으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p>=> 상세내역</p> <p>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시장의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에 빠진 한국의 노동시장<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정규직은 '절망' 일자리, 청년은 '알바' 일자리, 여성은 '불안' 일자리, 어르신은 '허드레' 일자리 밖에 찾지 못하는 현실- 임금격차는 날로 확대되고, 일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들고, 취업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 현재 한국사회는 '고용없는 성장'과 '고용양극화'로 인해 '1:9 격차사회'로 진입<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비정규직, 나쁜 일자리만 증가(1년 미만 단기일자리 36%, 저임금 일자리 26%, 사회보험 미적용 34%)- 2012년 4월 현재 청년의 명목실업률은 8.5%, 실질실업률은 약 20%(110만명), 여성 고용률(2011년 현재 56.7%)- '사오정(45세 퇴직)'과 남발되는 정리해고로 인해 성실한 가정의 삶이 낭떠러지로 내몰림-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은 계속 증가하고, 8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별과 배제에서 벗어나지 못함○ 좋은 일자리의 감소로 인한 청년 취업난 및 명퇴의 확산, 나쁜 일자리(비정규직, 시간제 등)와 과도한 자영업자 양산과 실패로 인한 소득 감소, 가계부채 급증 등으로 인한 "중산층의 붕괴"가 오늘의 우리 경제임 <p>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달성하여 중산층 비율을 80%수준으로 복원<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일자리위원회를 신설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일 자리를 나누어 지키며, '나쁜'일 자리를 '좋은'일 자리로 바꾸는 '일자리 혁명(만·나·바)'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 '만·나·바'란 :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좋은 일자리 정책- "일 자리를 만들고, 나누고,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 「일자리혁명」을 통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활력소진, 근로빈곤, 악순환의 4대 함정을 극복하고 '고용기적'을 달성 <p>이행절차 및 이행기간</p>

- 포용 · 창조 · 협력 · 생태의 4대성장 전략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포용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중소기업 육성, 일자리 중심의 경제·산업정책 개편, 사회공공서비스 인프라 구축,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 창조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IT/BT/NT/ST/CT 등 최첨단 기술에 기반한 산업육성, 중소·중견기업의 기술연구 역량 강화,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생태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신재생에너지 및 기술투자, 지능형 전력망(스마트그리드)사업, 생태 및 유기농업 등 친환경 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 협력적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청년과 퇴직자간 세대융합형 창업 및 창직 지원, 남북경제연합 ·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좋은 일자리 나누기
 - 실노동시간단축과 교대제 개편으로 일자리 나누기
 -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세대공존형 일자리 나누기
- 절망의 일자리를 희망의 일자리로 바꾸기
 - ‘전 국민 고용평등법’ 제정과 일자리 “최소기준(최저임금보장, 사회보험 적용, 근로기준 준수)” 확립
 - 전 산업 비정규직 비중 절반 이하로 감축
 - 공공부문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 근로기준법의 적용 확대 및 적용제의 축소
 -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결정
 - 4대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 든든한 일자리 지키기
 - 법정 정년 60세 도입 및 단계적 정년 연장
 - 정리해고 요건 강화 및 재고용의무 강화
 - 한국형 실업부조제도 도입 및 공적고용지원서비스 강화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 및 기금 활용

공약 2.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우리의 현실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면 자신의 꿈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와는 거리가 멀
- 승자와 패자가 구조적으로 정해져 있는 현실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은 대기업 등 특정 소수에게 돌아가는 반면, 대다수 국민은 일자리에 불안해하고 양육비, 교육비, 병원비,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에 짓눌리며 가계부채에 허덕이고 있음

○ 이러한 현실로 인해 세계 최저의 출산율, 세계 최고의 노인빈곤률 및 자살률, 총체적 사회양극화 심화 등 우리 사회를 암울하게 하는 각종 병리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는 당장의 고통은 물론, 우리 사회의 기본적 재생산마저 위협하는 것으로서,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입각하여 시급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가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사회 일각에서는 시대착오적 복지망국론을 주장하고 있거나, 철학도 원칙도 없이 시늉만 내는 복지확충 약속으로 국민을 눈속임하려 하고 있음

목 표

○ 대통령 취임 즉시, '제1차 복지국가 5개년 계획'을 시행,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안정된 삶을 보장하고, 복지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상생적 선순환 구조를 정립한다는 비전 하에, 5대 복지를 추진

○ 내 삶에 강한 복지

- 모든 국민이 어떤 곳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자신에게 필요한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10분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10분 동네 복지'를 실현하여 생활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불안을 덜어주는 '생활복지' 실현

○ 민생에 강한 복지

- 국민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하든 최소한의 소득을 유지하며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가계 소득을 보장하며, 보육·교육·요양·의료·주거 등 주요 민생지출을 국가책임 하에 줄임으로써 아이 키우고, 부모님 모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민생복지' 실현

○ 일자리에 강한 복지 확립

- 사회복지·보건의료·'일자리 복지' 실현(복지를 일자리 창출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

○ 지역균형에 강한 복지 확립

- 지자체의 복지사업 추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복지재정을 혁신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만드는 '지역균형 복지' 실현

○ 성평등에 강한 복지 확립

- 남녀가 함께 생활하고, 함께 돌보는 성평등 사회를 위해, 일·생활 균형과 여성의 경력 단절 극복 및 성차별적 제도·문화를 바꾸는 '성평등 복지국가'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보편적 복지 강화

- 0~5세 무상보육 실시와 아동수당 도입

- 고교 의무교육 추진 및 의무교육기관 무상급식 실현
- 연간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 민생 관련 국공립시설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공공병원, 도시형보건의소, 국공립 노인장기요양시설 등

○ 돌보는 복지 강화

- 어르신 복지 강화 :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및 소득하위80%까지 대상자 확대, 노인틀니 지원대상 현행 75세에서 65세로 확대, 고령화사회에 걸맞은 정년 연장, 고령자 일자리 확대

- 장애인복지 강화 :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인연금 인상 및 소득하위 80%까지 대상자 확대, 장애유형과 특성별 예방 및 관리시스템 구축,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및 시·청각 장애인 방송 접근권 확보

- 아동·청소년 복지 강화 : 방과후학교 전면 확대와 동네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등 확충을 통한 학교-지역사회 연계 '방과후돌봄체계' 구축,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및 청소년문화활동·체험활동 지원 강화, 안심등하교 지원시스템 구축

- 다문화 복지 강화 :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지원 확대 및 통번역 서비스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학급·대안학교 설립, 다문화 교육 커리큘럼 개발 및 교사연수

○ 민생복지 강화

- 청년구직자와 자영업 폐업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제 도입, 여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1인1연금제 기반 구축,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반값등록금 실시 및 대학생 주거지원 : 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현재의 50%까지 인하, 대학기숙사 확충 및 공공원룸텔 공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빈곤 탈출형 급여제 및 자산형성 지원제 도입

- 주거복지 확충 : 전월세상한제 도입, 실수요자형 주택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충, 주택바우처제도 시행

○ 성평등 복지 강화

- 성평등기본법 제정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정책 조정위원회'(가칭) 설치

- 양질의 여성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축소

- 사회서비스센터 설립을 통한 돌봄노동 관리체계 개선

-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개선

-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돌봄휴업급여 도입 등 일-생활균형 지원 강화

- 미혼모, 결혼이주여성 등 여성 소외계층 지원 강화

재원조달방안

-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재원 조달

- 재정개혁 : 세출구조, 재정제도, 재정관리체계, 재정용자제도 등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낭비성·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삭감

- 복지개혁

: 복지전달체계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중복 또는 비효율적인 지출 삭감

- 조세개혁

: MB정부의 잘못된 부자감세정책 등으로 인해 왜곡된 세제의 정상화와 세정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 적정화

○ 내국세 8.4%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제도를 도입하여 반값등록금 재원 조달

공약 3. 경제민주화로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재벌중심의 성장론을 뒷받침했던 이른바 ‘낙수효과’가 더 이상 작동되지 않고 있으며, 고용 없는 성장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몰락, 노동시장 양극화, 중산층 붕괴 등의 사회적 문제만 심화시키고 있음

○ 재벌의 왜곡된 소유지배구조와 무분별한 확장으로 인한 경제력 집중과 독점의 폐해,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와 불법행위는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는 주요인이 될 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쟁력도 저하시키고 있음

○ 대기업의 중소기업·중소상인 영역에 대한 문어발식 무차별 사업 확장으로 유통업, 도매·소매업, 식자재 납품업, 음식점업, 공구상 등 골목상점, 재래상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음

○ 우리의 경우 노동3권의 사각지대가 매우 넓어 노동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저임금근로자가 양산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시한폭탄으로서, 경제력이 취약한 서민들은 단순히 생활고에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살인적인 고금리와 악성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숨이 막힐 지경임

목 표

○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 국민경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속적 성장을 이루는 토대 마련

○ 성장의 과실이 공정하게 분배되도록 추진

- 골목상권 보호와 대중소기업간의 상생발전 및 동반성장
- 존중받는 노동으로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안심금융,' '공정금융,' '회복금융'으로 가계부채로 인한 서민 부담 경감 추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법률 개정을 통하여 정책의 변경 추진
 -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최대한 제·개정하고 나머지 법률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조기에 관련 법률 입법화
- < 제·개정 대상 법률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 지주회사 행위 규제 강화, 부당내부거래 및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 강화,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등
-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등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한도 하향 및 금산분리 강화 등
- “법인세법”, “증여세법” 등 :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조세정의 실현
-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 집중투표제 및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및 소수주주의 역할 강화
- “사면법” 등 : 경제범죄에 대한 처벌강화 및 사면 제한
-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불공정 하도급 질서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 확대,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적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허가제 전환, 신규 출점시 주변 상권에 대한 매출영향평가 반영,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제한 등
- “소기업소상공인지원특별조치법” 개정 : 소기업·소상공인제품 우선 구매제도 도입 등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지원 확대 등
- ILO 결사의자유(87호) 및 단체교섭권(98호)협약 비준 추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노동기본권 보장, 단체교섭권 강화 등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 :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 ‘파견근로자보호 법’ 개정 :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근절
- 통합도산법(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 : 개인회생기간 단축, 채무자의 최소 주거권 보장 등
- ‘피에타 3법’ 제·개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 이자율 상한 25%로 인하, 금융기관은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대출 의무화,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한 인권 침해 금지 등

재원조달방안

법률 개정사항으로 정부 예산이 소요되지 않음

공약 4. 새로운 정치로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정당정치가 처한 위기의 본질이자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국민들의 뿌리 깊은 정치 불신임
-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의 집중과 독점의 폐해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음
- 구시대의 낡은 관행에서 탈피하여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가 요구되고 있음
-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 상실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특권과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임
-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정의롭고 공평한 정치의 구현을 위해 기존 관행의 허파와 제도 개혁이 요구됨

목 표

- 정치의 신뢰 회복을 통한 정의롭고 공평한 국정운영의 정착
- 정치권의 과감한 기득권 포기과 정치개혁
- 공직자 부정부패의 원천적 봉쇄
- 지역주의 극복과 국민 참여의 깨끗한 정치로 새로운 정치를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대통령 권한의 분산과 책임정치의 강화
 -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 이외의 자의적인 대통령 권한 불행사
 - 책임총리제를 도입하여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분산
- 지역주의 정치구조를 지속시키는 선거제도 개혁
 -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200:100으로 조정
 - 의원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구 획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독립기구화
- 정당 개혁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
 - 공직후보 공천권과 비례대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줌
 - 정책당원제 도입과 당원협의회 개혁
 - 온오프가 결합된 네트워크 정당의 구현
- 국회의원의 기득권, 특권의 포기과 책임성 강화
 - 국회의원의 징계가 국회의원의 제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절반 이상 일반시민 참여 및 의결시한 명문화
 - 현행 국회의원 연금 폐지 및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
 - 대화와 타협을 위한 상시적인 “여·야·정 정책협의회” 구성
- 공직자 부정부패의 원천적 봉쇄와 박주기 수사 차단
 -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5대 부패 행위자(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와 5대 비리 행위자(정치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부동산 투기, 탈세, 병역비리)의 정부 참여 배제

- 대통령의 경우 형제, 자매의 재산 공개 제도화
- 공직자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
- 고위공직자와 사회적 책임이 큰 재벌의 불기소시 검찰시민위원회 회부 의무화 및 국민참여재판 제도화
-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절차 마련, 피해회복 및 사전보호조치 강화

○ 검찰개혁과 경찰개혁

-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기능 폐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 검찰의 청와대 파견제도 금지
-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검찰업무 이외의 대국민 서비스와 전문성 강화
- 행정부 검사파견제도의 전면 재검토
-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 위원회의 권한 대폭 확대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점진적 조정
-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민생치안 강화

○ 이행기간 : 19대 국회 내에 관련법 제·개정 추진

재원조달방안

○ 非예산 사업

공약 5. 평화와 공존으로 안정과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우리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북조치인 5.24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었으며, 남북협력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대결과 불신의 남북관계를 종식하고,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를 열어 나가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켜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필수
- MB 정부들어 지나치게 편중된 미국 중심의 외교로 인해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악화
 - 그로인해 천안함 사건,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 러시아 등의 협조를 얻지 못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
 -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균형적인 실리 외교를 추구하지 못하고, 미국산 쇠고기 개방, 한미 FTA 재협상 등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민적 반발과 국론 분열이 심화
- 18개월로 단축기로 한 복무기간이 MB정부들어 21개월로 고착

○ 참여정부는 사병 봉급 월24,400→88,000원으로 증액했으나, MB정부는 공무원 인상률 (연3-4%) 수준에 불과하다가 선거를 앞둔 '13년 예산은 15%인상 제시

○ 참여정부 5년 평균 국방비 증액률(전년 대비) 8.8%수준 이었으나, MB정부 6% 수준으로 군 무기·장비 등의 현대화 지체

목 표

○ 남북경제협력 시대 개척

- 1인당 3만 달러의 국민소득을 실현하고 인구 8천만의 한반도 공동시장 형성

○ 한미동맹 공고화와 균형외교로 동북아 평화선도국가 역할

- 6자회담을 항구적인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며,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정상화를 지원하여 동북아에서 평화와 협력관계를 구축
-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는 물론 약화된 대중·러 관계의 복원 및 강화

○ 병력의 효율화를 통해 병력을 2020년까지 50만으로 감축

○ 무기·장비의 현대화를 통해 정예과학군화

○ 군 조직의 선진화 : 부대 수 및 계선구조 재검토

○ 병영문화개선 : 장병 복지, 일반 사회 수준으로 제고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남북경제협력시대

- 남북경제연합 5개년 계획을 수립, 이행 : 10.4선언에서 합의한 48개 공동사업과 남북한 연계효과가 높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 한반도, 중국, 러시아, 일본이 포함되는 인구 6억명 시장의 '동북아협력성장벨트' 형성

- 북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와 '북한개발투자공사' 설립

- 이행 기간 : 임기 5년 전체

○ 임기 5년 동안 6자회담 정상화와 다자안보협력체제로의 전환을 이루어내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 번영 달성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이행 점검

- 국방개혁 기본계획 재수립

재원조달방안

- 남북협력기금 활용
- 일반회계와 국방경영 효율화로 충당

공약 6. 국민의 안전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지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빈발하는 성폭력범죄, 묻지마 살인 범죄 등으로 인해 여성이나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불안이나 고통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
- 민방위훈련과 민방위교육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회적 범죄에 대비한 국민 참여형 제도로 재편할 필요
- 교통사고가 줄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통사고 감소대책, 특히 어린이나 노인의 교통사고 감소대책을 시행할 필요
-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대책이 미비하고,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구조 및 복구 지원이 아직도 부족한 수준이므로, 사고 예방과 응급구조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
- 기후변화에 따라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산사태 및 지하시설물 침수로 인명과 재산피해가 속출하는 실정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안전성 논란, 멜라민 파동, 구제역 확산, 라면스프 발암물질 논란 등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역할강화가 요구되고 있음
-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고, 질병, 위해식품, 각종 폭력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안전에 두어야 할 것임

목 표

-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 재난관리능력 강화 및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체계 마련
- 민생치안 강화
- 교통안전 강화
- 시설물 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전생활 구축
-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예방대책 마련
-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아동 청소년 보호강화

- 식품안전 및 방역관리 체계 강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이행 절차

-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
 - 국가 재난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 소방방재인력 확충, 소방방재장비 현대화,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 민방위훈련을 사회재난 대비 훈련으로 대체
 - 응급의료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 축소
 - 스마트폰을 활용한 생활형 실시간 맞춤 기상서비스 강화
- 민생치안 역량 강화
 - 방법, 교통, 생활안전 등 민생치안 경찰인력 3만명 확충
 - 전의경제도를 폐지하고 경찰관으로 대체
 - 주민 친화적 책임치안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경찰제 도입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재조정
 - 민방위 대원을 활용한 국민참여형 치안대책 추진
 - 지역사회 안전과 범죄예방을 전담하는 사회적 기업 육성
 - 범죄 신고자의 보호 강화
 - 취약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확대 설치
 - 조직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등 강력범죄 발본색원
 - 미아실종자 찾기 전폭 지원
- 교통환경을 보행자 위주로 개선하고 교통안전 강화
 - 보행자, 자전거, 어린이와 노약자의 안전을 위하여 “ZONE 30Km/h”을 확대하고, 보행자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 어린이안전교육 강화, 노인교통사고예방대책, 교통 전문인력 확충 등
- 각종 시설물안전 확보를 통한 국민의 안녕 도모
 - 차량안전기준 강화 및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 기준 강화
 - 4차로 이상 도로에 원칙적으로 중앙분리대 설치
 - 건축물의 피난 및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안전체험관」광역별 건립 확대
 -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강화
- 식품안전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 보호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통관단계 및 현지조사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활성화 및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시스템 구축
 - GMO표시제 및 농축수산물 검역기준 강화

- 학교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 청소년의 보호 강화
 - 학교를 전담하는 권역별 담당 경찰관 제도 운영
- 성범죄로부터 여성과 아동 보호 강화
 - 방과후 ‘나홀로 학생’ 없도록 돌봄 전달체계 연계망 구축, 돌봄 인프라 확대
 - ‘성범죄 우범자 관리 전담부서’ 설치 등 우범자 관리강화
 - 친고죄 폐지, 인권통합 교육 의무화 등 성범죄 예방 강화
 - 국무총리실 산하 ‘(가칭)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
- 이행기간 : 2013년~2017년 차기 정부 임기동안

재원조달방안

- 경찰인력·소방인력 확충 및 국가안전체험관 건립
 - 1조 2,500억원

공약 7.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MB정부의 과도한 경쟁 교육으로 공교육 황폐화 심각
 - 0교시, 우열반 편성, 일제고사와 성적공개 등으로 초등학생들조차 점수 따기 교육에 멍들고 창의력 교육 실종
 -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높으나 학교 만족도는 최하 위 수준이고 소모적이고 비교육적 경쟁으로 아이들의 고통 심각
 - 만성적 고질병 사교육 문제
 - 사교육비는 ‘11년 총 규모가 20조 1천억원에 달하고 가계의 사교육 부담이 커서 노후 준비도 포기
 - MB정부의 고교 서열화
 - 특목고, 자사고 확대로 고교 서열화, 일반 고교 슬럼화 초래
- 교육양극화 심화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상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대비 소득하위 10% 가정의 사교육비 지출액은 2000년 6.3배에서 2010년 14.6배로 확대
- 대학서열화, 학벌주의 고착화
 - 대학서열화와 학벌주의로 대입경쟁이 치열하여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못하고 사교육비 과다 지출
 - 서울-수도권-지방대학간 격차 심화

목 표

-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 학급당 학생수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경감

- 혁신학교 성공모델 확산, 교육과정, 교수방법, 학교문화 혁신
- 심표가 있는 교육 ‘행복한 중2 국가 프로젝트’
 - 한 학기 내지 1년 동안 진로, 적성 찾기, 직업체험 등 아이들의 꿈 찾기 프로젝트 추진
- 초·중등 교사 추가 증원, 비교과 교사 및 교육전문인력 확충
- 일제교사를 폐지하고 표집조사로 전환
- 공평한 교육 기회 실현
 - 출발선을 같게 하기 위해 저소득계층 유아 종합적 돌봄 지원
 - 초등 저학년 학급당 학생수부터 줄여 개별화 교육 실시
 - 초등학생 방과후 나홀로 방치되는 아이가 없도록 ‘학교 돌봄체계’ 구축
 - 고교서열화 전면 수정
 -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외고, 자사고를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일반고로 전환하도록 유도
 - 일반고교의 프로그램 다양화·특성화
-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추진
-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 중학교부터 전문상담교사 배치
 - 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치유교육, 학교부적응아 교육을 위해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
- 대입제도 개혁
 - 대입전형 단순화, 대입 지원처를 통해 국가가 대입지원 관리
 - 사회통합전형 제도를 통해 교육배려 대상자 기회 확대
- 교육재정 확대를 통해 국가 공교육 책임 강화
 - 지방교육재정 확대
 - 고등교육재정을 GDP 대비 1%로 확대하고 반값등록금 추진
-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여 학벌주의 완화
 -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 지방대학 육성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도모
 - 강의 개방, 학점 교류 등 국립대 연합체제 구축을 통해 국립대 공동학위제 추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21세기 새로운 학교패러다임으로 창의적 교육 실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초중등교육재정 확충
 - 혁신교육지원법 제정
 - 2013년 행복한 중2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구성
 -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

- 공평한 교육기회 실현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2014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확대
- 학교폭력없는 평화로운 학교만들기
 - 2014년도부터 전문상담교사 대폭 확대
 - 두 번째 기회를 주는 학교 확대를 위해 전국에 3곳인 Wee school을 2017년까지 전국 16개 시도에 중·소규모의 기숙학교 형태로 신설
 - 대안교육 활성화
- 2013년 대입지원처 및 대입전형단순화 추진위원회 설치
- 지방대학발전지원법 제정
- 고등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 국가교육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재원조달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 확충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예산 확충

공약 8. 미래 성장동력 확충으로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은 반드시 필요함.
- 과학기술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없으면 성장도 일자리도 없음. 국가의 운명과 인류의 미래가 과학기술에 달려있음
 - MB정부의 과학기술부 폐지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미래 성장동력의 기초가 되는 과학기술을 소홀히 다루고 있음
 - 낮은 기초 R&D 비중과 단기·상용화 위주 R&D예산,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부족과 이공계 진로이탈등의 문제 발생
-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고용 없는 성장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양한 성장동력의 발굴과 확충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바이오·나노·친환경 등 미래성장산업,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문화콘텐츠 산업 등 창조적성장산업 육성
- MB정부의 5·24 대책조치로 인해 남북교역이 전면 중단되었고, 남북협력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못해 대한민국 재도약 기회 상실

목 표

-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 과학기술부 부활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획기적 발전 도모와 연구환경 개선
-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 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IT·SW, 부품소재, 스마트그리드, 융합산업 등 육성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 조성

-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 문화·예술·관광 산업을 창조적 성장동력으로 견인
- 경제분야에서부터 통일을 향해 나아가는 남북경제연합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견인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과학기술 강국을 통한 성장동력 기반 마련
 - 과학기술부 부활을 통한 과학기술 정책 대응 역량 강화(정부조직법 개정)
 - 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역량 강화(과학기술인 정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 기초 R&D 비중 확대 및 창의적 과학기술 인력 육성
 - 지방 R&D 투자 비중 확대로 지방과학기술 진흥
 - 이공계 우대 및 취업 지원 확대
 -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 바이오·나노, 친환경, 항공우주, 문화콘텐츠, 방송통신융합IT(ICT)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
 - 제2의 IT산업 전성기 구축을 통한 IT산업 강국으로의 재도약과 융합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
 - 부품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재산업 중점 육성
 - 스마트그리드(지능형전력망)에 대한 투자 확대
 -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 모태펀드 출자 재원 확대, 기술창업 및 창업초기기업 등에 단계별 자금조달 지원 체계 구축, 창업기업의 법인설립·유지 등 절차 간소화과제 지속 발굴,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 부담 완화
 - IT·SW 인재 육성 강화, SW R&D 투자 확대를 통한 IT산업구조 불균형 개선, SW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 문화·예술·관광 산업을 창조적 성장동력으로 견인
 - 영화, 애니메이션, 케이팝,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 지원 강화
 - 한류의 지속적인 지원으로 대한민국의 문화영토 확대
 - 한류콘텐츠와 관광·제조업 등과의 융합사업 발굴 지원 확대
 - 보편적 문화복지 확대 등을 통한 문화산업 수요 창출
 - 지방의 문화 인프라 확대 및 문화 접근권 강화
 - 문화·예술·관광·콘텐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 남북경제연합을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견인
 -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재가동, 무관세 거래와 투자 보호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하는 '남북간 포괄적인 경제협약' 체결
 - 남북경제연합을 위한 5개년 계획 수립 및 남북 공동 이행
- * 환동해 경제권 개발(설악산-금강산 연결하는 친환경 국제관광지대 발전), 환서해 경제권

개발(인천-개성공단-해주삼각지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 개성공단 확대 등

- 북한의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인프라개발기구 설치

○ 이행 기간 : 임기 5년에 걸쳐 이행

재원조달방안

○ (과학기술 강국) 일반회계 활용

○ (미래 성장동력 발굴) 일반회계,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정보통신진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활용

○ (벤처·창업 활성화와 IT·SW 생태계 구축) 일반회계, 중소기업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활용

○ (문화, 예술, 관광 산업 육성) 일반회계 활용

○ (남북경제연합) 남북협력기금 활용

공약 9. 지역과 농어촌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그동안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법,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등 분권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었지만, 교육자치의 개선이나 자치경찰제 도입 등 실질적 포괄적 지방분권이 미흡하고,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 지방재정은 국세에 대한 지방세의 비중이 낮고, 지방세제가 비탄력적이며, 지방재정 중 이전재원의 비중이 높아 지방의 재정자율성이 취약한 실정임

○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이나 자원의 불균형 등 자치여건의 불균형이 심각한 실정임

○ 산업·기술·자금·인력·개발 등도 수도권에 집중되어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은 점점 심화되고 있음

○ 한편, 농어업은 무분별한 수입개방으로 곤경에 처해 있고, 가뭄·태풍·구제역 등 대형 재해가 되풀이 되고 있으나 국가의 보호장치는 미미한 실정임

○ 이명박 정부는 농업·농촌의 선진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성찰적 고민 없이 일이 터지면 대응하는 식의 후진적 농정을 반복하여 농어촌은 고령화와 인구과소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수익률이 점점 떨어져 쇠락하고 있음

○ 참여정부에서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건설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나 MB정부 들어 답보상태

목 표

○ 지방자치 역량 강화, 지방재정 확대 등을 통한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

○ 중앙과 지방 및 지방간 상생적 관계 정립

○ 자율통제방식의 주민참여 확대

○ 지역간 재정 균형 확보

○ 지역균형발전 시스템 구축

- 자립형 지방화 기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일자리 창출
-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혁신도시를 국가성장동력 거점도시로 건설
- 문재인 후보의 “삼농(三農)혁신 구상”을 통해 “사람중심의 농업, 국민농업시대” 구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지방분권 강화

- 재정분권까지 제대로 이루는 지방분권의 제도적 보장 추진
-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의무조항 신설
- 자치입법권 확대 및 강화
- 자치과세권 근거 마련
- 지방세의 과세대상 확대 등 획기적인 재정분권 시스템 구축
- 사업별 국고보조금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
- 기초의회 지방선거제도 개선 검토
- 정책결정에 지방의 참여 기회 확대
- 차기 정부 임기동안 이행 완료

■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유망 산업 육성
- 시·도 단위로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의 내실화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 공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
-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사람·R&D 중심의 산업단지(휴먼파크)로 조성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주치의센터’ 운영 활성화
- R&D 지원 프로그램을 고용창출형 R&D로 전환하고, 고용성장에 따른 예산 차등 지원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유도
- 산학연 공동 R&D, 대·중·소기업 동반성장형 R&D 등을 중점 지원, 수도권과 지방의 R&D 격차 완화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를 통해 지방의 고용증대와 지역경쟁력 제고

■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정상추진

- 기관이전은 2030년까지 3단계로 진행 중인 바,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해 차질 없는 기관이전 및 자족기능을 갖춘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조기 건설
- 혁신도시는 기반시설공사, 특히, 공공기관 직원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공동주택, 학교, 상하수도 건설을 조기에 완료할 예정

■ 농어촌 균형발전

- 곡물자급률 2030년까지 50% 달성
- 친환경농업육성, 먹거리 복지, 공공급식 확대, 로컬푸드 활성화, 친환경농업 2020년까지 30% 달성
- 직불제 강화를 통해 “농가소득안전망” 구축, 우선 쌀직불금 인상
- 농어민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확대,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고령농·영세농에 대한 사회안전망 단계적 확충

- 각종 재해에 대한 지원과 보험제도를 선진국수준으로 단계적 정비
- 한미FTA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재점검하여 피해보전대책 마련
-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농업생산기반을 재정비하고, 에너지 절약형 농업 육성
- 농업인들의 유통기능을 강화하고 가격결정권을 주도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생협 등 직거래 유통도 확대

재원조달방안

- 지방분권은 주로 제도개선 사항
- 기존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기 계획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총사업비 22조 5,000억원, 혁신도시 총사업비 9조 9,493억원 연도별 차질 없이 집행
- 국가전체예산 증가율만큼 농어업예산을 증가시켜 농어촌균형발전 구현

공약 10. 후손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환경을 파괴하는 무리한 4대강 추진 등 국토의 난개발
 - MB정부의 4대강사업은 수질개선, 생태환경보호, 홍수예방, 수량확보 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류하천의 홍수피해 가능성만 높여 놓은 국민기만 사업
 - 4대강 사업의 과도한 준설로 인한 지류하천들의 역행침식으로 하천 제방의 훼손과 생태계 교란 심각
 - 국가차원의 대규모 토목공사로 국토환경의 지속가능성이 훼손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년을 맞아 전 세계적으로 거센 '탈핵' 바람이 불면서 원자력에너지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수급체계로 볼 수 없다는 인식 확산
 - 원전의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 부각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2007년, 0.616kgCO₂/천원)하던 GDP단위당 온실가스 배출이 MB 정부 들어 소폭 상승
 - 2012년 7월 23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을 입법예고(2015년 실행)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2012년 9월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부실 대응은 유해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통합관리 시스템의 부재와 관련분야의 물리적·인적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것임
 - 2008년 석면사용 실태 조사 결과 조사대상 공공건물의 79%, 다중이용시설의 48.9%가 석면 사용
 - 실내 공기오염 증가로 새집증후군 등 신규 질병이 증가하면서 실내공기의 적정관리가 필요
 - 2009년 수도권 지역인 서울, 인천의 경우 미세먼지, NO₂, 오존등의 농도가 다른 대

도시에 비해 심각

목 표

- 4대강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 4대강을 자연 그대로 복원 추진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 탈원전 로드맵 추진 및 가동중 원전의 안전대책 강화
 - 신재생에너지 공급 대폭 확대 실현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 중소기업, 농어촌, 취약계층을 고려한 실질적인 기후변화 정책 마련 및 실효적 온실가스 감축 제도 실시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만들기
 -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피해보상 실현
 - 어린이 건강보호 관리체계 구축 및 실내대기질 관리 강화
 - 수도권 대기질의 획기적 개선 실현
 - 깨끗한 먹거리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
 - 자원순환원칙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실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4대강 재자연화 및 국토의 난개발 방지
 - 새정부 출발과 동시에 ‘국민참여검증단’ 운영을 통해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국민과 함께 수립하고 ‘4대강복원본부’ 설치를 통해 대안정책 시행
 - 4대강 사업의 비리, 부실, 환경파괴 실태를 규명하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4대강의 재자연화 방안 마련
 - 「4대강 사업 검증 및 자연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제정 및 「자연환경보전법」개정
 - 4대강 유역 훼손된 지류하천 생태계 재자연화 사업 추진
 - 지속가능성 평가체계 수립 및 국가개발계획에 적용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 2024년까지 원전 14기 추가건설을 제시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2030년까지 에너지발전량 중 원전 비율을 58%까지 확대키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전면 재검토
 - 2030년까지 전력수요를 수요전망치대비 20% 감축
 - 2030년까지 에너지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
 -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그리드 전력체계 구축
 -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참여 확대 추진
 - 대기업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및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실현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조속 시행 및 무상할당 비율 재조정 추진
 - 취약계층을 배려한 기후변화 대응 경제정책 마련

■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유해화학물질 관련 법률 제·개정 및 관련분야 인프라 강화
- 석재제품의 석면포함 여부 검사 제도화 추진
- 자연방사성 물질로 인한 피해 기준 마련 추진
- ‘어린이 환경성 질환예방관리 센터(아토피센터)’ 추가 신설 및 어린이 건강 종합 콜센터 운영
- 친환경도료의 전국적 보급 확대 및 어린이 생활공간(유치원, 학교, 학원 등)의 실내 대기질 관리시스템 마련
- 수도권특별대책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 전체지역으로 확대
- 읍면지역 일반상수도 전환 및 시설개선 추진
- 폐기물 등급에 따른 일정비율 재사용 및 재활용 의무 법제화 추진

재원조달방안

- 4대강사업 재자연화는 구체적 방안 확정 후 소요재원 산출가능
-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 에너지자원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활용
-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및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교통·에너지·환경세 연장 및 용도변경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분야에 투입

안철수 후보 선거공약

공약
공약 1. 성장의 열매가 국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가도록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겠습니다.
<p>=> 상세내역</p> <p>현황과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사회 양극화 심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의 기회균등, 공정한 경쟁, 경제주체(대·중소기업, 기업·노동자 등) 간의 상생 저해 <p>목 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헌법정신의 실현<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영역에서의 기회 균등’, ‘개인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등 헌법정신 실현○ 창의적인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권 해소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기회를 확대하여 창의적 기업 활동 활성화○ 민생안정을 통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도모 <p>이행절차 및 이행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7대 영역에서 개혁을 실현해 경제민주화 달성<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벌개혁, 금융개혁, 민생안정, 혁신경제와 패자 부활, 노동 개혁과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공공 개혁○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개혁 추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벌정책의 수립 및 추진, 유관 부처 간 업무조율 등 정책총괄○ 재벌개혁 추진<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 상권 침해 방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 강화- 금산분리 강화 및 지주회사 규제 강화-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연기금 주주권 행사 등 재벌 지배구조에 대한 통제 강화- 개혁이 미진할 경우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p>재원조달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제도 개선사항 중심

공약 2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 고용 없는 성장의 고착화와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의 증가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저조
 -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대우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4.2%(정부 통계)에서 49.4%(노동계 통계) 차지

목 표

-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 실현
 - 경제민주화, 복지, 혁신경제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 구축
-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사회 통합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비정규직 차별 시정 및 정규직 전환 확대
-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
 - 공공부문의 2년 이상 계속되는 직무에 대해 정규직 사용
 - 민간부문은 고용공시제를 통해 정규직화 유도
- 역동적 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고성장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고용보조금(추가 고용 1인당 연간 1,000만원 이상) 지원
 - '중견기업육성법' 제정, 중소기업청 확대 개편
-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새로운 블루오션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녹색경제, 북방경제 시대의 신성장산업 개발 및 정보통신, 법률, 의료 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
- 문화예술을 새로운 성장 동력원으로 육성
 -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및 아시아 지역 문화허브 구축
- 벤처 생태계 정비를 통한 청년창업 활성화
 - 소프트웨어와 문화컨텐츠에 대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투자멘토링제 구축
 - 엔젤투자 등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지원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공약 3. 자영업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대기업의 상생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자영업자의 7.5%가 6개월 내, 46.9%가 3년 내 폐업한다는 조사결과처럼 한계상황에 내몰려 있음
- 중소기업의 성장경로 제한
 - 전체 기업 수의 99.9%(약 300만개)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경로가 막혀, 경제성장 정체

목 표

-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 구축
 - 공동체 모든 구성원이 과실을 골고루 나눠 갖게 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실패자도 재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육성을 통한 풀뿌리경제 활성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비용 절감, 창업실패자 지원 확대
 - 금융비용 감소 추진(저금리 대출 확대)
 -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간이사업자 매출액기준 상향 조정, 임대료분쟁위원회 설치, 임차인 퇴거 제한제도 도입
 - 재창업자금 지원, 창업 및 전직 컨설팅 강화, 신용회복 지원 확대
 - 골목상권에 대한 대기업 계열회사 진입 제한,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 점진적 철수
-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육성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위한 전문 금융기관 설치
 - 정부조달물품의 우선구매를 통한 수익성 제고 유도
- 중소기업 금융비용 경감 및 수익구조 개선
 - 고위험 신성장분야 투자에 대한 손실공제제도 및 세제지원 확대
 - 정부조달시장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참여 확대
 - 중소기업 공동 R&D 연구센터 설립 지원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 및 우선순위 조정
- 조세감면 축소 및 실효세율

공약 4. 창의성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교육과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 과도한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성과 다양성 결여
 - 높은 등록금과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한 아르바이트와 스펙 쌓기로 인한 대학교육 경쟁력 약화
- 대학의 서열화, 사회에 만연한 학력? 학벌 차별, 학력의 대물림으로 인한 각종 격차 발생
- 문화예술 인프라 부족과 지역적 격차

목 표

-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및 문화예술 다양성 강화
- 학벌사회 폐해 해소 및 초중등교육 정상화
- 학비부담 절감
- 고졸자와 대졸자 간의 격차 완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초중고 교육에서 창의·통합형 사고 중심 교육 강화
 - 교육제도·교원정책 혁신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
 - 진로 연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교 교육 개선
- 고교 무상교육 실시
- 대학 서열화 완화 및 특성화·전문화
- 대학 입시제도 개선으로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
 - 대입전형을 획기적으로 간소화
 - 대학입시를 진로에 맞게 특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기회균등 원칙 아래 대학 학비 부담 완화
 - 국공립, 사립대 함께 단계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실현
 - 지역 대학 육성
- 공동체 가치를 높이는 문화예술 콘텐츠 지원

재원조달방안

-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하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를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조달

공약 5. 국민이 신뢰하는 든든한 복지체계를 만들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무너질 위기에 직면, 저출산·고령화 급속 진행
- 2012년 현재 한국의 복지 예산은 GDP의 9.5%로 OECD 평균인 19.5%의 절반 수준

목 표

-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으로서의 복지체계 확립
- 보육, 주거, 건강, 노후가 걱정 없는 공동체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노인빈곤을 제로
 - 노인형 일자리 확충, 기초노령연금 평균소득 10% 수준으로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 보육의 공공성 강화
 -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30%이상 되도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아동수당제 도입,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 의료 민영화 반대, 저비용 저급여 의료보험체계 개선(적정부담 적정급여),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확대를 통해 주거문제 해결

재원조달방안

- 정부 예산의 자연스러운 증가분을 우선적으로 사용
- SOC 분야에서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축소 등 지출구조 개편을 통해 확보

공약 6. 차별 없는 대한민국 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약자, 소수자, 지역, 성별, 장애 등에 대한 차별 만연
 - 수도권 집중현상은 수도권과 지역 간 양극화로 사회갈등 조장
 -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OECD 평균 이하, 승진 등에서 차별 만연
 - 장애인 처우 개선 미미
 - 다문화 가정, 소수자, 새터민의 사회적 소외 심화

목 표

- 헌법정신에 따라 지역 간 격차 해소
- 성별, 장애, 인종, 출신,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 금지 강화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 차별금지기본법 제정
 -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재정, 교육, 고용 관련 포괄적 지원 근거 마련
- 지자체의 재정분권, 지방재정 강화 추진
 -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 조정
 - 교부금, 보조금 제도 개선 (노령연금,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보편적 복지비용은 전액 국비지원 추진)
-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각종 지원 확대
 - 지방거점대학 육성, 지역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지역의 대학과 산업이 연계되고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발전 추진
- 장애인연금 현실화, 장애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도입, 이동권, 주거권 보장

재원조달방안

- 법과 제도 개선 사항 (지방세제, 국고보조금, 교부금 제도 등)

공약 7. 과학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한 에너지 - 깨끗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됨
- 자원과 에너지의 대량 투입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의 한계에 직면
-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물론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 가능성 대두

목 표

- 원자력발전 비중 축소와 수요관리 중심 에너지정책 기조 확립
-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인프라 마련
- 폐기물 감축과 생물다양성 확대로 깨끗한 생태환경 구축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강화
 - 사회적 형평성, 환경성,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적용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는 범위에서 왜곡된 전기요금체계를 개선
 -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
- 원자력 에너지 의존 구조 출구전략 마련
 -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 중지,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집단의 안전성 점검과 투명한 공개

- 재생가능 에너지 확대
 -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발전비중 30%)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융·복합형 미래 신기술 확보
 - 실패 위험이 큰 신생 원천기술, 기초과학, 핵융합 등 대형과학기술 및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개발로 국책 및 출연연구기관의 임무 재정립
 - 자연을 복원하는 기술, 자원 낭비를 줄이는 기술, 태양광 활용기술, 지구온난화 물질과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 산업 및 생활현장 재활용률·재사용률 제고
- 국제협약에 기초해 멸종위기 생물 보호

재원조달방안

- 에너지특별회계, 전력산업기반기금,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재도입 등

공약 8. 농어업을 먹거리 안전성과 식량주권을 지키는 생명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국제시장 불안정으로 먹거리 위기 상시화
- 시장 개방과 수입 확대로 식량자급률 하락

목 표

- 식량 자급능력 향상
- 안전한 먹거리 보장
- 지속가능한 생명산업 육성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식량 생산기반 확충
 - 농지보존제도의 강화, 유휴농지 이용도 높이기, 논농업 다양화
 - 해외 농업생산기지 구축, 위기 대응 매뉴얼 제도화 추진
- 농어가의 소득과 자부심 늘리기
 - 농어가 소득증대에 정부 역량 집중
 - 환경친화적 농어업 집중 지원
 - 생산자 및 소비자 협동조합 지원으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 현장 농어업인과 관련 분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를 협치의 원칙에 따라 마련

재원조달방안

○ 대기업과 고소득자 등에 편중된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법인세 등의 구간 조정을 검토하며, 상속증여세 회피 방지 등 그동안 제대로 과세되지 않았던 분야를 조세정의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재원을 조달

공약 9. 정치혁신으로 반칙, 특권, 부정부패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소통 부재와 권위주의의 부활
- 시대 역행적인 권력형 비리, 사익 추구로 정치 불신 심화

목 표

- 권위주의 정치 타파, 소통과 참여의 민주정치 실현
- 중산층과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정치 실현
- 반칙·특권·부정부패 일소, 상식의 정치 실현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제약적 대통령의 폐해 해소
 -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및 예산심의권 존중
 - 대법관회의의 호선을 바탕으로 대법원장 후보추천 의뢰
 - 5대 권력기관 독립성 보장,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 국민의 실생활을 돕는 '안심형 정부'로 개혁
 - 부처간 정보공유와 조정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
 -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한 국민 실생활 중심의 정책 시행
 - 어린이, 여성 등을 위한 안전하고 편안한 치안체계 구축
- 소통과 타협의 새로운 정치문화 형성
 - 노-사-정, 대-중소기업, 세대, 수도권-지방 등 갈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추진
 - 일하는 국회, 특권 없는 국회, 국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국회로 개혁

재원조달방안

법·제도 개선사항

공약 10.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평화로운 한반도와 북방경제시대를 열겠습니다.

=> 상세내역

현황과 문제점

- 북핵문제 표류, 총체적 안보 무능 표출
 - 남북 대결정책으로 남북대화 실종, 6자회담 표류,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강화
 - 서해에서의 일련의 충돌사태와 북한군 귀순 등에서 대북경계, 지휘보고, 사후대응 등 총체적 국방실패 노정
- 남북경협 후퇴, 북-중, 북-러 협력 심화
 -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의 정체, 남북교역의 중단으로 남측 중소기업 및 접경지역 자영업자들의 고통 가중
 - 북·중·러는 국제물류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남북경협 대신 북중간 경협 심화로 중국 종속화 우려 심화

목 표

- 튼튼한 안보,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대화와 협력 진행
- 남북협력-북핵해결-한반도평화체제의 동시 병행 추진
- 남북 및 미-중-일-러의 협력을 통해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창출

이행절차 및 이행기간

- 과학화·전문화된 국군 육성
 - 현대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신기법의 관리혁신, 운영혁신
- 한반도 평화 정착
 - 남북협력, 북핵해결,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병행적 추진
- 남북경협 주요과제 신속 추진
 - 개성공단 확대, 나선경제특구 참여 등으로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프로젝트' 실현
 - 환황해·환동해 경제권 형성으로 접경지역 병행발전 추진
- 북방경제 3대 사업 추진
 - 대륙철도와 도로·해운이 결합하는 복합형 물류망 구축
 - 북방국가들과의 에너지·자원협력 강화
 -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북방 농업협력 추진

재원조달방안

- 불요불급한 예산 절감과 우선순위 조정으로 조달하되, 사업 성과에 따른 세수 증대로 보완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수신 : 각 언론사 외교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발신 : 53개 UPR 2차 NGO 보고서 작성단체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김종철 02-3478-0529, 민변 이동화 02-522-7284, 참여연대 백가운 02-723-4250)

제목 :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 한국 정부 변명으로 일관

날짜 : 2012. 10. 28. (총 4 쪽)

논평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에 한국 정부 변명으로 일관

인권상황 심의받는 제2차 유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열려
차별금지법, 양심적 병역거부, 군대 내 성소수자 등 다양한 권고 쏟아져

- 지난 10월 25일(목),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권고를 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동 입양에 관한 규정인 아동권리협약 제21조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고 인신매매의정서를 순차적으로 비준하겠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과연 정부가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점검하고 향상시키고자 하는 UPR의 기본 정신과 목적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UPR 심사에서는 총 65개국이 한국 정부에게 인권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따른 권고를 내렸다. 차별금지법 제정,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 성폭력 및 가정폭력 방지, 여성인권 증진,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보장, 출생등록 제도 개정, 주요 국제인권협약 비준 및 유보 철회, 이주노동자 및 이주민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인권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등은 1차 UPR때 제기된 권고사항일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문제들이지만 한국 정부 대표들은 인권 개선에 대한 의지 없이 변명으로만 일관했다.
-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과도한 공권력 행사를 자제하라는 프랑스와 폴란드

의 권고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공공질서 유지와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집회를 규제하고 있으며 폭력행위나 타인의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규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제주 강정마을에서 계속되고 있는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이로 인한 평화활동가들의 신체적 부상, 부당한 구속 등을 볼 때 경찰청의 이러한 발언은 현실과는 전혀 다른 거짓이라는 점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강정마을에서의 평화로운 집회시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특별보고관들이 공개 질의 서한을 보낸 바도 있는 바, 경찰청은 어떠한 국제인권기준에 의해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지, 평화롭게 집회하던 평화활동가 및 주민들이 도대체 어떠한 폭력을 행사했기에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했는지에 대한 답을 해야 할 것이다.

4. 군대 내에서 성적 지향을 근거로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폐지할 것을 검토하라는 미국의 권고에 대해 국방부는 “해당 조항인 군형법 제92조의 5가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확립이라는 공익을 위한 규정이므로 이의 폐지 및 개정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동성애가 공동사회를 불건전하게 만든다고 이야기함과 동시에 군대내 동성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등 성소수자 인권보호에 힘쓰고 있다는 국방부는 스스로 모순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5.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미국, 독일을 비롯한 8개국의 권고에 국방부는 특수한 남북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 상황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으므로 대체복무제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으나 2008년도 이후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현재 매년 1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병역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익근무 등 대체복무를 하고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본인의 신념에 따라 대체복무자들이 받는 4주간의 기본군사훈련을 받을 수 없어 무조건 처벌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한 해 600여명 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필요한 병력 확보에 위해가 되므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들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6. 일본, 영국을 비롯한 8개국이 권고한 의사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이며 해당 위원회의 시정요구는 권고사항으로써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를 받은 게시물 대부분이 인터넷망으로부터 완전히 제거되고 있으며 사실상 100%의 이행률은 이 시정요구가 실질적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도 방통심의위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이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으며 2010년 한국을 공식 방문한 의사표현의 자유 유엔 특별보고관도 방통심의위의 결정이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7. 이번 UPR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형제 폐지는 이번에도 벨기에, 슬로베니아, 아르헨티나 등 19개 국가에 의해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제가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국민의 여론과 사회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UPR때 사형제 폐지 권고에 대한 정부의 답변과 한 치도 다르지 않으며 결국 지난 4년간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8. 또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악법으로 지목되며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개정 및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정부는 국가보안법이 자의적으로 해석,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해석, 적용하고 있다는 1차 UPR때와 똑같은 답변을 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인한 구속자 수는 매년 20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입건자 수는 2008년 40건을 기록한 이래 2009년 70건, 2010년 151건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이는 검찰이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이 자의적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접속, 차단 조치된 사이트 수가 지난 4년간 거의 4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보아 국가보안법이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은 명백하다.
9. 이 외에도 칠레를 비롯한 8개 국가는 성적지향을 포함한 모든 차별사유가 명시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져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호주를 비롯한 4개 국가는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과 자원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함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권고는 1차 UPR때는 제기되지 않았던 권고사항으로 지난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축소와 독립성 후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보여준다. 또한 가정폭력 예방 홍보와 처벌강화(이태리 외 4개국), 부부간 차별 현실화(캐나다, 코스타리카), 직장내 성희롱 처벌(네덜란드), 비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차별 철폐(노르웨이 외 4개국), 체벌금지를 포함한 아동의 인권보장(독일 외 11개국) 등 여성과 아동의 인권에 대한 권고도 내려졌다. 특히 캐나다를 포함한 10개국이 부모의 법적지위와 무관하게 신생아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비밀입양,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10.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11개 국가는 한국의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열악한 인권상황에 크게 우려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강제실종협약, 아동입양관련 헤이그 협약, 이주노동자협약, 인신매매 의정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 의정서 비준을 권고 받았다. 무엇보다도 한국 정부가 2006년과 2008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출마할 때 걸었던 공약이기도 한 ILO 핵심협약인 강제근로 관련 29, 105호, 결사의 자유 관련 87, 98 호 비준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음도 지적되었다.

11. 이번 UPR에서 한국 정부는 인권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노력 없이 정치적 수사와 임기응변으로 답했다. 한국 정부가 나열한 법과 제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는 전혀 밝히지 않고 통계자료도 선택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실제 인권 상황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만 발표했다.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러한 태도는 UPR의 본래 취지에 반하는 행태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실추시키는 부끄러운 모습이다. 2013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입후보한 한국 정부가 과연 그 자격이 있는지도 심각히 우려된다. 한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제기된 권고 사항들을 한국 정부가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간담회 개최, 권고이행 정책 제안 등 지속적인 활동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끝.

▣ 참고 :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웹캐스트 링크 (영문)

<http://webtv.un.org/watch/republic-of-korea-review-14th-session-of-universal-periodic-review/1924629227001>

*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 (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UPR은 2006년 유엔인권위원회가 유엔총회 직속기구인 유엔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2008년도부터 모든 유엔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4.5년에 한번)과 평가를 통해 인권상황의 실질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2008년부터 시작된 UPR 1차 심사는 2011년에 마무리 되었고 2012년부터는 UPR 2차 심사가 시작되었다.

UPR은 정부, 국가인권기구, NGO 등이 제출한 보고서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서 당사국에 대한 조약기구의 권고사항과 유엔공식문건을 취합해 정리한 문서를 기반으로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심의하고, 최종의견을 채택하는 과정을 거친다.

한국 정부는 2008년 5월, 처음으로 UPR 실무그룹의 심사를 받았으며 2012년 10월 25일, UPR 실무그룹의 2차 심사를 받았다.



General Assembly

Distr.: General
7 September 2012

Original: English

Sixty-seventh session

Item 111 (d) of the provisional agenda*

Elections to fill vacancies in subsidiary organs and other elections: election of eighteen member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Note verbale dated 4 September 2012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presents its compliments to the Office of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and, with reference to the decision of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o present its candidature to the Human Rights Council for the term 2013-2015 at the elections to be held in New York in 2012, and in accordance with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has the honour to submit the voluntary pledges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gar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see annex).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would appreciate it if the present note and the annex thereto could be circulated as a document of the General Assembly.

* A/67/150.



**Annex to the note verbale dated 4 September 2012 from the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United Nations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Candida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Human Rights
Council, 2013-2015**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pursuant to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0/251**

I. Introduction

1. Having served for two terms as a member of the Human Rights Council, from 2006 to 2011, the Republic of Korea has decided to present its candidature to the Human Rights Council for the term 2013-2015 at the elections to be held by the General Assembly in New York in 2012.

2. The Republic of Korea attaches the utmost importance to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and has placed highest priority on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the pursuit of its national and foreign policy goals. In additio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fully committ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round the world, in the firm conviction that respect for human rights is a prerequisite for peace,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3. As a State party to the following seven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including most of their optional protocols,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trives to implement the provisions of the relevant conventions:

-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1978)
-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90)
-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1990)
-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1984)
-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995)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91)
-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8).

4. At the Human Rights Council,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playing an active role in human rights advocacy around the globe by constructively participating in a wide range of discussions and programmes for the promotion of all aspects of human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has fully engaged itself in the entire universal periodic review process in good faith, including the follow-up to the recommendations, while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sessions of the Working Group on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maintains a productive partnership with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cooperates fully with the special procedur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o which it has issued a standing

invitation. In line with its positive engagement at the Council, it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process of the review of the Human Rights Council, taking part in the effor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transform the Council into a more effective and credible body.

5. Furthermore, in the conviction that human rights is best served by democracy and democratic governance,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formation of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It has subsequently played a key role in the work of the Community as a member of the Governing Council and Executive Committee of the Community.

6.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established in November 2001, is an indispensable institut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ccredited with “A” status by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the Commission continues to make meaningful contributions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it investigates and provides remedial measur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raises public awareness, and recommends legislative, institutional or policy initiatives related to human rights.

7. In addition, the Republic of Korea is implementing its second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for the period 2012-2016,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 made in the Vienna Declaration and Programme of Action. Covering 209 tasks relating to various aspects of human rights, the national action plan outlines the Korean Government’s commitment to better human rights protection in line with i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8.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enacted new laws and adopted legal amendments to ensure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a wide array of fields which include:

- Gender equality (the implementation of gender impact assessments in pan-governmental policy formulation and a gender-responsive budgeting system)
- The protection of vulnerable groups (a full-fledged revision of the Child Welfare Act for better prevention of child abus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Welfare Support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the enactment of the Refugee Law and revisions to related law to ensure stronger punishment for the sexual violence against children)
- Non-discriminatory measures for foreigner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Basic Plan for Policies on Foreigners, 2008-2012, revisions to the Local Election Act to enable foreigners to have the right to vote in elections for local council members and the heads of local district governments, etc.).

II.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9. In line with its dedication to the noble aim of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Republic of Korea commits itself to the 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set out below.

To further advance human rights at the national level

10.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upholding the highest standards i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with a strong commitment to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11.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fully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struments at the national level and taking the following steps with respect to the withdrawal of reservations made to and participation in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instruments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advancement of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legal amendments and institutional developments in a wide array of fields:

- Ratify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and the Protocol to Prevent, Suppress and Punish Trafficking in Persons,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supplementing the Convention
- Ratifying the 1993 Hagu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1980 Convention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 Ratifying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Considering the withdrawal of its reservations made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t. 25; subpara. (e))
- Pursuing feasibility studies and other efforts towards becoming a party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 Examining the possibility of accession to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12.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cooperating and working closely with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ies, intensifying efforts to implement their recommendations, and ensuring the timely submission of national reports under the human rights instruments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is a party.

13.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econd national action plan on human rights, for the period 2012-2016, in a transparent and accountable manner, thereby making real progress towards better enjoyment of human rights in the Republic of Korea.

14.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efforts to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the vulnerable, including women, children and the disabled, so that they can equally enjoy their human rights.

15.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enhancing cooperation and partnership with civil society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and good governance.

16.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training to enhance public awareness and thereby incorporate human rights into the mainstream in all sectors of society.

17.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participating in the second cycle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in an open and constructive manner.

To further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 at the international level

18.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closely cooperating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dvance human rights and address human rights violations around the world, with a strong commitment to human rights as a universal value.

19.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cooperating with other Member States in their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obligations through various mechanisms such as technical cooperation, exchanges of experts, and the sharing of experience and best practices.

20.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cooperating at the bilateral level, as well as through the United Nations system, for the strengthening of democracy, good governance, the rule of law and respect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21.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cooperating fully with the treaty monitoring bodies, through the timely submission of periodic reports, and prompt actions, and in good faith on their concluding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22.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contributing to the ongoing efforts to strengthen the treaty body system.

23.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rendering its full support to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in its endeavour to elevate standards of human rights observance and advance human rights conditions on the ground.

24.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promoting intra- and cross-regional democratic progress and cooperation by providing technical expertise, offering full cooperation to countries requesting assistance in building democratic institutions, and playing an active role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mmunity of Democracies and the Bali Democracy Forum.

25.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participating actively in the discussions on the creation of regional and subregional machinery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in the Asia-Pacific region.

26.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incorporating a human rights perspective into its development policy, includ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mes, thus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democracy and good governance in partner countries.

To contribute to the work of the Human Rights Council

27.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remaining constructively engaged in the activiti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supporting the fulfilment of its mandate and functions.

28.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continuing its close collaboration with other Member States to make the Human Rights Council a fair and efficient body, so

that it can respond to urgent situations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a prompt and expeditious manner.

29.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strengthening its efforts to further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versal periodic review, through constructive engagement and dialogue with States under review, and cooperating fully with all the Council's special procedures, to which the Republic of Korea addressed a standing invitation, by rendering the full support necessary for the visit.

30. The Republic of Korea is committed to fostering a culture of cross-regional cooperation within the Human Rights Council, by taking initiatives on constructive intergroup dialogue and compromise, thus enabling the full implementation of its mandate and functions.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외교부, 정치부, 국제부
발 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제 목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이 인권실태에 대한 면죄부 주는 것 아니다
날 짜 2012. 11. 13. (총 4 쪽)

논 평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이 인권실태에 대한 면죄부 주는 것 아니다 - 국내외 인권 개선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 제시해야

1. 어제(11/13) 뉴욕에서 열린 제67회 유엔 총회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한국 정부는 “범세계적 인권 증진 활동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온 데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10월 국가별 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 심사에서 내려진 대부분의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국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유엔 특별 보고관들의 해명 요구에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미루어볼 때 과연 한국 정부가 국제인권규범을 준수, 증진해야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2.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만으로 한국 인권 상황과 한국 정부의 인권 증진 노력이 증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시아 지역에 할당된 인권이사회 이사국 5개 공석을 놓고 일본,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한국, 아랍에미리트 총 5개 국가가 출마한 것으로 당선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 유엔 총회에서 과반수 이상 득표해야 선출된다는 조건이 있기는 하나 인권 문제가 심각하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 국가들도 선출된 것을 볼 때 이사국에 선출된 것만으로 국제사회가 한국 정부의 인권 수준을 인정했다고 보기 힘들다.

3. 한국 정부는 두 차례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역임한 바 있으나 이사국으로서 그 역할과 임무를 다했는지 비판적으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2006년과 2008년 이사국 선거에서 정부가 제시한 자발적 공약(Voluntary Pledges and Commitments, 이하 공약) 중 주요 국제인권조약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노동조약의 비준 및 유보 철회와 관련된 내용 가운데 이행된 것은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4(5)조 유보 철회, 고문방지협약 제21조, 22조 유보 철회뿐이다. 이번 2012년 공약에서 한국 정부는 인권 관련 제도를 만들었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해당 제도의 한계점과 이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정책

을 구현하고 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다. 또한 과거에 밝힌 공약들의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는 누락되어 있다.

4. 한국 정부는 2012년 공약에서 인권 증진을 위해 “유엔 인권조약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그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2006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제기되었던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1)(g)조 유보 철회,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ILO 핵심노동협약 비준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 10월 UPR 심사 때도 여러 국가들로부터 주요 국제인권조약 비준 및 유보 철회와 ILO 핵심노동협약을 비준할 것을 권고 받았음에도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의정서 비준과 아동권리협약 제21조에 대한 유보 철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권고사항은 수용하지 않았다.

5. 또한 정부의 2012년 공약은 국내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이행,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취약계층 권리 보호 및 증진, 시민사회와의 협력 증진, 인권교육 강화 등을 제시했다. 국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기술 협력, 전문가 교환, 경험 공유 등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일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악화된 경제상황에 불구하고 GNP 0.5% 이상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아일랜드, 성 평등을 위해 2020년까지 주요 고위직(leadership positions)에서 여성이 30% 이상 차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일본 등의 사례와 비교할 때 구체성이 떨어지며 실천 의지가 미흡하다.

6. 추상적 수준에서 인권 증진을 언급하는 한국 정부의 공약은 공허할 뿐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의 이행을 약속하고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UPR, 유엔 인권조약기구 등에서 내려진 인권 관련 권고사항들을 즉각 수용하고 이를 어떻게 개선시켜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한다. 국내 인권 관련 법과 정책들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인권 조약들의 비준 및 유보를 철회하는 것이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한 첫걸음이다.

7.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을 국내외 인권상황을 돌아보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선출된 것이 국제 사회가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거나 한국의 인권 수준을 인정한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지난 2006년, 2008년에 내걸고도 이행하지 않은 공약들을 포함해 이번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들을 향후 3년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끝.

■ 참고자료

1.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란?

-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 총 47개국 (아프리카 13개국, 라틴아메리카와 캐리비안 8개국, 아시아 13개국, 서유럽 및 기타 7개국, 동유럽 6개국). 해당 이사국은 유엔 총회에서 선출. 한 국가 당 각 3년의 임기를 가지며 두 번까지 연임 가능. 매년 3분의 1이 새로 선출된다는 규정 아래 초대 이사국들은 추천을 통해 각각 1년, 2년, 3년 임기를 부여받았고 이후에는 3년으로 활동.
- 이사국 선출의 의미 :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노력이 담긴 자발적 공약을 바탕으로 선출됨. 선출된 인권이사회 이사국은 인권 보호와 증진에 있어서 최고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되는 각종 결의안에 투표할 수 있음.
- 한국과 유엔 인권이사회 : 2006년~2008년(2년), 2009년~2011년(3년) 두 차례에 거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활동. 두 번 연임 후 2012년에는 참관국으로 활동. 2013년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를 위해 유엔 총회 제67차 회기에 자발적 공약 제출.
- 2012 인권이사회 이사국 아시아 지역 선거 : 5개 공석을 놓고 일본,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한국, 아랍 에미리트 이렇게 총 5개 국가가 출마. 투표 결과 아랍에미리트 184표, 카자흐스탄 183표, 일본 182표, 한국 176표, 파키스탄 171표 득표 및 전원 당선.

2. 2006년, 2008년, 2012년 한국 정부 자발적 공약 중 주요 국제인권조약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노동조약의 비준 및 유보 철회 관련 항목 비교

2006	2008	2012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즉시 가입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했음 (2006년 10월 18일)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가입했음 (2006년 10월 18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4(5)조 유보 철회 검토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4(5)조 유보 철회했음 (2007년 4월 2일)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4(5)조 유보 철회했음 (2007년 4월 2일)
고문방지협약 제 21조, 22조 유보 철회 검토	고문방지협약 제 21조, 22조 유보 철회했음 (2008년 1월 3일)	고문방지협약 제 21조, 22조 유보 철회했음 (2008년 1월 3일)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1)(g)조 유보 철회 검토	여성차별철폐협약 제16(1)(g)조 유보 철회 검토	X
가까운 시일 내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고려	가까운 시일 내에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고려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가입 가능성 고려
X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고려	X
X	강제실종협약 서명	강제실종협약에 가입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 및 노력
2008년까지 4개 ILO 핵심노	2008년까지 4개 ILO 핵심노	X

동조약 비준 고려 (No. 87, 98, 29, 105)	동조약 비준 고려 (No. 87, 98, 29, 105)	
X	X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 비준
X	X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
X	X	국제해사노동협약 비준
X	X	장애인권리협약 제25(e)조 유보 철회 검토

3. 2012년 11월 현재, 한국 정부가 가입 및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ILO 핵심노동조약

-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시민적·정치적 권리규약 제1선택의정서
-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 인종차별철폐협약
- 여성차별철폐협약,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
- 고문방지협약
- 아동권리협약, 아동의 매매, 성매매 및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 장애인차별금지협약
- ILO 핵심기본협약 No. 100 :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
- ILO 핵심기본협약 No. 111 : 고용 및 직업에 있어서 차별대우에 관한 협약
- ILO 핵심기본협약 No. 138 :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 ILO 핵심기본협약 No. 182 :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철폐에 관한 협약

국가인권위원회 위상 정립을 위한 New Design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 국가인권위원회 지부

이 자료는 국가인권위원회 직원들이 10여 차례의 주제별 세미나, 내부 공개토론회, 인트라넷 의견수렴, 인권단체 관계자 간담회 등을 거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준) 국가인권위원회지부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자료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실추된 위상을 바로 세우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I. 문제의 제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인권위의 핵심 업무인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이하 '정책권고 등') 건수가 크게 줄었고 질적 완성도마저 눈에 띄게 하락했다. 피권고기관의 권고수용률은 실질적으로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경이다. 조사업무도 인권위의 적극성과 진취성이 가장 빛나야 할 사회적 이슈에서 지지부진한 양상이다. 민간인 불법사찰 건이나 청와대 노조파괴 개입 건에 대한 소극적 대처가 대표적 사례다. 인권위 직원들이 인권위 설립 11주년을 총체적 위기로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설립 초기 국제적 모범사례로 평가받던 인권위가 이렇게 몰락한 결정적 이유는 독립성 훼손 때문이다. 인권위는 2008년 10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대해 경찰 진압과정에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진압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오히려 인권위 정원의 21%를 강제로 축소하고 징계 권고를 받은 경찰관들을 승진시켰다. 이처럼 현 정부는 인권위를 대놓고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인권에 대해 문외한임을 자인한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연임까지 밀어붙였다.

현재 인권위의 모습은 국가 공권력과 당당히 맞서던 초창기와 비교하기 민망하다. 중요한 인권 이슈가 제기되어도 알아서 피하거나, 정히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수위를 조절하는 비굴한 모습 그 자체이다. 최근 수년간 국내외 인권단체는 인권위의 놀라운 추락에 대해 잇따라 경고의 신호를 보냈다. 좀처럼 개별 국가의 인권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국제인권단체들도 한국 인권위의 처참한 몰골에 일침을 놓았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아무런 처방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국격’의 훼손을 방관했다. 인권위원장에 대한 역사상 최초의 인사청문회는 인권위 직원들의 자부심까지 무너뜨리는 참담한 현상이었다.

본 제언은 인권위가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바라는 인권위 직원들의 진심에서 시작되었다. 인권위 개혁방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정권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제 길을 가는 강력한 인권 레짐의 구축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강자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매진할 수 있는 독립성 강화이다.

본 제안서는 크게 네 단락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인권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고려하는 인권기본법 제정이다. 이는 인권적 가치에 대한 전통이 취약한 한국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개혁 방향이다.

둘째, 인권위원 임명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혁신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1차적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권위원 임명으로부터 시작된다.

셋째, 국가기구의 속성상 언제든지 관료화의 병폐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와의 상시적 소통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넷째, 인권위는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니라는 점에서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 확보 및 조직과 운영상의 쇄신이 절실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II. 인권기본법 제정

우리사회의 인권 현실을 개선하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인권 문제에 산발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인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논의, 교육, 계획하는 안정적인 제도적 방안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정치 지형의 변화와 상관없이 인권 의제가 활발히 제기될 수 있는 안정적 가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가칭 ‘인권기본법’) 제정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인권기본법 제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다.

① 우리사회의 인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 가치의 실현이 주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권정책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정치변동 속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사회적 정치적 합의가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인권이 주요한 국정지표로 설정되어야 한다.

②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따라서 인권 문제는 아직도 우리사회의 주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이다. 국민들은 국가가 단순히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적극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적 소통을 거쳐 세심한 정책을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③ 인권위와 인권단체, 국제 인권메커니즘, 중앙 및 지방정부 등 인권옹호 행위자들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사법기관과 의회 등 정치제도는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인권옹호자들이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인권기본법에 포함될 사항으로는 국제인권기구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절차, 인권영향평가,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국가 및 지자체 인권교육, 인권 의제의 전국화를 위한 지역인권기구의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인권옹호자로서 기업의 역할 등을 들 수 있다.

Ⅲ. 인권위원 임명시스템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1항, 이하 ‘인권위법’).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①국회가 선출하는 4명, ②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 ③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며(인권위법 제5조 제2항),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인권위법 제5조 제3항).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인권위법 제7조 제1항)

현행 인권위법은 인권위원의 자격 요건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수준의 추상적 내용만 명시하고 대통령 임명 전에 인권위원 후보자가 실제로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인권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 임명되어도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¹⁾

안경환 전 위원장의 회고록에 의하면 실제로 이명박 정부 초기 청와대에서 인권위원 내정자로 ‘사실상’ 통보한 어느 목사가 각종 추문에 휩싸여 내정이 취소된 바 있다. 또한 대통령 지명위원으로 임명된 어느 위원은 공식 석상에서 “나는 청와대에서 파송되었다”고 발언할 만큼 인권위원의 역할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임명된 사례가 있다. 물론 현병철 위원장도 자격 미달의 비전문가가 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위원회 설립 이래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위원들 중 법률가 출신 비율이 50%를 상회하여 인권위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에 실패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인권위 업무량을 고려할 때 인권위 업무에 집중할 수 없는 비상임위원이 7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은 인권위 결정의 품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인권위원 임기가 3년으로 상대적으로 단기인 점은 인권위원의 전문성 향상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2. 개혁방안

가.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권위원 인선

대법원에서 대법관 후보를 추천받기 위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인권위가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의 인권보호에 특히 집중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소수자와 약자를 대변하는 인물을 포함하여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절차를 통해 인권위원 임명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권위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인권위원의 다양성 확보

인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분야별로 대표하는 인물을 우선 충

1) 2012. 3. 21. 인권위법 개정 시 위원장에 대하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내용이 들어가 최소한의 검증 절차가 마련되었으나 지난 7월 열린 현병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후보자의 여러 흠결이 드러나 국민들의 80% 이상이 적합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음에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미비점이 존재한다.

원하는 영역별 할당제를 도입한다.

다. 상임위원 증원

인권위원 업무량을 고려하여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대법원장 지명 몫은 삭제한다.

라. 검증 시스템 강화

모든 상임위원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대통령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요건으로 한다.

마. 임기 연장

인권위원의 안정적 업무수행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임기를 5년으로 연장한다.

IV.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치

1. 현황과 문제점

시민사회는 인권위 설립의 중심 동력이었고 이후 인권위 활동 방향과 내용을 만드는 데 핵심적 기능을 수행했다. 실용적 측면에서도 인권 엔지오로 대표되는 시민사회는 ①엔지오가 일반 시민에게 국가인권기구의 존재를 알리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②인권침해를 당한 사람들이 직접 인권위에 구제신청을 하는 것을 꺼려할 때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고 ③엔지오는 그 성격과 기능 측면에서 친인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자이며 ④인권위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을 추진하는데 효과적인 협조자라는 점에서 인권위 위상 정립의 필수적인 파트너다.

그러나 현병철 위원장 취임 이후 그동안 인권위 협조자로서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엔지오 및 분야별(자유권, 사회권 등 각종 전문위원회) 전문가들이 명시적으로 협조 거부 선언을 하거나 탈퇴하여 현재 핵심 인권 이슈에 대한 유기적 협력이 거의 단절된 상태이다. 일부 협조 관계가 지속되는 영역이 있으나 설립 초기처럼 인권위 활동의 방향을 함께 잡아가는 공동 기획자로서의 역할보다 단순한 기능적 협조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2. 개혁방안

가. 국민평가 시스템 구축

인권위의 모든 사업은 인권 상황에 대한 현실 인식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권위 내부 직원들의 판단만으로는 그 범위와 강도가 협소하고 빈약하기 쉽다. 따라서 국민들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호흡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권 상황에 대한 국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초기에는 인권시민단체 중심으로 출발해 점차 일반국민 대상으로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핵심적 인권 이슈에 대한 공동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인권 현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심화할 수 있는 공동포럼을 정례화하며, 위원회 운영 및 업무에 대한 일상적 평가 시스템을 구축한다.

나. 인사교류 활성화

국가기구로서의 속성장 인권위 직원들도 관료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관료화 경향성을 통제하는 방안으로 인권 엔지오와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중간 간부 이상 보직자는 인권단체 연수를 제도화하고 인권위원 및 사무처 직원의 현장성 강화와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다. 전문가 자문 기능 활성화

엔지오 및 전문가와의 협력 통로였던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전면적으로 쇄신해야 한다. 의제 설정 단계에서부터 결합하여 사업의 방향과 내용을 공동 모색하는 광범위한 협치가 필요하다.

라. 인권의 지역화 및 제도화

각 지역 인권사무소를 거점으로 시민사회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등에서 시행 중인 인권조례가 탄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권위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야 한다. 나아가 청와대에 인권담당비서관을 신설하고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 인권담당관을 배치해, 인권과 관련한 업무 추진 시 사전 평가 및 사후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마. 인권교육 및 홍보

엔지오 활동 활성화가 일반 시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단체 중심의 인권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교육 및 홍보 콘텐츠 개발에 집중하고, 경상비 보조 등을 통해 민간단체들이 시민들과 빠르게 호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권위는 인권 엔지오와의 분기별 업무협의 등을 통해 문제점을 시정하고 보완할 수 있는 피드백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다.

V. 인사, 예산, 조직의 독립성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현행 인권위법은 인권위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다(인권위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인권위가 독립성에 근거하여 정부가 불편해 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현 정부처럼 인권위 조직을 강제 축소하거나 호주의 경우처럼 예산을 삭감한다면, 인권위는 정부와 각을 세우지 못한 채 독립성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위법에 예산과 조직의 독립성이 명시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점은 결정적 하자라고 할 것이다. 인권위가 명실상부한 독립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헌법 개정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우선 법률로써 독립성을 충분히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개혁방안

가. 인사 독립성 강화

조직상 독립성 강화를 위해 대통령령인 직제령의 적용 범위에서 인권위를 제외하고 인권위법에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위원회 규칙 제정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인권위법에 직원 임용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어 위원장이 인권위 성격에 부합하는 지원자를 직접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예산 독립성 강화

독립기구로서 인권위의 예산편성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감액할 경우 인권위원장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다. 의사운영 실시간 공개

인권위는 다른 어느 국가기관보다도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위 의사운영을 전면적으로 실시간 공개하고, 주요 인권현안에 대한 내부 토론에 어떠한 제한도 두어선 안 될 것이다.

차례

발간하며

공포와 억압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향한 걸음

국가보안법 |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매체에서의 표현의 자유

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 | 방송 | 영화 | 인터넷 | 게임·가요 | 언론 산업 정책 | 퍼블릭 액세스

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 집시법 외의 법률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노동영역과 소비자 운동에서 표현의 자유

노동영역 | 소비자 운동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구금시설 수용자 |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 대학생의 표현의 자유 | 군인 | 공무원과 교사

표현의 자유, 새 지평을 열며

알 권리 |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한 규제 |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억제

발간하며

2010년 5월경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공식 조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유엔 주제별 특별보고관이 어떤 나라를 공식으로 방문한다는 의미는 인권침해나 후퇴 국면에 관한 정보를 다양하게 듣고 직접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공식 방문이 시사하듯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는 날이면 날마다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었다.

인권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다른 자유들과 인권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 2008년 촛불집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제한되고, 공무원이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되며,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고 있는 공권력의 횡포를 떠올릴 때 다른 인권이 함께 후퇴하고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명백했다.

2012년 선출될 제19대 국회와 차기 정부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과제로서 이 제안서의 개선방안들이 반영되기를 희망한다. 이 제안서는 적어도 국제적으로 옹호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분야와 영역을 망라했으므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정책을 짜기에 더할 수 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2012년 4월 21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공포와 억압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향한 걸음

국가보안법

막걸리 보안법을 폐지하자

■ 현황

2008년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확대되었다. 특히 국가보안법 제7조는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 따라 1991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써 그 남용을 억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가보안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악명을 높여 왔다.

→ 국가보안법 사건의 양적 증가

그 동안 감소되어 왔던 국가보안법 입건자수가 이명박 정부 들어 증가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친북 활동을 하다 사법처리된 사례도 3년 새 16배 수준으로 급증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접속 차단 조치된 사이트의 수 역시 2008년 2건에서 2011년에는 7월까지 139건으로 증가했다.

→ 인터넷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규제

특히 인터넷에 국가보안법 제7조, 즉 찬양고무죄를 적용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 2008년에는 국

가보안법 사건 중 33%였던 찬양고무죄 사건이 2011년에는 7월에는 85%에 달했다. 대부분 온라인상에 친북계시글을 게재하거나 퍼나른 행위를 문제삼았다. 북한 계정의 글을 리트윗하거나 농담 삼아 “김정일장군만세”라고 게시했다는 혐의로 트위터 사용자 박정근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건은 국내외에 큰 충격을 주었다.

■ 정책제안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와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형사처벌을 폐지하자

■ 현황

이명박 정부 이후 공익을 위한 표현을 억압하고 정부를 비판하는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어 왔다. 외견상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본래적인 기능보다는 국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처벌하는 경우가 많아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때문에 국제인권기구는 이에 대한 형사처벌을 반대해 왔다.

→ 공무원 또는 국가의 명예훼손(모욕) 주장

2008년 4월, MBC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에 대하여 방송한 내용이 큰 논란을 불러와 촛불시위로 이어지자, 당시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해당 프로그램의 PD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다. 또 불심검문을 받은 시민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자 경찰이 그를 모욕죄로 체포하는 일도 발생하였다.

→ 공익적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

2009년과 2010년에는 상지대의 전 이사장의 복귀와 관련한 학교의 상황을 기사화하였던 기자와 우려를 표명하는 글을 게시한 블로거가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당했다.

→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명예훼손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의 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이 BBK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되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던, 정봉주 17대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1년 12월에 유죄가 확정되었다.

■ 정책제안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폐지한다. 민사책임 또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한 경우, 혹은 진실한 사실의 표현으로 인한 경우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한다.



매체에서의 표현의 자유

청소년 보호와 매체 심의 행정 심의 폐지하고 자율 심의 도입하자

■ 현황

최근 대중가요나 게임 그리고 웹툰 등이 청소년유해매체로 결정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가사에 단순히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도 해당 대중가요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기도 하는 등 심의기준이 모호하고 청소년에 대한 통제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추상적인 기준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를 심의하도록 함에 따라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및 사회 참여욕구가 커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들을 미성숙한 존재로만 간주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심의에 대해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매체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사라지고 획일적으로 심의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정책제안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 및 심의기능을 삭제하여 각 매체별로 자율적으로 심의·유통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방송

정치 심의 폐지하자

■ 현황

이명박 정부 들어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08년 촛불시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MBC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하는 등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방송을 다수 제재해 왔다. 특히 이들 제재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 이루어져 왔다. 정치적 방송 심의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해 왔다.

■ 정책제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 심의를 폐지하고 자율규제를 도입한다. 또한 심의 기준에 있어 '공정성' 심의를 폐지하고 다양성 개념으로 대체한다.

영화

행정기관에 의한 영화등급제 폐지하자

■ 현황

수차례 위헌 결정과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영화에 대한 검열은 사라지지 않았다. 2006년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기존 제도와 달리 사전 검열 제도를 폐지하고 등급분류를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현행 등급분류 역시 영상물등급위원회라는 행정기관이 주체가 된 심의제도로서, 자의적인 기준과 통제로 비판받아 왔다.

→ 자의적인 제한상영가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청소년관람불가 외에 제한상영가를 또 두어 성인 대상 영화들도 '일반 상영관에서 볼 수 있는 영화'와 '더 은밀한 곳에서 보아야 할 영화'로 구분하는 것은 권위적인 잣대이다. 지난 2007년, 영등위는 수입 영화 <숫버스>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을 부여하였으나 법원은 제한상영가 등급 판정이 영등위의 재량권을 일탈하고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역시 다양한 가치와 상식을 반영하지 못한 채 권위적인 심사방식을 답습해 왔다. 김조광수 감독이 2009년에 발표한 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영등위는 청소년이 동성애를 소화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하여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을 매긴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하였다.

→ 비영리 영화·영화제에 대한 검열

모든 영화가 영화를 상영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한 영비법에 따라 비영리 영화제에 대한 등급분류 문제가 불거져 왔다. 등급분류의 예외 조항인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도 의무적인 절차로 강제되면서 비영리 영화제를 검열해 왔다. 이로 인하여 등급분류를 거부한 서울인권영화제 등이 상영관을 대관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 정책제안

행정기구에 의한 영등위의 '영상물 등급분류' 제도와 영진위의 '영화등급분류면제추천' 제도를 폐지한다.

인터넷

정부의 심의와 감시, 처벌 제도를 폐지하자

■ 현황

일반 시민의 미디어 접근이 쉽지 않은 언론 출판 환경 속에서, 인터넷은 한국의 일반 시민에게 필수적인 표현 매체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이는

특히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크게 불거졌다.

→ 강화된 인터넷 심의

행정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공적 비판을 담은 인터넷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검열 논란이 그치지 않아 왔다. 심의 대다수는 경찰 등 행정기관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2010년에는 그 중 97.6%가 요청대로 처리되었다. 조선·중앙·동아 등 신문사의 광고지면 불매운동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게시물이나 '발암성 페쓰레기 시멘트'를 비판한 환경운동가의 게시물을 비롯하여,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등 대통령이나 공인을 비판한 게시물이 삭제되었다.

→ 인터넷 게시물로 인한 형사처벌 증가

'미네르바' 사건을 비롯하여 '허위'라는 이유로 형사처벌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난 이후로도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허위의 통신 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정부 여당의 입법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 실명제와 정보 제공으로 이용자 위축

인터넷 실명제 등을 규정한 법제도를 근거로 온라인 사업자들은 이용자의 정보를 상시적으로 보관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협조해 왔다.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허가는 불필요하거나 형식적인 데 그친다. 특히 7년치에 달하는 장기간의 이메일이 압수수색되거나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하는 패킷 감청 논란은 인터넷 이용자들을 크게 위축시켜 왔다.

■ 정책제안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 특별보고관의 권고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심의를 폐지하고 자율 규제를 도입한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를 이유로 한 형사처벌과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한편, 이용자의 정보 제공에 대한 법원의 통제를 강화한다.

게임·가요

행정 심의 완전히 폐지하자

■ 현황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이용을 차단하는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섯다운제',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시 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섯택적 섯다운제' 등, 최근 1년 사이에 게임 영역에서만 이용시간을 규제하는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기존의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표현의 자유 규제에 머물지 않고 일반 이용자, 특히 청소년들의 문화 이용권, 접근권 등을 차단함으로써 문화 향유를 통하여 자유로운 인격을 발휘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 게임 자율 심의는 청소년보호법으로 반쪽 한계

게임물의 등급 심의는 2011년 12월 30일 게임산업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간으로 이양될 계획이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경우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게임물등급위 등 국가 등급제를 병행할 예정이어서 이중 심의 논란이 일고 있다.

→ 가요 자율 심의도 청소년보호법으로 반쪽 한계

10cm의 〈아메리카노〉 등 가요의 맥락을 파악하지 않은 채 단순히 '술'과 '담배'를 거론하는 가사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로 고시되는 경우가 최근 급증했다. '청소년이 즐기기에 야하다'는 이유로 2008년 청소년 유해매체로 고시된 동방신기의 〈주문〉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2009년 고시 취소 처분을 받는 등 위법 논란과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12년 2월 음반자율심의기구를 발족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민간자율심의의 한계와 이중규제가 불가피하다.

■ 정책제안

이용자의 시간까지 규제하는 강제적 섯다운제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음반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게임물 등급위원회는 민간자율규제기구로 전환한다.

언론 산업 정책

낙하산 그만! 신문방송에 대한 독립적·공적 지원체계를 갖추자

■ 현황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를 필두로 정부가 경영진 인사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민주적 공론장으로서 기능해야 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를 비판한 방송내용이 불방되거나 언론인이 해직되는 등 표현의 자유의 침해 사건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신문방송을 겸영하는 종합편성채널이 개국함으로써 미디어의 독과점체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과 지역미디어를 통해 대변되던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의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정책제안

정치적 영향력과 '낙하산' 논란을 근절하기 위하여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독립적인 인사위원회와 국회 검증 등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독립성을 확보한다. 한편, 언론 다양성의 질적 보장을 위하여 방송법과 신문법 재개정을 통해 신·방겸영을 다시 금지한다. 편집·제작권의 독립 제도화 및 자율성 확대를 위해 현업 기자·PD와 노동조합이 편성과 편집 과정 및 보도·편집국장에 대한 인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소수자 관련 할당제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도 의무화 및 실질적 반론권을 보장한다. 수신료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설치하여 수신료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공정하게 관리·집행하고 KBS, EBS 뿐 아니라 MBC와 지역방송에 대해서도 배분한다. 미디어랩에 있어 종합편성채널에 직접영업을 허용한 특혜에 대해서는 조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가칭 언론균형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중소신문, 대안미디어 등 광고취약매체에 대한 언론사에 대해 공적 지원체계를 갖춘다.

퍼블릭 액세스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가까운 방송에서 보장하자!

■ 현황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는 주류미디어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방송 채널에서 보장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현행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운영은 그 기본 취지에 벗어나 있다.

→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심의로 차단

국내 퍼블릭 액세스 채널인 시청자/청취자참여프로그램과 공동체라디오방송은 방송 전에 운영위원회와 방송사 자체심의를 거치고, 방송 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등 엄격한 방송 심의 구조를 그대로 적용받고 있어 방송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담겠다는 취지가 빛바래고 있다. 시청자/청취자 참여프로그램 다수가 용산 참사나 희망버스를 다룬 내용에 대하여 '편파적'이라는 등의 이유로 방송을 거절하는 등 민감한 사회 이슈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 소외된 이들의 채널 축소

2000년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이 법제화된 이후 법제화된 시청자참여프로그램의 제작 지원 예산이 삭감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 방송사가 3분의 1 가량으로 줄었으며 프로그램 편성도 축소되었다. 또한 공동체라디오방송이 7개 지역과 1와트(w) 출력의 한계로 인하여 지역 주민들의 접근이 제한적인 상황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 일본 대지진 당시, 수백 개의 일본 공동체라디오방송이 해당 지역 상황을 상세하게 전달하고 지역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진 피해자들을 위로했던 사례를 귀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정책제안

퍼블릭 액세스에 대한 방송사 자체심의를 폐지하고 소외 계층의 목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적합한 별도의 심의 규정과 심의 기구를 마련한다. 또한 시청자참여프로그램과 공동체라디오방송에 대한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퍼블릭 액세스 채널의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거리에서의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실상 집회금지법인 '집시법' 폐지하고 '집회보호법' 제정하라

■ 현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아니라 집회의 자유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이다. 집시법은 보호대상이 되는 집회를 '평화적' 집회가 아니라 '적법한' 집회로 한정함으로써 인권으로서의 집회 시위의 자유를 국가에 의해 규격화하고 있으며, 정치적 항의의 성격을 갖는 집회를 직접적인 규제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국제인권규범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본질을 부정하고 있다.

→ 경찰에 허가받아야 하는 집시시위

집시법의 규제 구조는 '사전신고-금지통고-해산·처벌' 또는 '미신고집회-해산·처벌'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집시법은 사전신고제와 금지통보제를 토대로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데, 이는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사전허가제도와 마찬가지로 기능해 왔다. 또한 평화적 집회의 경우에도 오로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산명령을 내리고, 강제 해산 및 처벌하고 있다.

→ 평화적 집회·시위도 처벌하기 일쑤

이명박 정부 이후 평화로운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에도 미신고집회라며 강제해산하거나 채증 후 사법처벌하는 경우가 증가했다. 또한 '공공질서위협'을 이유로 한 금지통고가 폭증하였으며, 과거 불법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통고의 대상이 되는 일이 잦았다.

■ 정책제안

집시법을 폐지하고 평화적 집회의 보호를 목표로 한 집회보호법을 제정한다.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

집회를 억제하려는 경찰력행사를 중단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라

■ 현황

집회·시위 관리자인 경찰은 차벽, 불심검문 등을 통해 집회·시위 참여자들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마구잡이 채증으로 감시하는가 하면, 전기충격기, 최루액과 물포 등 장비를 자의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하여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권리가 심대하게 위축되어 왔지만 경찰에 의해 발생하는 불법행위나 폭력행위는 처벌받지 않고 있다.

→ 집회·시위 참가 방해와 감시

2010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광장 전체를 전경버스로 둘러싸는 등, 경찰은 집회·시위 참여자의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차벽을 설치해 왔다.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이 조치를 위헌으로 결정하였으나, 2011년 등록금집회, 희망버스, 한미FTA반대 집회에서도 경찰은 계속하여 차벽을 설치하였다. 또한, 경찰은 2008년 이후 채증 장비와 요원을 대폭 확충하고 집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채증해 왔다.

→ 장비를 이용한 공격적 대응

2009년 7월 22일 평택 공장에서 파업 중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향해 경찰이 '테이저건'을 발사하

여 전극침이 얼굴에 꽂히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스티로폼이 녹을 정도로 독성이 강한 최루액을 헬기와 물포를 사용해 살포하였다. 또 집회 참석자들에게 방패를 무기처럼 휘둘러 가격하거나 높은 수압의 물포를 직사하는 등,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들의 부상이 속출해 왔다.

→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차별

경찰청이 작성한 '불법폭력시위단체 명단'에 의거해 정부는 한국작가회의 등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시위 불참 서약서 작성을 요구해 왔다.

■ 정책제안

차벽 등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의 행위를 금지하고, 불심검문과 채증을 제한한다. 또한 경찰 장비의 자의적 사용을 법률로써 규제하고 경찰의 불법행위나 폭력행위를 처벌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한 이유로 단체를 차별하는 지침은 삭제한다.

집시법 외의 법률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 꼼수가 없도록 법률들을 손보자

■ 현황

최근 집회·시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집시법 외의 법률이 동원되는 사례가 증가해 왔다. 특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집회·시위 단순 참가자를 체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는가 하면, 유인물 배포나 퍼포먼스를 단속하기 위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 집회·시위 참가자를 체포하기 위해 동원되는 일반교통방해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따르면 촛불집회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기소되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중 88%에 이르는 551명이 집시법과 함께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되었다. 집시법으로 집회·시위의 단순 참가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일반교통방해

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공안형 경범죄 급증...유인물·퍼포먼스도 무더기 단속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단순한 유인물 배포나 퍼포먼스를 경범죄 위반으로 체포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2009년 7월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에서 만든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학생들과 시민을 수갑을 채워 체포하였다. 이 과정에서 임의 동행을 거부한 62세 여성을 강제 연행 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 심판 처리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해 면제판결을 내렸다. 2011년 10월에는 제주해군 기지건설에 반대하기 위해 공사현장에서 미사를 집전했던 가톨릭 신부 9명이 집시법 위반과 함께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연행되기도 하였다.

■ 정책제안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규정을 손괴나 상해가 있는 경우에 한해 처벌하도록 개정하여 집회·시위 일반 참가자를 처벌하는 데 이 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데 오남용될 뿐 아니라 형법과의 중복규정 등 문제점들을 지적받아 온 경범죄처벌법을 폐지한다.



선거 시기 표현의 자유

공직선거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지지하고 반대할 자유를 보장하자

■ 현황

2000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규제, 2004년 인터넷 패러디물 규제, 2007년 인터넷 UCC 단속, 2010년 4대강·무상급식 캠페인 규제와 트위터 규제, 2011년 SNS 투표독려활동 규제 등, 시민들의 참여가 폭발하는 시기마다 선거법은 낡은 법조항에 근거한 규제로 수많은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왔다.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선거법은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비방죄 등의 명목으로 시민들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 시민단체 정책 활동도 선거법 위반

2011년 10월, 10년 이상 무상급식 운동을 해 왔던 시민단체 활동가가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각 정당과 후보자에게 해당 정책 채택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 서울시장이었던 오세훈 후보와 한 나라당을 비판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정책 채택을 활발히 요구해야 할 선거시기에 후보자와 정당을 거론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결은 결국 정책캠페인·공약채택 운동을 하지 말라는 말이다.

■ 정책제안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대대적으로 철폐함으로써 선거가 국민주권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인터넷 실명제와 후보자비방죄를 폐지하는 한편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를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유권자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정당·후보자 및 정책에 대한 지지·반대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노동영역과 소비자 운동에서 표현의 자유

노동영역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자

■ 현황

노동현장에서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은 노동자의 직장 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노동3권을 위협하는 인권침해행위이다.

→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파업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노동조합 간부 및 파업참가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처벌하는 노동통제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일상화된 규제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1심에서 쟁의행위 사건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것이 30.2%를 차지하였으며, 업무방해죄가 적용된 피고인의 수는 2,020명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도 철도노조 파업, 발전노조 파업, KEC 파업 등에 대해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남용

2011년 5월 현재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 청구된 손해배상액 총액은 1,582억 7천만 원에 이른다. 이

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극에 달해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의 자결을 불러왔던 지난 2003년 10월 31일 현재 손해배상 청구 총액 575억 원보다 무려 1,007억여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 직장 내 표현의 자유 행사 금지

노동현장에서는 사용자 측의 방만한 경영이나 비리를 사회적으로 고발하거나 공론화하기 위한 유인물 배포라든가 1인시위, 리본 달기 등의 표현마저도 금지되고 있다.

■ 정책제안

단체행동권 행사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을 배제한다. 궁극적으로는 업무방해죄 처벌규정을 폐지한다. 또한 쟁의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인 책임을 인정한다. 노동조합 및 조합원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전면 보장될 수 있도록 이를 제한하는 사규나 취업규칙 그리고 관행도 적극 개선해야 한다.

소비자 운동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에서 지지하고 반대할 자유를 보장하자

■ 현황

소비자 불매운동(boycott)은 세계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고, 역사적으로 인권, 환경,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고 개선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 소비자 불매운동을 정권 수호 차원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탄압하고 있다. 소비자 운동은 소비자 또는 시민으로서의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이며, 동시에 삶의 조건을 주체적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 언론소비자운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가 한창일 무렵, 인터넷 카페 “조중동 폐간 국민 캠페인”(언소주)의 개설자와 운영자들은 정부를 대변하는 편향된 보도를 해온 3개 신문사 광고주들에 대한 불매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조중동에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 명단을 게시하고 회원들의 향의

전화걸기, 항의게시글쓰기를 독려하였다. 고소·고발 없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사전 모의를 통한 집단적 항의전화걸기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카페 운영진들을 구속기소하였고, 1심 및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하였다.

2009년 6월 8일 연소주는 조중동 광고주 중 광동제약(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공표하였다. 이에 광동제약은 연소주와 협의하여 회사 홈페이지에 팝업창으로 성명서를 게시하고 경향과 한겨레에도 광고를 실었다. 그러나 법원은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하면서 회사 측과 접촉한 것에 대하여 형법상 ‘협박’으로 보고 강요죄와 공갈죄를 인정하였다.

■ 정책제안

기업에 대한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내용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 운동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적용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는 업무방해죄 처벌규정을 폐지한다. 또한 현행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운동보호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소비자 운동의 권리를 보장한다. 소비자의 의견 표명이나 불매운동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기업 등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행위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특수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구금시설 수용자

검열 없이 쓰고 읽을 자유를 허하라

■ 현황

구금시설 수용자들은 기본적으로 변호인을 포함한 외부인과의 접견, 전화통화, 서신의 발신과 수신 등이 법률, 법무부령, 훈령, 예규 등에 의해 검열과 통제를 받고 있다. 또, 신문, 잡지, 도서의 구매와 열독, 라디오 청취, TV 시청, 인터넷 사용 등 정보접근 역시 법률 등에 의해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현재는 집필 자체에 대한 제한은 거의 없어졌지만 집필물에 대한 검열이 존재하고 외부반출이 제한된다. 2011년 정부가 발의하여 국회에 상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히려 서신의 검열을 강화하고 수용자들의 도서 구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고 있다.

■ 정책제안

구금시설 수용자의 서신교환과, 재판 관련 문서 및 창작물의 반출을 검열 없이 모두 허용해야 한다. 신문, 잡지, 도서 등에 대한 반입과 열독 및 공중파 TV의 시청 또한 아무런 조건 없이 허용해야 한다.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외부교통권을 제한하는 징벌은 폐지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학교와 사회에서 정치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자

■ 현황

정치적 민주주의를 채택한 사회라면 청소년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는 의제들에서 당연히 청소년이 그 논의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청소년 역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마땅히 보장해야 한다.

→ 학교 안팎에서 정치적 참여 제한

대다수 청소년이 다니는 학교의 교칙은 '불법 집회 참석' 등의 징계기준으로 학교 외부 정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2008년 서울 한 고등학교의 학생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학교 측에 알려져 징계될 위기에 처했다. 또 학교 내부의 시위나 전단 배포에 대해 제재하고 학생회를 통제하여, 사학비리 등 학교의 문제점에 대한 학생들의 발언을 억압한다. 이런 한국 학교의 실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우려를 사 왔다.

→ 선거와 지방자치, 집회에도 참여 제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은 선거 및 피선거권을 제한받고 선거운동과 선거 과정 역시 참여할 수 없다. 19세 미만은 지방자치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주민발의, 주민투표에서도 배제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인권을 내용으로 한 '학생인권조례' 발의 과정에도 청소년이 참여할 수 없었다. 또 청소년은 집회신고 과정에서도 불이익을 받아왔는데, 전북의 한 학생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수업 중에 학교로 난입한 경찰에게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경찰서장에 대해 서면 경고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하였다.

■ 정책제안

학생인권법을 제정하여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고 헌법에 명시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보장한다. 학교 교과과정에 정치와 인권을 교육받을 수 있는 '시민 교육'을 포함한다. 또한 공직 선거 및 지방자치 참여를 16세 이상의 국민에게 확대하고 그 이하 연령의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역시 보장한다.

대학생의 표현의 자유

박정희 때 만들어진 학칙을 전면 개정하고 대학생인권법을 제정하자

■ 현황

최근 등록금 혹은 대학구조조정을 둘러싸고 학생들이 대학을 상대로 문제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학은 게시물과 집회를 사전승인하는 등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학칙을 적용하여 학생들의 발언을 막거나 징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학칙들은 대개 1970년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제정된 것으로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이로 인해 대학의 표현의 자유가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 정책제안

집회 사전승인 등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대학학칙을 전면 개정하고, 대학생인권법 혹은 대학인권법을 제정하여 대학 운영에 대한 참여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법률로써 보장한다.

군인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하자

■ 현황

국토방위종사자인 군대의 피고용인들 혹은 의무복무자들의 기본권보호는 극히 열악하다.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에 의해 군인은 군에 관련된 의견표명이 금지되고, 정보수령권이 포괄적으로 제한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물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 소위 '불온서적' 반입과 열독 금지

2008년 7월 22일 국방부는 <나쁜 사마리아인들>, <소금꽃나무> 등 장병의 정신전력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23권의 도서들을 소위 불온서적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해당 도서의 영내반입 및 열독 금지, 장병 및 독신간부 숙소 단속을 통한 일제 수거 등의 지시를 하달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008년 8월 헌법 정신에 맞게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하였고, 군법무관 7인은 같은 해 10월 군인사법, 군인복무규율, 국방부 지시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2010년 10월 헌법재판소는 합헌이라며 청구인들이 청구를 기각 혹은 각하하였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들은 파면 및 감봉 등 징계를 당하였다.

■ 정책제안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 백지위임한 군인사법 제47조의2를 폐지한다. 군인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인 역시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일반시민과 동일한 자유와 권리의 주체가 되며, 군사임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공무원과 교사

노동조합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자

■ 현황

공무원과 교사의 신분과 중립성 보장은 권리가 아닌 '의무'로 변질되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포괄적 침해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되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교사 스스로 노동환경 개선과 정치·의사 표현을 통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나, 그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 개인으로서 그리고 조직된 노동자로서 정치·의사표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 공무원 노조 탄압

한국 정부가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을 비준하면서 제22조 '결사의 자유'를 유보한 이유 중 하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결성 등을 통한 단결권의 지나친 보장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노조에 대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 왔으며,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노조 행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대량 징계를 남발하는 등 공무원 및 공무원노조의 활동과 정치

적 의사표현을 탄압해 왔다.

→ 시국선언을 빌미로 전교조 탄압

2009년, 교원들은 현 정부와 교육당국에 의하여 초래된 민주주의, 교육의 위기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하였다. 검찰은 시국선언을 빌미로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압수수색하고 2010년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189명의 교사를 무더기로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으며, 다만 월 5천 원~1만 원 정도의 소액을 정당에 후원하였다는 혐의에 대해서 일부 유죄를 인정하여 벌금 30~50만 원 형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오히려 수사 대상을 2천 명에 가까운 인원으로 확대하고 있어 정치적 목적의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 정책제안

현행 공무원(교원)노조법을 폐지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하고 공무원노동조합 활동 관련하여 해직 및 징계된 공무원을 복권시킨다. 또한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정치관계법을 개정한다.



표현의 자유, 새 지평을 열며

알 권리

국민 앞에 정부 정보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자

■ 현황

국민이 올바르게 아는 것은 표현하고 비판하기 위한 기초 전제이다. 표현의 자유 확장을 위해서 정부의 정보는 더욱 넓게 공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의 정보차단, 정보비공개가 늘어났다.

→ 비공개 증가

중앙행정부처만을 놓고 보면 2006년 정보 비공개율이 11%였던 것이 2010년 20%로 2배 가까이 상승한다.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는 중앙행정기관이 타 공공기관보다 비공개비율이 높은 것을 “정책결정 등 민감한 정보 또는 국가의 안보 등과 관련된 정보를 많이 보유·관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정책결정 등 중요한 국가적 사안에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미흡하다는 것을 뜻한다.

→ 부실한 기록관리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에 관한 논란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대통령지정기록물제도를 뿌리부터 흔들어 놓고는, 2009년경부터 기록관리전문요원의 배치를 사실상 중단시켰다. 2010년에는 기록물폐기를 손쉽게 만들고 기록관리전문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법령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기도 하였다. 그 와중에 대통령기록관 관장에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되는가 하면, 국무총리실은 불법 민간인 사찰이 들통이 나자 하드디스크에 담긴 수십만 건의 문서를 무단으로 삭제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다.

■ 정책제안

정보목록을 빠짐없이 공개하고 비공개 대상을 축소하는 등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공공기관이 생산·보유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한다. 기록물 폐기에 대한 절차 및 무단폐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차별에 근거한 혐오적 표현에 대한 규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 현황

표현의 자유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이지만, 모든 표현이 허용되지는 않는다. 서구에서는 인종, 종교, 젠더, 연령, 장애, 성적 지향 등을 근거로 하여, 선동·모욕·조롱·위협하는 발언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공격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혐오발언'(hate speech)을 규제해 왔다. 한국에서도 혐오 표현이 문제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

→ 외국인 혐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11년 3월 기준 2012년 1월 기준 1,369,347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2%를 넘는다. 그러나 국내에서 일어나는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은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우리 사회의 인식 부족 탓에 점점 확산하는 추세이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터넷에서의 인종적 표현 관련 모니터링'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를 외국인이 일으키고 있는 것이라고 선동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의 정서적 반응에 호소하고 이들로 하여금 폭력적 행위를 하도록 선동하는 표현들은 적지 않게 발견되

었다”고 한다. 이에 201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에 “인터넷상의 인종차별적 표현을 개선하기 위한 의견표명”을 하였다.

→ 성소수자 혐오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이나 혐오발언이 사회 전체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2010년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 이후로 호모포비아 단체가 만들어져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동성애 혐오적인 보도가 이루어져 왔으며, 법원 판결이나 공직자 발언에서도 혐오적인 표현을 찾아볼 수 있다.

■ 정책제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혐오적 표현이 차별임을 명확히 한다. 또한 관련 사안에 대해 차별시정기구가 조사를 하고 조정, 화해, 시정권고 등 비사법적 구제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억제 공적 표현에 대하여 소송으로 입막음 안 된다

■ 현황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은 시민들의 공적 발언 및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말한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8년과 2009년도에 정부기관 또는 공직자에 의해 전략적 봉쇄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 대한민국(국가정보원) - 박원순

박원순 변호사가 2009년 6월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해 국정원은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사건은 법원에서 원고인 대한민국(국가정보원)이 패소하였다.

→ 미국산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범국민대책회의 - 광화문 인근 상인들

광화문 인근에서 영업하고 있는 상인들이 2008년 촛불집회 때문에 18억 4300만 원의 물질적·정신적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미국산광우병쇠고기수입반대범국민대책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원고인 광화문 인근 상인들이 패소하였으나, 원고 중 일부 상인들이 다시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다.

→ 대한민국 등 -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등

2011년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희망버스에 대해 대한민국 및 시위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원고가 되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특히 대한민국 등은 이 사건 소장에서 부상이나 장비 훼손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과 함께 (불법)시위에 대한 제재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 정책제안

공적 청원 및 표현행위가 청구원인으로 제시되는 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이 특별기일을 강제적으로 잡고,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해서는 조기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

이 정책보고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여러 가지 법제도와 관행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진정한 시민적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회운동을 제안한다.

”



질 의 서

이주민 관련 정책·공약에 대한 질의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첫째, 이주민 정책 일반에 대하여

1) 현황과 문제

200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 뿐 아니라 결혼이주민이 증가하면서 한국 정부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하고, 이들 법률에 근거하여 다문화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이주민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관련 정책은 시민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첫째, 재산, 학벌, 혈통 등에 따라 이주민을 우수인재>투자자>결혼이민자>동포>단순 기능직 이주노동자>미등록 이주민 등으로 구분하여, 체류자격과 권리에서 차별적으로 처우하며, 국내에서 비자변경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주민 일반을 대상으로 전체 정책을 총괄, 기획하는 법률과 주무기관 없이 각 각의 대상에 대해 개별적인 지원을 선언하는 수준의 법률 입법 하에, 각 부처가 독자적인 방식으로 전시성, 이벤트성 사업을 수행하여 프로그램이 중복되고, 예산이 낭비되어 왔습니다.

셋째, 이주민 중 다수인 동포와 이주노동자 등을 배제한 채 지원 대상을 결혼이주민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관련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체험에 집중되어 있고, 다문화교육 대상을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가 아니라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로 한정하는 등 현재의 다문화정책은 이주민이 한국사회에 일방적으로 적응할 것을 요구하는 동화주의에 입각해 있습니다.

다섯째,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 이주민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이 없고, 정책은 이주민의 자립보다 시혜적 성격이 강해서 실제 당사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여타 소수자에 대비한 편파적 지원 논란과 다문화정책에 대한 반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2) 대안

첫째, 현실에서 이주민은 우수인재, 결혼이민자, 동포,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 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입국 시 비자 유형에 따른 자격, 권리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여 비자유형을 단순화하고 국내에서 비자유형 간 전환이 가능한 출입국관리 행정을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은 그 대상을 “합법 체류 외국인”에 한정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법」은 그 대상을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민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법안의 입법 목적, 대상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이주민 간 차별적 처우에 기초한 법안을 개정하고, 다양한 이주민을 포괄해 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령을 새로이 입법해야 하며, 인권과 장기적 전망에 기반하여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기존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셋째, 총체적이며 장기적인 이주민 정책 혹은 다문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주무부처가 필요합니다. 담당 부처는 관련 정책이 법, 복지, 건강과 교육, 노동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는 만큼 부처별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관련 정책 간 중복을 조정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이주민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이 가능한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최근 한국 사회에 외국인 혐오증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3) 질의

(1)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이주민’ 정책을 입안하기 위하여 정책 입안 및 조정 단위를 일원화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과「다문화가족지원법」등 기존의 관련 법안을 재검토하여 이주민 전체를 포괄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2) 재산, 학벌, 출신, 혈통 등에 따라 이주민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현재의 비자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내에서 이주민의 비자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3) 모든 장기체류 이주민은 주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국 시 비자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장기체류자에게는 영주권과 국적 획득의 가능성과 자격이 부여되어야 하며, 그 자격은 대상자의 재산이나 학벌이 아니라 생활기반

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둘째 이주노동자 정책에 대하여

1) 현황과 문제

그동안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전문인력(우수인재)과 단순기능직 이주 노동자를 이
분법적으로 엄격하게 구분하여 차별적인 처우를 해 왔고,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에게
는 장기체류와 정착을 허용하지 않는 단기순환제도인 고용허가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과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
니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장기고용을 원하는 기업주의 요구에 따라 ‘성실외국인근로자 재입
국제도’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국내 체류기한을 최대 9년 8개월까지 연장 가능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약 10년의
장기체류가 가능하게 되었는데도 여전히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의 단기순화원칙을 고
수하며 정착과 가족동반 및 주민으로서 권리 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
니다.

둘째,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취업 업종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3D 업종으로 제한
되어 있는데, 해당 업종과 기업의 근로감독 강화와 근로조건 개선 노력은 없이, 업종
변경은 전면 금지하고 사업장 변경은 엄격히 제한하여, 이주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인
권침해가 만연하고, 산업재해가 빈번한 유해한 환경에서도 참고 일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도 운영 과정에서 기업주의 이해관계만이 일방적으로 관철되어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는 기업주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장 이
동이나 체류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인권과 노동권 침해에 대해 문제제기
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넷째, 비현실적인 업종 이동 전면 금지, 사업장 이동 제한, 구직신청기한 1개월, 구직
기한 3개월 등 고용허가제의 경직적인 규정, 사업주의 이탈신고만으로 미등록 체류자
가 되는 등 제도가 미등록체류자를 양산해 내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구제책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대안

이에 이주노동자들과 시민사회는 비현실적인 전문인력 대 단순기능직 이주노동자의 이분법을 극복하여 외국인력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체류자격에 따른 이주노동자 간 차별을 폐지할 것,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과 업종 이동의 자유를 확대할 것,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장기체류자로서 실질적인 권리와 안정적인 체류권을 부여할 것, 더불어 제도적 한계와 행정적 절차의 문제로 미등록체류에 이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3) 질의

(1) 단순노무인력 대 전문인력 간 이분법과 그에 따른 차별적 처우 및 권리의 제약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주노동자의 체류자격과 그 조건에 대한 차별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2) 현재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에게 최장 10년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체류 이주노동자에게 그에 걸맞는 권리와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3) 이주노동자들이 기업주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하여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의 업종 이동을 완화하고, 사업장 이동제한을 폐지하는 법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4) 고용허가제의 경직된 법 규정과 행정절차, 인권·노동권침해 등으로 미등록상태가 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익제기 및 구제제도를 마련하는데 찬성하십니까?

(5)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이 현재 5년째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모든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포함해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셋째, 미등록 이주민 정책에 대해

1) 현황과 문제

2012년 9월말 기준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1,448,933명 중 미등록 이주민은 179,843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한국의 이주민 정책의 폐해와 노동시장의 필요성에 의해 구조적으로 양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취약한 법적 지위로 인하여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인권침해와 노동착취에 노출되어 있습

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국가인권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등록 이주민 부분을 전부 제외하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서 미등록 이주민을 제외하는 등 미등록 이주민들을 사회통합 정책에서 철저히 배제하여 왔습니다.

정부는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고 있는 구조적인 폐해는 외면한 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 강제추방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과정은 매우 폭력적이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8. 4. 8. 대전에서 중국인 이주민 여성 두 명이 출입국직원들에게 단속을 당하면서 폭행당하는 장면이 한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어 출입국단속의 충격적인 실상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였고, 2008. 11. 12. 경기도 마석에서 수백 명의 경찰과 출입국직원들이 폭력적으로 120여 명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부상자가 10여 명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이주민들은 출입국 단속/추방 과정에서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보호소 구금 문제도 매우 심각합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사실상 구금시설이지만 구금기간, 구금 절차와 관련하여 사법통제절차가 전혀 없어서 장기구금 등 남용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도 한 몽골인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사망하는 등 외국인보호소 내 수용자 처우문제, 의료문제, 안전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2) 대안

이에 이주민을 지원하는 인권단체들은 지속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고, (1) 이주민에 대한 단속/보호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바 그 사유와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여 개정하고 사법심사를 강화할 것, (2) 사실상 구금시설인 보호소 구금을 최소화하고, 보호소 내 수용자의 처우 개선 등 보호시설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선할 것, (3) 미등록 이주민을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을 개선하고 미등록 이주민들을 합법화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 (4) 미등록 상태에서도 교육권, 의료접근권 등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보장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3) 질의

(1) 출입국 단속/보호/강제퇴거 절차는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인 바, 그 사유와 절차를 형사사법절차에 준하여 개정하고 사법심사를 강화하는 법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2) 외국인보호소 내 장기구금 및 수용자 처우 문제를 개선하고, 보호시설을 인권친화

적으로 개선하는 법제도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3) 미등록 이주민들도 교육권 및 의료접근권을 차별 없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 보장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4)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책으로 강제단속/추방 중심의 정책을 지양하고 합법화 조치 등 구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넷째, 난민 정책에 대해

1) 현황과 문제

한국이 1992년 난민협약에 가입한 이후 2010년 12월말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자는 222명(법무부심사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의 결과로 인정된 경우 포함)에 불과하여 난민 인정률 자체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난민인정절차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 최소한의 적법절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난민심사 과정에서 전문적인 통역관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의신청 절차인 난민인정협의회가 난민신청자에 대한 청문 절차 없이 2시간 만에 1백건이 넘는 이의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적난민과가 신설되기 하였지만, 2012년 5월말 심사 대기인원은 1,264명으로 집계되는 등 소수의 난민전담공무원 인력으로는 역부족이어서 난민 심사에 심각한 적체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민심사기간은 장기화되는데, 난민신청자는 신청 및 소송단계에서 주거, 취업, 생계보조비, 의료서비스 등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개정된 난민신청자에 대한 취업허가제도의 절차는 매우 엄격하여 실제로 취업허가를 받은 난민신청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한편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를 허가 받은 자는 136명(2010년 12월말 기준)으로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허가 외에 다른 처우규정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 결과 교육, 의료, 주거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대안

이에 인권단체들은 (1) 난민관련 국제인권법에 근거하여 난민인정절차를 개선할 것, (2) 난민인정절차 기간 동안 난민신청자들이 주거, 취업, 생계보조비, 의료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 (3)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를 허가 받은 자에 대하여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하여야 한다고 요구해 왔습니다.

3) 질의

(1) 난민인정절차의 투명성, 공정성,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난민법과 난민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전문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인 통역관 제공, 최소한의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이의신청절차 제도 개선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2) 난민신청자들이 난민인정절차 기간 동안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보조비, 주거, 취업, 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3) 인도적 사유에 의한 체류를 허가 받은 자들도 난민에 준하는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다섯째, 동포 정책에 대해

1) 현황과 문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재외동포사회의 발전과 역량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으며 적극적인 재외동포정책으로 해외동포의 역할과 자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재외동포법에 따라 이들에게 재외동포 비자(F-4)를 발급하여 출입국의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CIS 국가 동포들에게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라는 명분으로 F-4를 제한하는 차별적인 재외동포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이에 참여정부 하에서 이러한 동포간 차별적 법적용을 완화하기 위해 방문취업제를 시행하여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 및 CIS 동포의 규모가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 7월 현재 방문취업동포를 포함하여 모두 47만 여명 이상의 동포들이 국내 체류하고 있으며 중국 및 CIS 동포는 국내 체류 외국인 145만 여명의 32%, 국내 거주 재외동포 56만 여명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적회복 및 귀화자를 포함하면 거의 60만 명의 중국 및 CIS 동포들이 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국동포의 한국체류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체류유형도 다양화하면서 한국사회 구성원으로서 중국동포들에 대한 사회통합 정책의 필요성 또한 점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조선족 동포사회의 건전한 발전은 한반도 남북의 접촉과 관계 개선, 나아가서는 통일 문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과 인적 자원의 활용은 한국의 다문화 및 이주민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이들을 여전히 고용허가제의 틀 안에서 단기순환 이주노동자로 처우하고 있으며, 다문

화정책에서도 소외시키는 등의 형평성을 잃은 재외동포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대안

(1) 동포에 대한 관련 법령 정비

중국 및 CIS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포문제를 외국인력정책 차원에서 접근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중국 및 CIS 동포에게도 재외동포법을 동등하게 적용하여 여타 선진국 동포와 동등하게 재외동포로서 처우하여야 합니다.

(2) 재외동포법 관련 법령의 정비

재외동포간 차별의 근원이 되고 있는 재외동포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을 개정하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에서 재외동포의 자격을 가진 자의 활동제한 사유 중인 제1호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3) 재외동포 사회통합 관련 법령의 정비

국내 체류 재외동포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동포들이 이미 국내에 장기 정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동포에 대한 사회통합 예산과 인프라 확보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 및 CIS 동포들의 사회통합 지원과 예산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동포의 안정적인 국내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 확보가 필요합니다.

3) 질의

(1) 올해는 한중수교 20주년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중국 및 CIS 동포를 재외동포로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고 단기순환 이주노동자로 취급하여 한국에 불안정하게 체류하도록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국 및 CIS 동포들이 재외동포입니까? 아니면 이주노동자입니까? 이에 대한 견해와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2) MB정부는 중국동포들이 내국인의 고용을 침해하고 있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중국동포들이 원하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전면적 부여와는 다르게 오히려 방문 취업 체류 만기로 출국하는 동포들의 재입국을 1년 동안 억제하거나 만55세~59세의 중장년층에게는 여행비자(C-3)를 통해 입국을 허용하는 등의 매우 제한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포의 미등록 체류와 불법 취업 등 많은 부작용이 발

생하고 있는데 현행 제한적인 방문취업 체류만기자 정책을 완화함으로써 동포들의 안정적인 체류를 도모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3)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동포의 취업이 특정 업종에 집중하는 등의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을 받기 위해 실용성이 부족한 6주 교육을 받거나,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 위해 이미 사양 산업에 접어든 기능사자격을 따기 위해 고액의 학원비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포에 대한 적절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을 통하여 다양한 취업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데 찬성하십니까?

(4) 국내 체류 동포에 대해 다문화정책이나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제대로 된 체류지원과 사회통합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정부에서 책정한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정책 사업 중에 재외동포의 안정적 국내 정착지원사업 명목 등으로 편성된 예산은 법무부의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용을 위한 1,200만 원 정도가 고작입니다. 동포도 사회통합의 중요한 대상이지만 아직까지 재외동포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포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동포들의 국내 체류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 예산과 인프라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여섯째, 결혼이주민 및 이주여성 정책에 대해

가. '다문화 가족'의 범위 확대를 통해 국내 거주 이주민에 대한 포괄적 지원

1) 현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정의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을 한국 혈통이나 귀화자와의 혼인 관계를 통해 형성된 가족으로 제한하고 있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끼리 혼인한 부부, 국적을 유지한 채 오랜 세월 외국에서 살다가 한국인과 결혼한 재일동포 부부 등 한국어 서비스나 자녀양육 지원 등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다양한 행정적 서비스 혜택이 절실한 다양한 이주민 가족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2) 대안

기존의 혈통 중심, 국적 중심의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1) 내국인과 외국인이 국제결혼한 가족, 2) 같은 나라 출신이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 가족, 3) 서로 다른

나라 출신이 결혼하여 한국에 정착한 이주민 가족, 4) 다른 문화권에 살던 동포로 한국에 정착한 가족 (고려인, 중국 동포, 새터민), 5) 오랫동안 타국에서 생활하다 한국에 돌아와 새롭게 정착하는 가족 등으로 확대하여, 국내 거주 이주민이 보편적 인권 기준에 의한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질의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이주민에 대한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나. 체류자격 및 영주권 / 국적 신청, 심사 제도의 합리화

1) 현황

결혼이주자는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 없이는 외국인등록, 체류연장 및 영주권·국적 취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 방임, 학대 등을 당해도 안정적인 체류권 확보를 위해 참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2년 8월 1일자로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영주자격 취득 신청 시 한국어능력시험 2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 등 한국어능력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증빙에서도 3,000만 원 이상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혹은 예금 등과 재직증명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심사과정에서는 재산 증식 과정까지 소명을 요구하는 등 까다롭게 적용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결혼이주민에 대한 영주권이나 국적의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혼인 후 한국 체류 2년이며, 심사를 거쳐 영주권이나 국적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현행 기준에서는 영주권이나 국적의 심사 기한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실제 심사기간은 매우 길어서 2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주여성들 사이에서는 ‘아이가 있으면 1년 반, 아이가 없으면 2년 반’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국적을 신청한 후 장기간의 심사기간 동안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의 의사 철회, 서류회수 등 신청과정에서도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대안

한국인 배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연장, 영주자격 및 귀화신청 등 체류자격 취득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결혼이주자가 독자적으로

체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결혼이주민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입국 후 외국인 등록과정에서 2년 기간의 임시영주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이후 추가적 심사를 통해서 영주자격으로 전환해 주는 방식으로 입국시부터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 폭력피해 외국인배우자,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외국인배우자는 사회적 약자로 인정하여 심사 없이 영주자격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영주권 및 국적 심사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신청인이 자신의 미래를 예측 가능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3) 질의

(1) 한국인 배우자가 특정한 사유 없이 외국인 배우자의 안정적 체류 자격 확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결혼이주민이 자력으로 체류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2) 결혼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확보 및 폭력 예방을 위해 국적 및 영주권 심사 기간을 명시하고,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3) 결혼이주민의 체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영주체류비자를 제공하고, 혼인 생활이 일정한 기간 경과한 후에 영주자격 비자로 변경해 주는 제도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다. 혼인관계가 해소된 결혼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

1) 현황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사별, 이혼 등에 따른 가족 해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주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혼이주민은 사별,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해소될 경우 내국인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체류자격의 유지입니다.

자녀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결혼이주민이 이혼 후 체류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본인에게 없음을 재판이혼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야 합니다. 사별한 결혼이주민의 경우도 한국에서 체류 연장을 하려면 체류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고, 신원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특히 혼인 중 가출이나 별거했던 사실이 출입국 관리 자료에 기재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혼인의 진정성이 없다며, 영주자격이나 귀화 심사에서

탈락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이주민의 체류 심사가 매우 엄격하게 집행되다 보니, 한국인 배우자나 가족에 의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 객관적으로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 정신적 질환이나 지적 장애 등으로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유책'이라고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이주민은 '가출'을 감행해 버리고, 이를 유책 사유로 삼아서 공시송달 형식으로 이혼을 당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등의 이유로 결혼이주민의 미등록 체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 대안

- (1) 국제결혼의 당사자는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류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 국내에서 취업이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체류의 목적이 달라졌다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3) 사별한 결혼이주민에게는 영주자격이나 귀화 심사 기준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 (4) 혼인으로 국내 입국했다가 미등록 체류자가 된 결혼이주민에게 특별조치를 통해서 합법적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질의

- (1) 결혼이주민의 혼인관계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체류 여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2) 결혼으로 국내 입국했다더라도 취업이나 학업 등의 목적으로 체류의 목적이 달라졌다면 체류 자격을 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3) 사별한 결혼이주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법률조력인 제도를 도입하는 데 대해 찬성하십니까?

라.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통합적 지원체계 필요에 대해

1) 현황과 문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피해 체계는 법규나 지원기관 등 세부적으로 구분되어 있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도 위기전화, 상담소, 쉼터, 자립센터, 주거지원 등으로 연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지원

체계는 가정폭력 중심으로 위기전화(중앙, 지부6개소)와 쉼터(18개소), 자립센터(1개소)만을 갖추고 있는데, 성폭력, 성매매 분야의 피해 지원까지 포괄하도록 되어 있어서, 법규나 시설 운영에 있어서 다양한 폭력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뒷받침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주여성을 위한 전문 상담소 지원도 없으며, 성폭력이나 성매매 피해 여성의 체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2) 대안

(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합니다.

(2) 이주여성 전문상담소가 필요하며, 폭력 피해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적 활동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특히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거나 이용하는 사업장, 학원, 학교 등에서도 성폭력, 성매매 등에 관한 관련 법규 교육 등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3) 질의

(1)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주여성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2) 이주여성 당사자에 대한 예방교육 뿐 아니라 이주여성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나 이주여성이 이용하는 기관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마. E-6 예술흥행공연 사증과 관련한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와 성착취 상황 개선

<현황과 문제점>

E-6 예술흥행공연 체류자(총 4,721명 중 미등록은 1,504명, 32%)는 이주노동자 중 최고의 미등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2011년도에 한국의 예술흥행공연 사증 소지 이주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로 예술흥행공연자의 인권침해 상황은 심각합니다. 예술흥행공연자들은 성

매매, 인신매매, 임금 체불, 여권 압수, 폭력, 잦은 이송, 매상 압박 등 다중적인 인권 침해 상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NGO단체들에서는 2001년부터 거의 매년 미군기지 주변 지역(이하 '기지촌') 등 유흥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연예인들의 성매매, 인신매매 피해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E6' 문제는 전혀 해결의 조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E6' 관련 업무 즉, 공연 추천(영상물등급위원회) 및 심사 담당은 문화관광부 산하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외국인 연예인 파견업체의 허가 및 사후 관리 감독 업무는 노동부에서, 사증 발급 및 체류 관리 업무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성매매 피해 신고는 수사기관에서,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감독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는 등 분산되어 있는 시스템 때문입니다.

특히 안타까운 점은 피해자들이 외국인 신분으로 신고하거나 법적인 소송을 통해서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여, 대부분 사업장을 도망 나오는 방식의 소극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의 사항>

- 1) 이주 여성들의 인신매매 피해를 예방, 방지하기 위한 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 2) 위 E6 외국인 연예인들이 유흥업소에 배치되어 성매매, 성접대에 이용되고 있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데 찬성하십니까?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변호사·법학박사 유 남 영

논문요지

현재 우리사회는 2012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두고 “2013년 체제”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이 글은 소위 “2013년 체제”의 당위성 및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미래사회에서 인권이 가져야 할 위상을 현재보다는 훨씬 높이기 위해서 인권기본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러한 인권기본법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소극적인 의무만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 존중, 충족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의무를 논의, 계획, 이행, 교육하는 국내 인권레짐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권정치의 제도화를 통하여 인권국가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인권기본법에 규정될 내용으로는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절차,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및 인권교육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인권의 지방화를 위한 지방인권기구의 설치, 이러한 절차에 있어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기업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 해외개발원조에 있어서 인권의 고려 등을 들 수 있겠다.

검색용 주제어: 국가인권기구, 파리원칙,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기본법, 2013년 체제, 국제인권레짐, 국내인권레짐, 지방인권기구

* 논문접수: 2012. 2. 21. * 심사완료: 2012. 3. 16. * 게재확정: 2012. 3. 16.

I. 문제의 제기

- 인권정치의 제도화를 통한 인권국가의 달성 -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953년 체제” 또는 “1987년 체제”의 종말과 “한국사회의 새판”으로서 “2013년 체제”의 시발을 논하는 논자들이 있다.¹⁾ “2013년

* 이 글은 한국인권재단이 2012. 2. 9.부터 2. 11.까지 “도시와 인권”을 주제로 개최한 한국인권회의(Korea Human Rights Conference)에서 필자가 “국내인권레짐의 제도화를 위한 인권기본법의 제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 글은 우리사회의 인권의 현실을 개선하고 인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인권기본법의 제정을 제안하고 이를 위한 논의를 촉구하는 단초를 제공할 목적으로 쓰여졌다.

1) 정원식, “한국사회 새판 ‘2013년 체제’를 짜야 한다”, 주간경향 제958호(2012. 1. 10.), 16-18면.

체제”의 당위성 및 그 구체적인 내용²⁾이 어떠한 우리사회에서 인권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우리사회의 미래에 접목될 인권의 위상 및 이행방법에 관하여 질문하고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사회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 그 동안 논의되어 온 대안(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개정 등)이 충분한가,’ ‘현 정부 아래에서의 인권의 후퇴에 관하여 제기되어 온 문제점이 과연 정권교체로 일소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인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자유란 “인간의 정열이 가장 맹렬하게 싸우는 싸움터이자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들이 암투를 벌이는 영역”이다.³⁾ 그런 까닭에 인권문제는 늘 정치적 문제일 수밖에 없다.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저간의 사정을 보면, 우리사회에서 실제로 인권문제가 얼마나 정치적인 문제인지 알 수 있다. 보편적인 인권문제가 국내정치적인 맥락에서 심하게 정치화되는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보편적인 인권문제가 좀 더 안정적인 절차와 과정에 따라 논의, 해결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새로운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방안 가운데 하나로 UN 등의 국제 인권레짐(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국가인권기구(NHRIs,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시민사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라는 네 꼭지점을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하여 인권의제가 국제기준에 맞추어 우리사회 내부에서 소통되는 것을 촉진하는 국내 인권레짐(domestic human rights regime)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국내 인권레짐 아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가 국제 인권레짐과 연계하여 국가기구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력에 대하여 인권의제를 논의, 전파, 교육, 계획하는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활동공간을 넓히고 그러한 공간이 지방 인권레짐(local human rights regime)을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도 형성되므로 중앙 및 지방에서 각각 인권정치⁵⁾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국내(중앙 및 지방) 인권레짐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권기본법이 필요하다. 이하에서 인권기본법의 제정에 관한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배경과 그 내용을 살펴본다.

2) “2013년 체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백낙청 교수는 “평화체제, 복지국가, 공정공평사회” 등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2013년 체제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중의 정서를 감안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백낙청, 2013년 체제 만들기, 창비, 2012, 22면, 28면).

3) 홉하우스, 자유주의의 본질, 김성균 옮김, 현대미학사, 2006, 42면.

4) 앤드류 클레팸, 인권은 정치적이다, 박용현 옮김, 한겨레 지식문고, 2010, 232면.

5) 조효제 교수는 인권의 정치를 “인권의 정치화”와 구분하면서 “전체 인권원칙을 옹호하면서 정치적 기회구조를 선용하고 정치과정에서 인권의제를 격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정치”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인권의 정치에서는 “인권은 목적이 되고 정치는 인권달성을 위한 수단이자 맥락”이 된다고 설명한다(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41면). 조효제 교수는 이러한 과정을 일컬어 “역동적, 포괄적 인권정치,” “인권의 정치”라고 표현하고 있다(위 책, 41-42면).

II. 인권기본법 제안의 배경

필자가 이러한 인권기본법을 제안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1991년 소위 파리원칙(Paris Principle)이 채택된지 20주년이 지난 지금의 상태에서 전세계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평가하는 차원이다(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 둘째는 우리나라의 201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인권운동을 위하여 내세울 수 있는 정책과제를 생각해 보자는 차원이다(대선국면에 있어서 정책과제로서의 인권). 셋째는 이러한 정책과제가 현재의 국가인권기구(국가인권위원회)를 보강하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개혁과제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하여야 할 것인가, 달리 말하면 소위 “2013년 체제” 속에서 인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차원이다(우리사회의 개혁과제로서의 인권). 이하에서는 인권기본법 제안의 배경으로서 이 세 차원(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 대선국면에 있어서 정책과제로서의 인권, 우리사회의 개혁과제로서의 인권)을 살펴본다.

1.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

소위 파리원칙으로 알려진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이 채택된 1991년 이후 약 20년 동안 각 국가가 국가인권기구를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으로 발전되었다. 현재 130여개 국가가 파리원칙에 따라 국가인권기구(NHRIs)를 설립하였다.⁶⁾ 이와 같은 흐름은 인류의 근현대 역사에서 법원 및 헌법재판소와 같은 사법제도와 의회 등의 정치제도가 보편적 인권문제를 제기하고 이행하는 데에 있어서 기대한 바와 같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였다는 역사적인 경험과 이에 대한 자기반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⁷⁾ 국가인권기구의 등장은 1993년 비엔나 선언(the Vienna Declaration)이 보여준 바와 같이 인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놀랍고도 새로운 현상이다. 그러나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은 그 설립만큼 놀랍지는 않은 것이 현재의 현실이다.

필자는 국가인권기구들의 세계적인 연합체인 소위 국제조정위원회(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에서 회원기구가 파리원칙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평가하는 승인소위(SCA, Subcommittee on Accrediation)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Asia Pacific Region)을 대표하여 5차례 참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ICC에 가입하고 있는 세계 70

6) 필자의 논문, “파리원칙의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제2권(2011. 9). 203면.

7) 위 논문, 208면.

여개 정도의 국가인권기구의 활동내역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⁸⁾ 인도양의 작은 섬나라(모리타니아, 몰디브)에서부터 북극의 러시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나라가 좋은 싫든, 많은 적든, 인권의 문제를 무시하지 못하고 인권문제를 위하여 인력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 점은 인권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인권이 이렇게 전지구적으로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크게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선, 전 세계 국가인권기구 가운데 파리원칙을 충실하게 제대로 지키고 있는 기구는 거의 없다는 현실이다. 파리원칙은 애초에 의도한 바와는 달리 모든 국가가 정치적 및 사법적 전통을 떠나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최소기준(minimum standard)이 아니라 국가인권기구의 가장 최대한의 모습을 그린 이상형(maximum programme)으로 작용하고 있다.⁹⁾ 국가인권기구가 헌법상의 기구로 설립된 국가에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다음으로, 예외는 있지만 국가인권기구들의 활동은 한 마디로 변변치 못하다는 사실이다. 선진국의 국가인권기구들은 대개 자문기구의 정도이거나 아니면 이주노동자 내지 원주민의 차별 문제 정도를 다루고 자국 내에서의 비중도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 심각한 인권문제의 해결 내지 개선이 필요한 국가들(주로 후진국,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이 여기에 속함)의 경우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은 미미하다. 국가인권기구의 권고가 무겁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국가인권기구들은 많은 경우 인원과 예산의 부족을 겪고 있다. 즉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여건이 마련된 국가에서는 취급할 인권문제 자체(주로 내국인에 대한 인권)가 심각하지 않고, 심각한 인권문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국가인권기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후진국의 국가인권기구는 정치권력과 충돌하게 되는 인권보호의 활동보다는 정치권력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 내지 홍보 활동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를 국가인권기구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겠다.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이 이렇게 변변하지 못한 이유는 국가인권기구가 설립된 국가의 정치현실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기구는 그 제도적, 형식적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사회적 진공의 상태에서 활동하지 않는다.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활동 그리고 구성원의 충원과정 그 자체가 해당 사회의 정치적 과정(합의, 타협, 투쟁, 배제)의 산물이다. 그러한 까닭에 국가인권기구는 그 사회의 다수와 내지 정치권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기 십상이다. 다시 말하면, 국가인권기구는 정치권력의 인권문제에 관한 정치적 의지를 반영할 수는 있으나, 그 반대로 국가인권기구가 정치권력의 그러한 의지를 생성, 강화시키거나 돌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까닭에 정치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인권기구가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가는 정

8) 필자는 이 승인소위에 참석한 경험과 자료를 기초로 하여 위 논문을 작성하였다.

9) 위 논문, 220면.

치권력이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을 어떠한 범위까지 허용, 활용할 것인가,’ ‘정치공간에서 국가인권기구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위치와 발언권을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¹⁰⁾ 왜냐하면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은 기본적으로 다른 국가기구 및 정치권력의 자발적이고 임의적인 협력, 지지, 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계로 국가인권기구가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의지를 갖고 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다수파의 정치적 지지가 없는 한,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은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처럼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 국가인권기구의 생명인 독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가인권기구의 고립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에서 볼 때, 파리원칙이 선언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UN이 그 동안 추진해온 국가인권기구 설립 및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NHRIs Project)가 당면한 과제는 이미 설립된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effectiveness)을 어떻게 높힐 것인가에 있다고 본다(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의 강화). 인권기본법은 국가인권기구가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공간을 확장함으로써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을 제고,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 대선국면에서의 정책과제로서의 인권

소위 “2013년 체제” 또는 우리사회의 미래의 모습에 대한 비전이 어떠한지, 현 정권 아래에서의 인권의 후퇴에 대한 진단¹¹⁾과 반성,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의 평가¹²⁾ 및 이에 기초한

10) 위 논문, 256면. 이러한 허용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고안된 방안은 여러 가지이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 위원선임의 투명성, 시민사회와의 폭넓은 교류 및 협력, 국제적인 협력 등이 그것이다.

11) 이러한 점은 국제인권단체 등의 평가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한국은 프리덤 하우스가 조사한 언론자유 평가에서 2011년에 “자유국가”에서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강등되었다. 이러한 강등은 “검열과 함께 언론매체의 뉴스와 정보콘텐츠에 대한 정부영향력의 개입이 확대된 데에 따른 것”이다(연합뉴스 2011. 5. 3. 기사, 한국, ‘부분적 언론자유국’ 강등). 또한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에서 실시한 2011년 국민인권인식 실태조사에 의하면, 전문가의 80%가 한국정부의 인권상황이 후퇴하였거나 인권적 고려가 없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105면, 170면).

12)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평가는 다종다양하다. 논자가 누구냐에 따라 그 공과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이다.

사단법인 시대정신이 2011. 11. 21. 『국가인권위원회 10년 평가 및 인권문제의 방향』이라는 토론회를 주최하고 자료집을 펴냈다. 이 토론회의 발표자인 이재교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성과성에 대하여 지적하면서 “지난 10년간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라크전 문제, 국가보안법문제, 용산참사 등의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성과성에 기초한 결정이 적지 않았던 바 이례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가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존립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재교, “국가인권위원회의 10년을 돌아본다”, 위 자료집, 42면). 또한 토론자인 성재호 교수는 “인권이 가지는 보편적 성격을 특정이념의 전유물인양 호도하는 주장이 없지는 않았는지 정확히 짚어보아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인권을 정치적 도구화하는 시도는 없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성재호,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내적, 국제적 평가”, 위 자료집, 44면).

전통적인 인권운동진영의 경우에도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긍정적이지 않다. 지난 10년간

정책의제가 2012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논의, 제시될 충분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아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조와 활동은 말 그대로 모범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¹³⁾ 행정부로부터의 제도적 및 정치적인 독립, 상당한 규모의 인력과 예산, 진정사건 조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업무권한, 시민단체와의 폭넓은 협력과 교류,¹⁴⁾ 인권 문제에 대한 꾸준한 권고와 의견 표명, 국제 인권레짐에 대한 적극적 참여, 언론에 대한 빈번한 노출 등은 전반적으로 UN이 국제 인권레짐의 한계와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시작한 국가인권기구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¹⁵⁾ 어떠한 시각에서 보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아래에서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정치권력이 그 정치적 독립성과 그에 따른 활동을 대체적으로 용인하는 양호한 조건 아래에서 활동을 한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산파로서의 인권운동진영 및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그러한 활동을 허용하는 정치권력의 의지에 빚진 바가 많다고 본다.

이에 반하여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의 축소 및 그 이후의 여러 가지 모습은 기본적으로 현 정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및 그에 기초한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의 정권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사회의 인권의제를 공공의 장에 투사하는 정치적 역할 및 공간을 확보, 확대해 나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한마디로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집권세력 및 이를 지지하는 세력의 인권에 대한 이해 및 태도로부터 나온 것이다.¹⁶⁾

의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에 대하여 “실망”과 “분노”를 표시하는 성적소수자 운동가의 격정적인 비난으로부터 (한채윤, “개와 늑대의 시간 - 성적소수자와 국가인권위원회의 10년”, 『국가인권위원회 10년, 무엇을 남겼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대토론회 자료집, 116면, 126면) 인권위원들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성토했는 날 선 목소리(조백기,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위 자료집, 192-196면; 정영선,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위 자료집, 215-217면) 그리고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관계가 “애증에서 무관심으로 다시 분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으며 시민사회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제대로 견인하지 못했다는 자아비판까지 아주 다양하다(박래군, “국가인권위원회 10년 무엇을 보아야 할까?”, 위 자료집, 335-336면). 한편 이러한 여러 가지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에서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하여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문제를 조백기는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왜 지금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되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집권으로 갑자기 그 역할과 기능에서 위축되고 급기야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것인가?”(조백기, 위 자료집, 177면).

13) 이에 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정파성을 띠고 있다는 비판에 대하여는 주 12) 참조

14) 이에 대한 다른 견해는 박래군, 주 12) 참조

15)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든 면이 이상적이라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의 인권문제(성적소수자, 북한인권, 기업과 인권, 여성인권, 비정규직의 차별을 포함한 고용차별 등에 관한 문제 등)에서 여러 가지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16)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위 우리사회의 좌파세력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제를 제기, 실천하는 편향된 초법적인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고 평가하는 그룹 및 세력에서는 현 정권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파행이 오히려 정상화의 과정이고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이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기창 변호사는 2010. 8. 12.자 법률신문에 기고한 칼럼(초등학생의 시위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결정을 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름은 거창하나 실상 법무부의 1개 과(課)에서 맡고 있던 업무를 장관급을 수장으로 하는 기구에 맡긴 것뿐이라서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일거리가 없으면 영똥한 사안도 확대해석하여 자신의 존재의의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을 수

이러한 부침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10년간의 경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하나는 단순히 제도적, 형식적으로 독립된 국가인권기구를 설립,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을 더욱 높이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효과성). 다른 하나는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인권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 계획, 이행, 교육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는 제도적, 형식적 독립성의 수준을 넘어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정치적 독립성). 이러한 경험을 반영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존재를 둘러싼 논의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인권운동진영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으로서 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 및 제도적 개선(예를 들면, 헌법기구화, 위원선임의 투명성 및 임기의 장기화, 위원의 상임화 및 대법원장의 위원추천권의 폐지를 포함한 위원회 조직의 개편 등)을 제시하여 왔다. 이러한 방안은 크게 두 가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이러한 개선방안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에 놓고 제시된 관계로 논의의 초점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인 보완 및 국가인권위원회원의 구성이라는 측면에 놓여있다. 물론 이러한 개선방안은 중요하므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선방안은 2012년의 대선국면에서 여야를 포함한 주요정당이 장래의 우리사회의 비전을 제시하는 주요한 선거공약으로 삼기에는 정치적 확장성이 크지는 않다고 본다.¹⁷⁾ 이러한 개선방안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구화는 장기간에 걸친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헌법개정에 속한다.

둘째, 이러한 개선방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본격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현재 인권운동진영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과 함께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그 범위가 정치권력의 지지 내지 허용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사회의 정치구조 안에서 독자적인 공간과 역할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와 제도를 조성하는 것이다. 즉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권정치의 틀을 만들어 각종 인권문제가 국가기구 내지 정치권력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인권정치의 제도화). 이러한 방안은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라는 두 운동선수의 주체적인 능력과 의지 및 장비를 보강하는 것에 더하여 이 선수들이 뛰어 놀 수 있는 운동장(playing field)을 마련해주는 것과 같다.

있으니 차라리 동 위원회를 폐지하고 다시 법무부 등 행정부의 다른 부처에서 그 업무를 보게 함은 어떨지? 그렇지 않고 일거리는 많은데 구성원들에게 문제가 있어 위와 같은 결정들이 나온다면 그 구성원들을 바꾸어 제대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 그 동안 구설수에 올랐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국가인권기구는 필요 없는 기구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 내지 행정부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와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17) 여당을 포함한 주요정당과 후보자들이 대선국면에서 인권에 관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교육 및 홍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단순히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모습을 고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2013년 체제” 또는 우리사회의 미래의 모습 속에서 인권의 위상을 보여주는 인권정책과제를 연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틀보다는 보편적인 인권의 시각에서 국가전체의 운영에 있어서 인권이 주요한 가치로 자리잡은 “인권국가”로 나아가는 차원에서 의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3. 우리사회의 개혁과제로서의 인권

국민들의 인권의식이 높아지고 있고 자신의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한 민감성도 높아지고 있다.¹⁸⁾ 그 결과 국민들의 우리사회의 인권수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국민들은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집단으로 여전히 검찰, 경찰, 군대 등을 지목하고 있다.¹⁹⁾ 또한 국민들은 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모두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인권침해와 차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지목된 사항 가운데 직업과 경제적 지위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²⁰⁾ 한 마디로 국민들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에 관한 사안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정적(현상유지적)인 반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에 대하여는 대체로 긍정적(현상개선적)이다.²¹⁾ 나아가 국민들은 우리사회의 인권보장수준을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중간수준으로 평가하여 경제선진국에 걸맞은 인권선진국이라고 보지 않으며 국제인권 조약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²²⁾ 이러한 복합적인 현상에 대하여 우리사회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하여 여전히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인권에 대한 관심의 중심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다.²³⁾ 이러한 현실과 평가 속에서 우리사회의 인권과제로 자유권과 사회권 등의 전통적인 영

18) 주11)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7면.

19) 주11)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48면.

20) 주11)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44면, 49면.

21) 주11)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7-8면. 이 조사에 의하면 사형제도, 국가보안법의 유지, 중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인터넷 실명제의 유지, 교육적 목적의 체벌 존치 등에 대하여는 70% 이상이 찬성의견을 나타내고, 공항에서의 전신투시장치의 도입, 교통혼잡 또는 소음우려 발생시의 시위 및 집회의 자유의 제한에 대하여는 찬반의견이 팽팽하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보수적인 태도와 입장은 전문가들의 입장과 극단적인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 이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인권의 본질로서 접근되지 못하고 정치적 지향과 혼동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인권의 정치화 현상은 소위 복지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있어서는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9면).

22) 주11)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43면, 94면.

23) 주11)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8면.

역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군대, 다수인생활시설 등의 부분사회의 인권의 증진, 기업과 인권,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학생인권조례, 인권도시 등), 개발과 인권 및 국제적인 협력, 북한인권, 인권교육 등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인권현실은 인권의제가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흐름과 함께 전통적인 인권의제가 온존하거나 다시 등장하여 인권의 개선과 후퇴가 동시적으로 존재하며 불균등하게 진행되는 소위 “인권의 부침현상”이 지속되고 있다.²⁴⁾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사회권을 비롯한 다양한 인권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만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 다양하고 폭넓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통적인 행정감독을 넘어서는 폭넓은 개입과 시민사회와의 체계적인 협치가 없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가가 우리사회에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도전과 제한의 대상이 아니라 인권의제를 실현하는 적극적인 핵심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할 시기가 본격적으로 도래한 셈이다.²⁵⁾ 그러므로 국가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인권을 단순히 침해하지 않는 소극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사회권만이 아니라 모든 인권을 보호, 존중, 충족하여야 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 이행하여야 한다.²⁶⁾ 예를 들면, 지난해의 영화 “도가니”의 열풍과 올해 신년초부터 뜨겁게 제기된 학생들 사이의 폭력에 관한 관심은 국가의 인권에 관한 적극적인 세 가지 의무(보호의무, 존중의무, 충실의무) 가운데 소위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안이다. 국가의 이러한 적극적인 의무는 인권의 역할이 단지 사람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자유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데에 있다는 사고방식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²⁷⁾ 즉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은 현대사회에서 민주적인 정치과정을 통해 분배를 둘러싼 정치적인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권이 요구하는 위와 같은 적극적인 의무 속에서 요구되고 있다.²⁸⁾

국가가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를 준수, 이행함으로써 위와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와 소통에 기초한 세심한 정책의 시행과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²⁹⁾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인권 관련 행위자들이 효과적으로 인권의제를

24) 정진성 외 2인,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118면, 201면.

25) 위 책, 118면, 280면. 조효제 교수는 현대인권의 경향이 점점 더 “탄압패러다임에서 웰빙패러다임으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조효제, 주5), 37면). 또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의 사무총장인 아이린 칸은 “인권은 국가가 부당한 조치를 삼가라는 요구일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국가의 조치에 대한 요청”이라고 설명한다(아이린 칸, 들리지 않는 진실, 바오밥, 2009, 39면, 41면).

26) 국가의 인권에 대한 의무는 권리를 존중, 보호, 충족하여야 할 의무(the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fulfill)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이 가운데 보호의무란 국가가 제3자의 권리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박찬운, 개정판 인권법, 한울, 2011, 100-103면). 이와는 달리 김도균 교수는 권리 일반의 관점에서 권리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하나의 권리에는 삼중의 의무가 대응한다’는 삼중의무 대응명제를 제시하고 침해금지 의무, 권리보유자 보호의무, 권리보유자 구조의무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다(김도균, 권리의 문법, 박영사, 2008, 184면).

27) 샌드라 프레드먼, 인권의 대전환, 조효제 옮김, 교양인, 2009, 67면.

28) 위 책, 77면.

논의하고 역할을 분담하는 안정적인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일 것이다. 한 사회의 인권이 개선 또는 후퇴하는 역동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국제 인권레짐을 비롯한 국제적인 조건, 국내적인 정치기회구조, 경제적인 조건, 시민사회의 역량 등이 지목되고 이 네 가지 요인은 각각 독립적 또는 상호적으로 작용하여 인권의 부침에 기여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³⁰⁾ 인권기본법은 이러한 네 가지 요인을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가 지금 보다는 훨씬 적극적으로 인권의제를 생산, 유통, 감시함으로써 인권의제가 국가기구 및 정치권력의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절차와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와 제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사회의 각 단위가 인권의제를 상시적으로 논의, 계획, 이행, 교육해야 하는 국내 인권레짐이라고 할 수 있겠다.³¹⁾

Ⅲ. 인권기본법의 내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권기본법은 인권의 목록이나 기준 및 원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인권문제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회의 각 단위에서 계속하여 논의, 계획, 이행, 교육될 수 있는 제도적인 공간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와 절차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위 인권을 보호(protect), 존중(respect), 충족(fulfil)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³²⁾ 예를 들면, 국제인권기구의 우리나라에 대한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절차,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국가인권 행동증진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및 인권교육의 제도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인권의 지방화를 위한 지방인권기구의 설치, 이러한 절차에서의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역할, 기업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 해외개발원조에 있어서 인권의 고려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국내 인권레짐을 구축하기 위하여 인권기본법이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선택함에 있어서 최소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이 유의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인권기본법이 수사, 정보, 사법 등을 다루는 국가기구의 폭넓은 개혁과 연계된 우리 사회의 개혁패키지의 한 부분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 정권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불행하게도

29) 주 11)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9면.

30) 정진성 외 2인, 주24), 8면.

31)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지난 2011. 10. 서울에서 개최된 Law Asia대회, 2011. 11. 18.에 개최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대토론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32) 주26) 참조.

우리사회는 과거 군사정부 내지 권위주의적인 정부 아래에서 겪었던 아픈 경험을 퇴행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의 남용,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찰 및 공안수사의 부활, 수사경찰의 고문 및 가혹행위, 경찰병력을 통한 물리적 진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검찰기구의 축소와 권한의 제한,³³⁾ 경찰의 지방분권화,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등의 정보기관의 수사권 폐지, 국민참여재판의 확대 등을 포함한 수사, 정보, 사법을 다루는 국가기구의 폭넓은 개혁이 2012년 대선과정에서 논의, 제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기본법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어떠한 위상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궁구되어야 한다. 물론 위에서 말한 사법개혁 등의 과제는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경찰 및 관련 국가기구에 관한 법률(예를 들어, 경찰법, 국가정보원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러한 개혁과제는 인권기본법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개혁 등의 과제가 중국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과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가운영의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사법, 수사, 정보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내지 인권관련 제도와 정책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이 글에서 논의하고 있는 국내 인권레짐의 주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이다.

다음으로, 우리사회의 인권문제를 체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활동을 한 차원 더 높이는 추가적인 제도와 절차가 필요하다.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아래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이 많아서 이를 통하여 충분히 인권의 제를 논의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법률이 필요없다는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범위(제19조), 입법 등에 관한 국가기관과의 협의(제20조), 정부보고서의 작성시 위원회의 의견청취(제21조), 인권관련사안에 대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제22조)와 청문회 개최(제23조),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다양한 협의 권한(제26조), 보고서의 작성과 국회의장 및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제29조), 위원장의 국무회의 출석 발언권(제6조 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년간 이러한 권한의 행사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은 전반적으로 기구의 구성과 조직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 조직법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일방적인 권한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의 임의적이고 자발적인 협력과 협조를

33) 문재인, 김인회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는 검찰개혁에 관하여 노무현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마련하였으나 검찰개혁에서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서 더 많은 개혁과제를 완수하지 못하였다며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주면 검찰이 저절로 민주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이었다. 검찰은 한국사회에서 이미 기득권 세력 중 가장 강력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의 핵심과제인 민주적 통제, 즉 분산, 견제와 감시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검경수사권의 조정, 법무부의 문민화, 과거사 정리 등을 달성하지 못했다. 참여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식이 철저하지 못한 점이 원인 중 하나이다. 주체간의 인식이 통일되지 못했고 검찰개혁을 위한 기구도 구성하지 못했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받아야 할 비판의 몫이다.”(문재인·김인회,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오월의 봄, 2011, 369면, 410면).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항이 인권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명시되고 국가인권위원회 및 지방인권기구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그러한 사항의 이행에 관하여 권고, 감시, 공조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 인권의 옹호와 증진을 위하여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만약 이와 같은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정권의 향배나 인권의지 및 기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와 같은 권한과 활동이 축소되거나 그러한 활동에 대하여 정권의 정치적 지지가 없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현 정부가 2008. 2. 출범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성원의 변경 및 활동의 변화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 및 이에 대한 협력과 수용을 정권의 정치적 재량과 편의에 맡겨둘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은 정권의 향배에 따라 큰 폭으로 변하여 안정적일 수 없다.³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그 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사회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지만,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우리사회의 인권현실을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효과성을 높힐 수 있는 추가적인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필자가 제안하고 있는 인권기본법은 인권보장을 위한 새로운 시도이므로 국제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발표자가 광범위하게 조사를 해보지는 아니하였지만 이와 같은 내용과 성격을 가진 인권기본법은 다른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인권의 최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부유럽의 국가들은 유럽인권조약에 가입하여 이를 국내에 이행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럽인권재판소까지 설치되어 있어서 개인이 각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어서 많은 인권사례와 그에 따른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 인권레짐(regional human rights regime)이 모범적으로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국가의 경우에는 지역인권조약인 유럽인권조약을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내법을 제정하는 것(예를 들면, 영국) 이외에 따로 독립된 국내법으로서 인권기본법 내지 이와 유사한 단행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북미의 경우에는 사회가 그 동안 발전하여 오면서 시기에 따라 제기된 사회의 제반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행법과 제도적인 절차(예를 들면, 인종차별, 여성평등 및 원주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단행법과 관련 기구 등)들이 계속하여 마련되어 왔기 때문에 포괄적인 단행법의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구미국가들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복잡하고 다양한 인권문제를 경험하고 해결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요구의 수준이 높으므로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단행법을 제정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러한 인권기본법이 제정

34)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개되지 아니하여 파리원칙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은 점은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킨다. 인권위원의 선임이 정치적 편의와 자리매치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인권활동가 및 전문가가 없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될 때의 주된 효과는 인권이 현실정치 및 국가행정의 과정에서 한 단계 더 상승된 위상을 가지게 됨으로써 우리사회 전체가 이러한 법률을 제정하기 이전보다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제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만약 인권기본법이 성안되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특히 동시에 많은 인권문제를 경험하거나 민주주의로 이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하여 좋은 선례가 되어 국제사회에서 널리 전파되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률은 국제인권조약과 국가인권기구라는 현재의 인권보장시스템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국내 인권레짐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인권기본법이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사항별로 살펴본다.

(1) UN인권기구에 제출하는 각종 국가보고서의 제출 및 UN인권기구로부터 권고받은 사항의 국내이행에 관하여 논의, 토의하는 절차의 제도화

학생인권조례를 놓고 벌어지는 소동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각종 인권문제는 정치세력 사이에서 과잉정치화되어 있다. 따라서 보편적인 인권기준으로 국제인권기준을 활용하고 이를 국내에서 이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일 것이다.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들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준수는 국민의 인권의식 고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³⁵⁾ 우리나라는 현재의 7개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여 매년 1, 2개 정도의 국가보고서(state report)를 조약기구에 제출하여야 하고 조약기구로부터 각종 권고를 받고 있다. 이러한 권고는 말 그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행할 것인지의 여부는 해당국가의 재량과 자발적인 협력에 달려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은 이러한 권고가 이루어지면 언론에 취재된 이후에는 “검토중”이라는 이유로 정부관련부처의 문서캐비닛 속에서 처박아 두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여 이러한 권고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를 놓고 국내에서 시민사회, 국가인권기구,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한 다음 이행할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에 반영을 하는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국제인권조약 및 이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2)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NAP), 인권교육, 인권영향평가의 제도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 그러나 인권행동증진계

35) 주22) 참조.

획은 국가가 각종 인권문제의 개선,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제사회의 권고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기본계획으로서 법령상의 근거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입안되어 시행되고 있는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그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는 외부적으로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그러므로 국가인권행동증진계획을 법제화하여 이 계획의 수립, 이행, 보고 등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으나³⁶⁾ 공공영역을 포함하여 사회 각 단위에서 인권교육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는 각 단위의 재량과 자발적인 협력에 맡겨져 있다. 그러나 공공영역에서 인권교육이 성희롱예방교육 등과 같이 의무화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업무교육의 한 분과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³⁷⁾ 한편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국가가 입법 및 통상 등의 조약체결을 하기 이전에 그러한 입법 등이 인권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참여정부 시절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다가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아니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과 지방인권기구의 설립

인권문제는 국가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지역 내지 행정업무에 속하는 사항(예를 들면, 교육, 복지, 일반행정, 각종 공공 및 복지시설 등)과 관련하여 지방인권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³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광주광역시 인권을도시를 지향하면서 인권증진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천, 인권지수의 개발과 시행, 인권교육체계의 구축, 인권지원센터의 설치, 지방인권기구인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설치, 인권영향평가의 실시 등의 사항이 포함된 조례를 입안하여 심의중에 있다. 이러한 새로운 조례(안)은 가히 지방 인권레짐(local regime of human rights)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평할 수 있다.

36)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5호, 제29조.

37) 주11)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인권교육이 필요한가,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여 하는가에 대하여 각각 89.4%, 87%가 찬성하고 있다. 또한 인권교육이 필요한 대상으로는 대학생을 포함한 학생, 교원, 법집행관, 공무원, 언론기관 종사자, 기업체 종사자, 군복무자, 복지시설 종사자,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 등을 지목하고 있다(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69-70면). 인권교육에 대한 이러한 높은 욕구와 필요성에 불구하고, 인권교육을 현실적으로 받은 사람은 응답자의 10.9%에 불과하였다(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71면).

38) 현재 다양한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 이주민, 아동, 여성, 장애인, 일반시민 등의 인권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이에 관한 조례와 기구를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인권조례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에 관하여는 한국인권재단이 2011. 11. 23. 주취한 서울, 경기, 충청, 강원권역의 인권도시회의 자료집 53면에 있는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과 연표]에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2년 대선과정에서 제시하여야 할 정책과제는 우리사회의 사법기구, 수사기구, 정보기구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속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감시기구로서 어떠한 지위와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를 포함할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진다면, 최소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지방인권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지방인권기구는 지역에 의한 지역인권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일반행정, 교육, 복지, 치안의 주민자치와 함께 인권의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형태 및 기능을 가진 지방인권기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조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를 법령으로써 제도화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타당하다.³⁹⁾ 이러한 지방인권기구가 설치될 경우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각종 진정사건의 조사와 해결이라는 부담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지방인권기구를 지원하는 역할과 함께 전국적 수준의 인권정책과 의제를 개발하는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기업의 인권옹호자로서의 역할

기업과 인권에 관한 문제는 그 동안 논의한 인권문제 가운데 가장 최근의 문제에 속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된다. 첫째, 기업이 국가의 공권력을 능가하는 사(私)권력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자각이다. 국가의 기능이 축소되고 공공영역에서 인권현실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제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기업의 활동은 대부분은 사적자치(시장)에 맡겨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영향권 범위 내에서 인권의 이념이 실현되지 아니하면 인권의 이념이 지향하는 인간다운 사회적 삶이라는 목표의 절반이 방치되게 된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선진국의 경우에 이러한 기업과 인권의 문제가 시민보다는 기업측에서 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업이 단순한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적 행위자가 아니라 소위 품위있는 시민(decent corporate citizen)으로서 자기위상을 확립하는 전략으로 기업과 인권문제를 활용하고 있다. 둘째, 선진국에 기반을 둔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전세계에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이에 반하여 현지 국가는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 및 자유화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다국적 기업을 통제할 만한 충분한 정책적인 수단을 갖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과 인권의 문제가 다국적기업을 통제할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와 같

39) 2005. 7. 30. 시행되었다가 현 정권 들어서 폐지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중앙행정기관에는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업무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규정하였다. 이러한 법례는 지방인권기구를 설립하는 데에 많은 참고가 되리라 판단된다.

이 서로 다른 배경에서 기업과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기업의 이해와 국가의 이해가 어느 정도 양립할 소지가 있어서 UN 등의 국제 인권레짐이 이 문제를 전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제시된 최소한도의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최소원칙으로 기업이 그 영향권 내에서 인권의 향유를 존중하고(권리존중의무) 그 실현을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상당주의의무) 인권침해의 공범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공범회피의무)⁴⁰⁾ 정도는 법규정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5) 해외개발원조에 있어서 인권의 고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해외개발원조가 현실정치 과정에서 논의되거나 나아가 단순히 외교의 문제를 넘어서 인권의 문제로까지 접근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해외개발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이 원조를 사용,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그러한 원조가 인권을 침해하는 정부 및 세력의 이해를 위하여 사용될 때에는 인권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전형적인 해외개발원조와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북한에 대한 원조, 개발협력 및 경제교류와 관련하여 사회일각에서 분배의 투명성 및 인권사안과의 연계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문제의 일단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우리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해외개발원조로 사용될 때 보다 인권친화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기본법에 개발과 인권의 문제에 관한 원칙을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⁴¹⁾ 이와 같이 개발 및 대외원조에 있어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는 입장은 빈곤이 단순히 자원의 부족이라는 자연적,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차별, 국가의 억압, 부패, 불안과 폭력 등에 기초한 인권의 부정 및 유린에서도 상당부분 기인한다고 본다.⁴²⁾

40) 정경수, “인권경영이란 무엇인가”, 인권경영의 이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2010년 기업과 인권포럼 보고서, 10-15면. 기업이 당면하는 인권의제로서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근절, 최저임금의 보장, 노동시간의 준수, 프라이버시와 안전 및 건강의 보호, 노동조합 등의 결사의 자유, 차별의 금지와 다양성의 존중, 성희롱의 금지, 고충처리 제도, 영향권 내에 있는 공급망의 관리와 지역사회의 존중, 모니터링, 뇌물과 부패, 환경과 지속가능성의 존중 등을 들 수 있다(위 보고서, 부록 1 기업 인권 Statement 사례, 287-291면).

41) 주11)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대외원조를 할 때 원조수혜국의 인권상황을 고려해야한다고 답변한 국민들의 비율이 72%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개선방법으로도 인도주의적인 지원(33.7%), 국제사회의 압력행사 유도(25.2%), 북한주민의 인권침해 문제제기(20.1%),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8.3%) 등을 제기하고 있다(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62-63면).

42) 아이린 칸, 주 25), 17면. 칸은 “빈곤을 종식시키기 위한 싸움은 물질적인 재화만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유와 정의, 존엄성을 위한 투쟁이다”고 정의한다.

(6) 국내외의 인권옹호 및 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

국외의 인권 옹호 및 증진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은 해외개발원조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도 있겠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도 국내의 인권 옹호 및 증진 활동에 대한 지원사업은 인권운동단체의 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이루어진 적이 없다. 다만 이러한 사업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태조사 등의 용역사업의 공모에 인권운동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이나 기타 사업에 대한 사업비 일부의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 이와 같이 실태조사 용역사업과 인권사업에 지출된 1년 예산은 많을 때에는 5억 원 정도였다. 그러나 이러한 예산은 해를 거듭할수록 삭감되어 2010년도의 경우에는 2억 원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예산 가운데 어떠한 형태로든지 인권운동단체의 용역수행 및 사업비 보조에 지출된 예산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소위 반정부적이고 좌파적인 운동단체에 대한 지원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이유에 따라 인권운동단체에 지출된 이러한 사업에 사용된 미미한 예산도 대부분 제외되었다.⁴³⁾

(7) 차별금지의 원칙

전통적인 자유권 및 사회권이 국가 등의 공권력과 개별시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함에 반하여 차별은 국가 등의 공권력과 개별시민 사이의 관계보다는 오히려 개별시민과 개별시민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는 전통적 인권의 이념과 원칙을 공공영역이 아닌 사적인 영역으로 확대한다. 이러한 점에서 차별의 문제는 현대적인 인권문제이다. 실제로 선진국의 국가인권기구는 예외 없이 전통적인 자유권 보다는 차별문제를 주된 업무영역으로 삼고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이 참여정부 시절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었으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포괄적인 차별금지의 원칙은 별도의 입법으로 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권기본법에서는 차별금지의 대원칙만을 선언하면 족하다.

(8) 위와 같은 과정에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의 역할과 참여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절차와 제도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에 국가인권위원회와 시

43) 이에 반하여 한나라당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마련된 북한인권법안에는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북한인권재단을 통일부 산하에 설립하고 약 수십 명의 인원이 고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재단으로 하여금 북한인권과 관련한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단체가 참여하여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인권기본법은 현재에 제정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각종 인권관련법의 모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정될 차별금지법 및 기타 각 단위 인권법의 기본법(umbrella act)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인권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정권의 향배에 따라 논의의 주제와 심도는 다르겠지만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인권문제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회의 각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일정부분 확보될 것으로 생각된다.

IV. 결 론

현행 헌법 제10조는 국가에 앞서 존재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이 국가의 존립근거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인권을 보호, 존중, 충족하여야 할 적극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부는 인권을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인권이 정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는다.⁴⁴⁾ 인권기본법은 정부가 인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상시적으로 국제사회, 국가인권기구, 시민사회 및 지역주민에게 묻고 대화하는 절차와 제도(인권정치적 제도화)를 만들어 국가가 인권에 대한 위와 같은 3중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인권국가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이러한 절차와 제도를 국내 인권레짐이라고 부른다면, 이 레짐은 파리원칙이 1991년 선언된지 20년이 지난 지금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의 제고라는 새로운 국제적인 의제를 선도하고 2012년 대선과정에서 우리사회의 주요 개혁과제의 하나로서 인권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정책적 과제가 될 수 있다.

실사 이러한 인권기본법이 제정되더라도 정치권력의 향배 및 정치적 의지에 따라 그 실행의 진폭과 현실적 효과는 매우 상이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보편적인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 계획, 이행, 교육하여야 하는 일정한 틀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시민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감시견(watchdog)이 정치적, 사회적 권력을 짊어질 수 있는 이빨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동네구석에서 조용하게 쿵쿵거리는 대신에 큰 기와집 대문을 들어가 안마당에서 시끄럽게 짖어낼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인권이 품은 비전은 “극적으로 타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불꽃같은 것이 아닌, 중심의

44) 커스틴 셀라스,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오승훈 옮김, 은행나무, 2003, 23면.

열원을 끝없이 타오르게 만드는 열정에 불을 지피는 부싷돌과 같은 것”⁴⁵⁾이다. “2013년 체제”가 논의되는 현재의 시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요구하고 있다. 인권기본법에 관한 이러한 제안이 우리사회의 미래의 모습 속의 인권을 찾아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김도균, 권리의 문법, 박영사, 2008.
- 문재인·김인회,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오월의 봄, 2011.
- 박찬운, 개정판 인권법, 한울, 2011.
- 백낙청, 2013년 체제 만들기, 창비, 2012.
- 샌드라 프레드먼, 인권의 대전환, 조효제 옮김, 교양인, 2009.
-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1년 국민인권 의식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2011.
- 아이린 칸, 들리지 않는 진실, 우진하 옮김, 바오밥, 2009.
- 앤드류 클레팸, 인권은 정치적이다, 박용현 옮김, 한겨레 지식문고, 2010.
- 정진성 외 2인, 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 커스틴 셸라스, 인권 그 위선의 역사, 오승훈 옮김, 은행나무, 2003.
- 홉하우스, 자유주의의 본질, 김성균 옮김, 현대미학사, 2006.
- 유남영, “파리원칙의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제2집(2011. 9).
-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인권위 10년 무엇을 남겼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대토론회 자료집(2011. 11. 18.).
- 정경수, “인권경영이란 무엇인가”, 인권경영의 이해 - 2010년 기업과 인권포럼 보고서(2010. 12).
- 정원식, “한국사회 새판 ‘2013년 체제’를 짜야 한다”, 주간경향 제958호(2012. 1. 10.).

45) 홉하우스, 주4), 214면.

A Proposal for a Basic Human Rights Act

NamyoungYoo*

<Abstract>

As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nd its result have been expected to bring such massive change to the Korean society, some liberal pundits call the society after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as “the 2013 System”. This essay argues that a basic basic human rights act should be enacted to heighten the function and status of human rights in the 2013 System, and that the basic human rights act must presuppose that the state bears not only the negative duties not to violate human rights of people but also the positive duties to protect, respect, and fulfill those rights.

This paper proposes that the basic human rights act for the 2013 System should aim at creating adomestic human rights regime in which such human rights issues and policies may be discussed, educated, planned, decided in a constant, systematic, and open manner. In a word, this objective can be described a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politics to make the state more human-rights-based or human-rights-friendly. Included in this act should be the process to discuss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human rights recommendation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the process of evaluating the effects of human rights statutes and public policies, the institutionaliza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national action plan for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e establishment of local human rights mechanism, the consideration of human rights aspects in the business administration and the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and civil society in these processes.

Key word :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Paris Principle, human rights, human rights basic act, 2013 System,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domestic human rights regime, local human rights institutions.

* Attorney-at-law